

UN 아동권리협약 20주년 기념 국제워크숍 학생체벌 금지와 교육적 대안 모색

International Workshop on Promotion of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against Students
& the Search for Alternatives in an Educational Setting**

일시 2009. 3. 12(목) 14:00~17:2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1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UN 아동권리협약 20주년 기념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국제워크숍Ⅲ
학생체벌 금지와 교육적 대안 모색

International Workshop Ⅲ on Promotion of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against Students
& the Search for Alternatives in an Educational Setting**

- 일시** 2009. 3. 12(목) 14:00~17:2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1
-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일 정 표

일 정	주 요 순 서
	전체진행 : 김철홍(국가인권위원회 학교교육팀장)
14:00 ~ 14:10	인사말 : 안경환(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 사 : 이양희(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14:10 ~ 14:40	기조발표 : 체벌 금지 및 근절의 인권적 당위성과 세계적 진전 상황 - Peter Newell(아동체벌 근절을 위한 글로벌이니셔티브 대표)
14:40 ~ 15:25	제1세션 : 체벌금지를 위한 정책 과제 1. 체벌금지를 위한 교육 정책의 방향 김석연 교감(충북 금천고등학교, 전 교육부 학생인권담당) 2. “그린마일리지” 정책이 체벌금지정책의 실질적 대안인가? 장은숙 회장(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3. 교사의 ‘감정 없는 체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김종일 상임대표((사)뉴라이트 학부모연합)
15:25 ~ 15:50	종합토론
15:50 ~ 16:00	휴식
16:00 ~ 17:00	제2세션 : 체벌금지에 대한 교육적 대안 모색 1. 아동체벌 전면금지 조치 시행(뉴질랜드) Dominique Plateau(세이브더 칠드런(스웨덴) 아태지역 담당관) 2. 초중등교육법(학생인권법) 입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정용상 보좌관(권영길 국회의원실) 3.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의 의의와 전개과정 장희국 교육위원(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4. 체벌 없는 교육활동 이문석 교사(학생생활연구회)
17:00 ~ 17:20	종합토론
17:20	폐회

☒ Programme

TIME	PROGRAMME
	Moderator : Chul-hong Kim(Director of School Education Team, NHRK)
14:00~14:10	Welcoming Address Kyong Whan Ahn(Presiden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Congratulatory Address Yang Hee Lee(Chairperson,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14:10~14:40	Keynote Speech The human rights imperative to prohibit and eliminate all corporal punishment and global progress towards achieving it Peter Newell(Coordinator,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14:40~15:25	Session 1 : Strategic Challenges to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1. Direction in Educational Policies for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Seog-Eon Kim(Vice-principal, Keumcheon High school in Cheongju) 2. "The Green Mileage" Policy: a Practical Alternative to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Eun-sook Chang(Chairperson, The National Association of Parents for Cham-Education) 3.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without Ill Feeing is a Must. Jong-il Kim(Chairman, Newright Parents Union)
15:25~15:50	Open Discussion
15:50~16:00	Break
16:00~17:00	Session 2 : Seeking Educational Alternatives to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1. Achieving full prohibition of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Dominique Plateau(Regional Adviser for Child Protection for Save the Children Sweden 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2. Main Contents & legislative Issu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Student Human Rights Act) Yong-sang Jung(Legislative Assistant,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Kwon Young Ghil) 3. Meaning and Progress of a Campaign to Enact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Hwi-guk Jang(Education Commissioner, Gwangju Metropolitan Board of Education) 4. Education Activities Without Corporal Punishment Moon-seok Lee(Teacher, The society for the Research of Student Life)
17:00~17:20	Open Discussion
17:20	Closing Remarks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차별금지 교육적 대안 모색을 위한 자리에 참석하신 시·도 교육청 관계자와 교사 여러분, 그리고 학생 인권관련 활동가 및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차별금지와 관련한 국제동향과 아태지역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해 주신 피터 뉴웰(Mr. Peter Newell), 도미니크 플라토(Mr. Dominique Plateau)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올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세계 193개 국가가 가입·비준한 가장 보편적인 국제규범으로 우리나라도 당사국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자유권 영역의 인권신장에 대해서는 찬사를 받았지만, 아동권리 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입장을 이해하고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인식하는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많은 아동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는 각종 ‘학생인권’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은 학생인권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 아동·청소년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는 점을 우려하여 차별금지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상 필요에 의한 제한적 차별’을 인정하는 법령이 여전히 존재하고, 차별의 부과 여부가 개별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차별을 대체하는 교육적 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극소수이지만 아직도 차별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신념과 의도와는 달리 대상자인 학생들은 대

부분 차별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차별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성인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는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아동권리의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신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명목하에서든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차별이 아동의 인격적·신체적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우 중요한 인권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이를 근절하고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찾는 공감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국제워크숍도 차별금지과 그 교육적 대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7년부터 매년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모임인 이번 국제워크숍을 계기로 차별에 대한 법령의 유보조항이 삭제되고, 차별을 대체하는 교육적 대안에 대한 인권적 관점의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발 중인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가이드를 마련하여 일선 학교현장에 지원하는 등 여러분이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드시는데 적극 지원하고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국제사회의 소중한 경험을 들려주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해 주신 Peter Newell 대표와 Dominique Plateau 아태지역 담당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차별에 대하여 발표를 해주신 여섯 분의 토론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며, 이번 국제워크숍을 함께 준비해 주신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이양희 교수님의 남다른 열정과 노력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3. 1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경 환**

발제자 소개

○ 피터 뉴웰(Peter Newell)



- Peter Newell씨는 영국과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아동인권 옹호자입니다. 국제적으로, 그는 ‘체벌근절을 위한 글로벌이니셔티브(the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의 대표이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NGO 그룹 부의장이기도 합니다.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Paulo Pinheiro 교수에 의해 주도된 ‘유엔아동폭력 보고서(UN Secretary General's Study)’를 담당하는 편집국에서 일하였습니다. 또한, UN 연구의 후속조치(follow-up)를 위한 ‘국제 NGO 자문위원회(International NGO Advisory Council)’ 공동의장과 ‘the 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의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 그의 파트너인 Rachel Hodgkin과 함께 그는, UNICEF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행안내서를 준비하였고, 많은 시간 UNICEF를 위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였으며 특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실행’과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의 설립’을 위한 권고활동을 해왔습니다.
-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영국에서, NGO 아동권리연합(NGO Children's Rights Alliance)의 의장직을 역임했고, 모든 종류의 체벌에 반대하는 ‘the UK Children are unbeatable! Alliance’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 도미니크 플라토(Dominique P. Plateau)



- Dominique P. Plateau씨는 1988년 이래로 동남아에 근거를 두고 난민들과 아동노동, 아동을 비롯한 인권과 개발관련 문제들을 위해 일하는 대화 및 옹호 전문가입니다.
- 그는 현재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Child Protection for Save the Children’ 스웨덴 지역사무소의 지역담당관입니다.
- 그는 1998부터 2003년 중반까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사업들을 관장하며 아동노동에 관한 지역실무그룹(RWG-CL)의 코디네이터를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스위스 취리히의 UN난민고등판무관실(UHCR) 본부에서의 업무를 시작으로, 최근 UNHCR-캄보디아 과도행정기구(UNTAC)에서 일하기에 앞서, 1988년 동남아시아 베트남 하노이의 UNHCR 대표, 태국 Aranyaprathet의 the Office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OSRSG)에서 일하였습니다.
- 최근 저서로는, 공동집필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아동체벌에 관한 방법론(2004)’와 ‘평화로운 육아법: 해결방안-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신체적 체벌 없는 가족생활(2005)’가 있습니다.
- 그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 아동대상의 폭력에 관한 국제 아동 구호 연합의 중심이며, 폭력에 관한 UN 연구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위원회 회원입니다. 또한, 그는 국제 아동학대예방협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목 차

■ 기초발표 / 1

체별 금지 및 근절의 인권적 당위성과 세계적 진전 상황	3
--------------------------------------	---

■ 제1세션 : 체별금지를 위한 정책 과제 / 29

1. 체별금지를 위한 교육 정책의 방향	31
2. 그린마일리지 정책이 체별금지 정책의 실질적 대안인가?	41
3. 교사의 ‘감정 없는 체별’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53

■ 제2세션 : 체별금지에 대한 교육적 대안 모색 / 59

1. 아동체별 전면금지 조치 시행(뉴질랜드)	61
2. 초중등교육법(학생인권법)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77
3.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의 의의와 전개과정	85
4. 체별 없는 교육활동	97

■ 참고자료 / 105

1. 『UN아동폭력보고서』	107
2. 『아동에 대한 모든 신체적 체별 금지』	149
3. 아동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1~2008)	163
4. 아동권리협약	178



기조발표



체벌 금지 및 근절의 인권적 당위성과 세계적 진전 상황

피터 뉴웰

(아동체벌 근절을 위한 글로벌이니셔티브 대표)



체벌 금지 및 근절의 인권적 당위성과 세계적 진전 상황

(The human rights imperative to prohibit and eliminate all corporal punishment and global progress towards achieving it)

피터 뉴웰 (아동체벌 근절을 위한 글로벌이니셔티브 대표)

체벌은 어디서 유래했는가?

체벌은 동물사회와 마찬가지로 인간사회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항상 존재해 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수렵채집사회나 널리 육아분담이 이뤄지는 사회에서는 본래부터 고통을 이용하여 규율을 도모하는 일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몇몇 매력적인 인류학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 조국인 영국이 과거 식민지 시대에 전세계 거의 모든 대륙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노예제도와 군사적 점령, 학교 및 형벌 제도 발전, 일부 선교사 교육 등을 통하여 체벌의 확산과 제도화에 많은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식민지 시대의 다른 열강들도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합리적 처벌”이라는 영국 보통법의 개념은 최소한 전세계 70여 개국의 법 제도에 채택 및 반영되었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체벌은 우리 문화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체벌이 자기 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도 문화의 자연스런 일부라는 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이나 아시아에 특유한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모든 대륙, 모든 국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상당히 주목할 만한 문제가 되었고, 전세계적으로 모든 체벌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대중교육과 부모교육을 통해 이를 금지, 근절하자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체벌근절이 왜 중요한가?

체벌근절이라는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세계적으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극심한 인권침해

해나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을 당하고 있는 나라가 아직도 많은 상황에서, 체벌근절을 우선과제로 추구하는 저 같은 사람을 보고 당황하거나 비웃는 사람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근절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 형태의 폭력이 아닙니다. 아동에 대해 임의로 행사하는 어느 정도의 폭력은 합법적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용인된다는 생각 자체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속한 사회와 전세계 대부분의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이 자연스레 행해지고, 체벌이 대다수 아동들의 삶의 일부이고, 또 체벌이 일반적인 삶의 일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동이 체벌로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슬프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체벌근절을 아동보호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보호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오랫동안 아동학대와 체벌을 별개로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사람의 극히 일부는 훈육의 목적 없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정신병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대개 매우 어린 아동 수 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많은 아동을 불구로 만들거나 다치게 하는 대부분의 물리적 “학대”가 훈육의 미명 하에 이루어지며, 바로 이것이 체벌입니다.

또, 모든 형태의 체벌을 근절하는 것이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아동의 인격적, 신체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 용인된다거나 정상적이라거나 심지어는, 일부의 주장처럼, “아동을 위하여” 이루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아동의 지위가 객체 또는 소유물로 고착화되고 성적 착취나 매매 등 다른 극단적인 학대나 착취가 더 용이하고 빈번해지는 것입니다.

아동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바라보면, 일상적인 체벌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이 소유물로서 낮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옹변하는 상징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우를 보면, 가정폭력 근절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평등운동의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아동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체벌이라도 절대 용인하지 않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아동을 위하여 인격적·신체적 존엄성을 존중 받을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추구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동의 지위를 향상하고 아동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체별이야말로 아동을 성인보다 낮은 지위로 보는 현실을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인권문제라 하겠습니다. 아동을 때리고 아동에게 굴욕감을 주는 일을 근절하자는 움직임에 대하여 강한 반발이 있는 것을 보면 거의 모든 사회에서 체별이 전통문화의 일부로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문화의 변화이며, 이는 아동을 바라보고 존중하는 방식을 진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이슈에서 승리한다면, 우리가 아동들에게도 동등하게 존중 받을 권리와 법으로 보장된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정부와 사회, 부모와 교사 등 성인들에게 설득한다면,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아동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실현한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동에 대한 체별을 근절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논지를 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릅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은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정에서 체별을 당하는 것은 대부분 아기나 어린 아이인데, 이들은 작고 연약하다는 점에서 분명 다릅니다. 아동은 연약한 신체, 발달단계, 성인에 대한 의존성, 스스로 보호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 등 수많은 “다른” 점이 있고, 바로 이 때문에 아동은 폭력으로부터 더욱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한 것이 현실이지만, 이제 어느 나라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합리적 폭력” 또는 “교육적 폭력”이라고 옹호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인격적·신체적 존엄성을 아동들은 아직도 완전히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연약한 신체와 정신과 존엄성을 법으로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왜 이 문제가 어려운가?

사실,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린이는 사람이고, 사람을 때리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이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취급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인식의 문제 때문입니다. 아동에 대한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 즉 성적 착취나 매매나 여성 성기 절제 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를 우리와 별개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체벌을 이야기할 때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제 조국인 영국이나 여러분의 나라에서 대부분 부모에게 체벌을 받아 왔고 또 부모라면 대부분 아이들을 체벌해 봤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를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또 부모로서 자녀를 훈육한 것을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생각하거나 평등과 인권의 문제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아동보호나 인권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동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구타당하지 않을 권리를 동일하게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아마도 오래 전부터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어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어린 아이들이 성인들보다 더 많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진작부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첫 반응은 객관적인 차원이 아니라 대단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생각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어떤 사람들에게 이는 대단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를 체벌해 본 사람에게 체벌을 금지, 근절하는 운동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일이 매우 힘들다는 점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전통에 따라 체벌을 이용해 왔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한다고 해서 체벌이 옳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종교에 의해 체벌을 가할 권리나 심지어는 의무가 부여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통해 인격적·신체적 존엄성을 포함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반대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개혁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투투 대주교나 달라이 라마 등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도 아동차별 근절을 위한 국제 행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제8차 세계종교회의(World Assembly of Religions for Peace)에서는 전세계 600여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각국 정부가 “차별 등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체벌의 영향에 관한 연구

체벌의 유해성에 관하여 주로 미국과 영국에서 다양한 완성도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체벌은 아동기와 성인기에 폭력적인 태도와 행동이 나타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자궁심 결여, 우울증, 비행 등 우리가 자녀에게 결코 바라지 않는 요소와 연관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가치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가하는 폭력을 금지할 근거를 남성이 가하는 폭력의 악영향에서 찾았다면 오늘날의 여성은 모두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인권의 차원에서 이러한 형태의 폭력을 금지, 근절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가치 있는 연구는 아동에 대한 폭력의 실상과 그 범위와 규모에 대한 연구일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폭력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신뢰와 프라이버시를 유지한 가운데 아동, 부모, 보육 종사자들을 인터뷰해야 합니다. 아동에 대한 폭력을 보도한 기사의 건수나 아동폭력을 저지른 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 통계 등을 아무리 분석해도 아동에 대한 폭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인권 차원에서 체벌근절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제 마침내 전세계적으로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체벌의 합법성과 사회적 용인에 도

전하고 이를 근절하는 데 있어서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진 진전의 중요한 요소는 세계 193개국에서 공히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을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아동권리협약의 목적은 아동이 인격적·신체적 존엄성 등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 받을 권리 등 인권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의 실행을 감시하는 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1993년에 각 회원국의 보고서를 점검하는 데서 출발해 아동에 대한 폭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기구는 가정과 가족 등 모든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체계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1996년에 발간된 한국의 첫 보고서를 검토하고 “부모와 교사들이 차별을 교육의 수단으로 널리 인식”하고 있는 등 차별이 지속되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가정, 학교 등에서 차별을 금지할 것을 명확히 권고하였습니다. 이것이 13년전의 일이었습니다. 2003년에 발간된 두 번째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는 아직도 차별금지 권고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여전히 학교에서 차별이 공공연하게 허용되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금지를 권고했음에 주목하면서 가정, 학교 등에서 차별을 금지할 것을 명확히 권고하였습니다.¹⁾

2006년, 아동권리위원회는 차별로부터 보호 받을 아동의 권리를 다룬, 제1차 폭력에 관한 일반 코멘트(General Comment on violence)를 발간했습니다.²⁾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최초의 국제적 아동권리협약(제19조)이었습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 코멘트에서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금지한다”는 것은 아동에 대한 그 어떠한

1)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대한민국의 12차 보고서에 대한 검토작업 완료, 1996년 2월 13일, CRC/C/15/Add.51, paras. 15 및22; 2003년 3월 18일, CRC/C/15/Add.197, paras. 7, 38 및 39; 위원회의 모든 문서는 www.ohchr.org에서 볼 수 있음.

2) 아동권리위원회, 제8차 일반 코멘트, 2006년, "체벌이나 다른 잔인하거나 모욕적인 형태의 벌로부터 보호를 받을 아동의 권리" [http://www.unhcr.ch/tbs/doc.nsf/\(Symbol\)/CRC.C.GC.8.En?OpenDocument](http://www.unhcr.ch/tbs/doc.nsf/(Symbol)/CRC.C.GC.8.En?OpenDocument)

수준의 폭력도 합법적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체벌이나 다른 잔인하거나 모욕적인 형태의 별도 폭력에 속하며, 각 회원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 논평에서 체벌을 “아무리 경미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불편을 초래할 의도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모든 벌”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또 체벌은 모두 모욕적이지만, 체벌 못지않게 잔인하고 모욕적인 다른 비물리적 형태의 벌, 즉 아동을 폄하, 모욕, 경시, 조롱하거나 겁주거나 희생양으로 삼는 별도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³⁾

아동권리위원회는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벌을 부정하는 것이 아동을 올바른 행동으로 이끄는 훈육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때리는 것은 명백히 나쁜 행동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물론, 폭력적인 벌을 금지한다고 해서 합리적인 물리력을 보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와 어린 아이에 대하여 부모는 항상 보호 목적의 물리력을 사용하지만, 이는 아동을 벌하기 위해 아동을 고의적으로 때리고 다치게 하는 물리력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아동권리위원회 외에도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등 관련 UN 인권협약기구들도 모두 체벌을 부정하고 체벌금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아프리카아동권리복지전문가위원회(African Committee of Experts on the Rights and the Welfare of the Child) 등 각 지역별 인권기구도 역시 체벌을 부정하고 체벌금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여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도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지, 네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짐바브웨 등에서는 형벌제도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에 반대하는 판결이, 또 다른 국가에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에도 반대하

3) (註) i, para. 11 참조

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⁴⁾

UN 사무총장의 아동폭력연구보고서

최근에는 UN 사무총장의 아동폭력연구보고서(UN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를 통해서도 큰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동권리위원회가 제안한 이 연구는 아동폭력을 최초로 세계적 차원에서 검토한 연구입니다. 이는 또 아동을 참여시켜 아동의 경험과 의견을 통해 직접 배우고자 하는 UN 최초의 시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아동은 연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9회의 지역협의(regional consultations)에서 대단히 가치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는 대단히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여한 아동들이 세계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심각한 형태의 폭력 외에도 수많은 아동이 가정에서 겪고 있고, 여러 국가의 경우 학교 등 기관이나 형벌제도에서 겪고 있는 일상적인 폭력도 생생히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참여와 증언을 통해 정치인을 포함한 성인이 이 문제를 계속 외면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의 파울로 세르지오 핀헤이로(Paulo Sergio Pinheiro) 교수가 주도한 이 연구의 보고서가 2006년 10월 UN총회에 제출되었는데, 이 보고서에는 각 회원국이 모든 형태의 체벌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핀헤이로 교수는 2007년 UN총회에 제출한 경과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아동은 '미래'라는 말에 신물을 내고 있습니다. 아동은 지금 바로 폭력 없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체벌금지에 관한 세계적 진전상황

그렇다면, 체벌근절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어떠한 진전이 이루어졌을까요?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UN 회원국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24개국에서 가정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2008년 6월에 코스타리카에서 체벌

4) 인권권고사항 및 고등 재판소들의 관련 판결의 세부내용은 www.endcorporalpunishment.org 참조.

을 전면 금지했고, 몰도바에서도 최근 체벌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와 네팔의 대법원에서도 육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최소한 26여 개국에서 체벌 전면금지를 천명했거나 의회에서 체벌금지법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체벌금지법 제정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국가에서 모두 체벌금지법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UN 회원국의 1/4 이상에서 아동이 체벌로부터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 2007년 6월, 뉴질랜드가 영어권 국가 최초로, 또 아태지역 국가 최초로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세계 약70개국에서 아동에 대한 “합리적” 벌을 허용하는 영미법의 틀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대단히 중요한 진전입니다.)
- 2007년 11월, 우루과이가 남미 국가 중 최초로 체벌을 금지했고, 몇 주 후에는 베네수엘라가, 작년에는 코스타리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 유럽회의(The Council of Europe)는 정부간 기구 최초로 47개 회원국 전체에서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고, 이미 19개국이 체벌을 전면 금지했으며, 이탈리아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상 체벌을 금지했고, 그 외 9개국도 곧 체벌을 금지하기로 공개 천명했습니다.⁵⁾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어떤 순서를 밟아야 하는가?

아동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그 누구로부터 어떠한 체벌도 받지 않도록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명시적인 입법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와 법률, 체벌의 위험에 관한 인식제고, 아동과의 긍정적·비폭력적 관계 촉진에 관한 지속적인 대중교육과 부모교육도 필요합니다.

법률개혁을 위해서는 법률이나 관습법(관례)에서 체벌을 허용하거나 옹호하는 조항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 조국인 영국과 다른 여러 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합리적” 체벌을 사용할 권리를 보통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명시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체벌을

5) 세계적 진전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된 세부사항은 www.endcorporalpunishment.org, “금지 카운트다운 (Countdown to prohibition)” 참조

허용하거나 옹호하는 조항을 모두 제거한 후에는 폭력에 관한 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성인을 폭력에서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폭력이 훈육으로 위장되어 가해지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은 상황과 가해자를 막론하고 어떠한 폭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호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개혁의 목적이 ‘아동을 때리는 것이 성인을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므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학교 등의 기관이나 아동노동 상황이나 형벌제도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차별금지를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벌제도에서나 교정기관 내 처벌수단으로서 차별이 이미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내 차별을 방지하는 정책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법률에는 학교 내 차별을 허용하는 조항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동보호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에서도 부모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조항은 없지만 여전히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아동에 대한 인권 차원의 의무를 다하고,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실천하고, 가정을 포함해 모든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차별이나 여타 잔인하거나 모욕적인 형태의 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그리고 학교 등의 기관에서 차별을 허용하는 조항도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물론 법률개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법률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 아동을 때려도 괜찮다고 하는 법률이 있다면 대중교육을 통해 사회 전체에 팽배한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학교 등의 기관이나 형벌제도에서 아동에 대한 직접적 폭력을 허용하는 법률이 어떠한 국가에 있다면 그 국가는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위선이며, 이러한 위선은 반드시 공개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일의 첫 번째 목적이 각국에서 체벌과 잔인하거나 모욕적인 다른 형태의 벌을 전면 금지하는 데 적절하고 명확한 법률의 틀이나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실현하도록 요구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좋은 법의 첫 번째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으며, 아동과 관련해서는 아동에 대한 폭력과 모욕을 예방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될 것입니다.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이것이 형법의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피해자인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폭력을 당한 후에는 처벌을 한다고 해도 이미 늦기 때문입니다.

성인과 동등한 보호를 받을 아동의 권리를 반영하여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체벌을 가한 경우에는 검찰 등의 공적 개입 제도가 아동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는, 부모를 기소하고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동권리위원회는 제8차 일반 논평에서 기소 등 공적 개입은 아동을 중대한 위해(危害)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또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의 본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법문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다른 성인에게 폭력을 가할 경우에도 그 폭력이 경미하다면 기소되지 않는 것처럼, 부모가 아동에게 경미한 폭력을 가하는 경우에도 부모는 기소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은 사소한 일에는 간여하지 않는다는 “최소개입의 원칙(de minimis)”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및 가족, 아동보호를 위하여 일하고 이에 관여하는 경찰과 법원 등의 관계자들에게는 법률을 피해자인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시행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인에 대한 폭력이 형사범죄로 취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에 대한 폭력도 형사범죄로 취급해야 합니다.

학교 등 기관의 환경에서 체벌금지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아동을 폭행하는 것이 형사범

죄이고 체벌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고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교사와 보육 종사자가 알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률개혁에는 대중교육과 초임교사 및 기존 교사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법률개혁에 대하여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도 교육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 및 교사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법률개혁이 그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체벌을 허용하거나 옹호하는 법률이 있다면 아동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전통적 습관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치명적 타격이 될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금지하려면 남성이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남성이 모두 분노관리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누구라도 제 정신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체벌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인권침해임이 이미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내일이나 내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아동이 도대체 왜 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말로 이미 늦을 만큼 늦은, 아동을 위한 개혁에서 정부가 손을 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에 대한 전통적 태도가 너무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대단히 오래 지속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현재 자녀가 있는 사람, 막 자녀를 낳은 사람, 미래에 부모가 될 사람과 국가가 만나는 모든 접점(예: 출생신고)을 통해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막 자녀를 낳은 부모나 가족과 의료서비스가 만나는 접점인 유치원이나 학교 입학시점 등을 통해 알고 보면 대단히 간단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활용 및 채택할 자료와 프로그램은 지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소아과 의사, 의사, 심리학자, 교사, 사회사업 종사자, 학부모 단체, 인권 관련 기관 및 기구, 여성폭력방지 관련 기구, 종교단체 등을 참여시켜 개혁을 위한 연대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아동을 참여시키고 또 이 문제에 관여하고자 하는 아동 주도 조직을 참여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동에 대한 성인의 폭력을 근절하는 것은 성인의

의무이지만, 아동도 그 견해를 피력하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국가의 사례를 보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개혁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형벌제도에서 차별이 금지되고, 다음에는 학교 등의 기관에서, 그 후에는 입양가정에서, 마지막으로 일반 가정에서 차별이 금지되었습니다.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동이 가장 많이 차별을 당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든 차별 등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는 것은 아동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가정 등 모든 환경에서 모든 차별을 전면 금지하는 것에서 한 발이라도 물러난 주장을 펼친다면, 이는 원칙과 논리를 모두 잃는 길이며, 개혁을 주장하는 근거를 약화하는 길이며, 이 경우 아이들은 더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타협이 필요하거나 타협이 용인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The human rights imperative to prohibit and eliminate all corporal punishment and global progress towards achieving it

Peter Newell

(Coordinator,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Where did corporal punishment come from?

I suspect that corporal punishment in one form or another, has always existed in human societies, as it exists in animal societies. There is some attractive anthropological research suggesting that in original small-scale hunter-gatherer societies (which barely exist now) and in societies where child-rearing is widely shared, there has been little or no use of pain as a form of discipline.

What is certainly true is that my country, England, in its colonial past, had a lot to do with spreading and institutionalizing corporal punishment, in the context of slavery and military occupation, in the development of school and penal systems, and through some missionary teaching in many countries in all regions. Other colonial powers played their part too. The English common law concept of "reasonable" chastisement or punishment has been adopted and reflected in the legal frameworks of at least 70 countries worldwide. I often hear people saying: "But corporal punishment is part of our culture", as if it wasn't a part of my culture and the culture of more or less every state worldwide. This is a global problem a problem in every state in all regions, not a special problem in Korea or in this region. It has now become a visible problem and there is a strong and growing movement in all regions to challenge all corporal punishment as a human rights violation, and accelerating progress to prohibit it and eliminate it through public and parent education.

Why is challenging all corporal punishment so important?

Why is this issue important? I often meet people who are puzzled or scornful that anyone could see ending corporal punishment as a priority, given the extreme breaches of children's rights and the extreme forms of violence that children in so many states are still facing. But what we are challenging is not just one particular form of violence, but the whole idea that some arbitrary degree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should, uniquely, be legal and socially approved. Punitive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your society and mine and most others, is administered casually, is a routine part of a majority of children's lives, is part of the scenery.

We need to think of challenging corporal punishment not just as a child protection issue, although it is sadly true that corporal punishment kills and maims countless thousands of children. For much too long, people, including many of those involved in child protection, have tried to keep child cruelty or child "abuse" and corporal punishment in two separate boxes. Maybe a tiny minority of perpetrators are psychotic and don't have any punitive motive for assaulting their children. But more or less all of the physical "abuse" that globally kills thousands of children mostly very young and maims and injures countless thousands more is done in the name of punishment or control is corporal punishment.

Also, ending corporal punishment is an essential strategy for ending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the idea that breaching a child's human dignity and physical integrity is acceptable, normal, or even as some still suggest "in their best interests", perpetuates their status as objects or property, and makes every other sort of extreme abuse and exploitation, including sexual exploitation and trafficking, more likely and easier.

But beyond the child protection context, the acceptance and legality of this daily punitive violence is highly symbolic of children's low status in our societies, as possessions. Just as with women, challenging routine domestic violence has been a fundamental part of women's

campaigns for equality in our societies. So it is with children. When we challenge all corporal punishment, however light, we are pursuing children's equal right to respect for their human dignity and physical integrity. This is as fundamental as anything can be to improving children's status and gaining recognition and respect for children as rights holders alongside the rest of us.

There is no other children's rights issue so symbolic of children's low status as less than people. The strength of the resistance to challenging hitting and humiliating children demonstrates how much it is a part of the traditional culture of almost every society. What we are about in this campaign is cultural change - a real shift in how children are regarded and respected.

So if we win this issue, if we persuade governments and societies and individual parents, teachers and other adults of children's equal right to respect, their right to equal protection under the law, it is a huge breakthrough towards the overall goal of achieving respect for children as rights holders, achieving recognition and ultimate realization of their rights.

"But children are different"

When one uses parallels with the campaig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people respond: "But children are different". Yes, of course they are different. The babies and small children who research suggests are the victims of most corporal punishment in the home are different in that they are very small and very fragile. Children's vulnerability, their developmental status, their dependence on adults and the huge difficulties they face in seeking protection for themselves: all these differences suggest that they should have more, not less protection from being hit and hurt.

While there is still far too much violence against women, no country now defends "reasonable" violence, or "disciplinary" violence against women. Societies do move on. But

regrettably, in this case, children in most states are still waiting for the full protection of their human dignity and physical integrity which we as adults take for granted. It should be shaming to all of us that children are the ones singled out in our laws for less protection from assaults on their fragile bodies, minds and dignity.

Why is this issue so difficult?

This should be a very simple issue hitting people is wrong and children are people too. But in fact it is hugely difficult and controversial still in many states in all regions. The difficulty comes from the personal dimension. When we are campaigning against the more extreme forms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sexual exploitation, trafficking, female genital mutilation and so on we perceive the perpetrators as other people, quite different from us. But when it comes to corporal punishment, most people in my country, the UK, and yours, were hit as children by their parents. Most parents have hit their own growing children. None of us likes to think badly of our parents, or of our own parenting. This makes it very difficult for many people, including politicians, and even those working in child protection or in human rights institutions, to think humanely or logically about the issue, to see it clearly now as an issue of equality and human rights.

If people found it easy, we would long ago have accepted that children have exactly the same right as the rest of us to be protected by the law from being hit; in fact we would probably think that children, starting off very small and totally dependent, have a right to more protection than us larger people.

Whatever audience one is addressing on this issue, one has to remember that the first response from individuals is likely to be at a personal, not a professional, level. It often takes time to get through the personal dimension, and for some people it is indeed too painful and difficult. I have often found it hard to convince people who have hit their own children that

they can move on and join the campaign to prohibit and eliminate it. It is, surely, entirely understandable in our societies that parents have accepted and followed traditional pressures to use corporal punishment but understanding it does not make it right.

Another difficulty in many countries is that some believe their religion gives them a right or even a duty to use corporal punishment. We all enjoy freedom of religious belief. But belief cannot lead to practices which breach others'rights, including their rights to respect for their human dignity and physical integrity. Religious/faith leaders are increasingly speaking out against al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supporting law reform to prohibit all corporal punishment. For example, such global figures as Archbishop Desmond Tutu and His Holiness the Dalai Lama are supporter of the Global Initiative. The Eighth World Assembly of Religions for Peace, in Kyoto, Japan in 2006, bringing together more than 600 faith leaders from all regions, adopted a resolution calling on governments to "adopt legislation to prohibit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including corporal punishment".

Research into the i`mpact of corporal punishment

There is a great deal of research, of varying quality, much of it from the US and the UK, into the harmful potential effects of corporal punishment a significant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violent attitudes and actions in childhood and adult life, its links with low self-esteem, depression, delinquency and all the things we do not want for our children. I am not sure how valuable this research is, because it misses the point and is in a sense disrespectful to children. Women would find it insulting these days if we looked for evidence of the ill-effects of male violence to justify prohibiting it: there is a human rights imperative to prohibit and eliminate all such violence.

The research which is most valuable now is research into the reality and the scale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to make it visible. And that requires interviewing children, and also

parents and other carers, in conditions of trust and confidentiality. Analysis of reports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statistics of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of perpetrators, tell us nothing whatsoever of the true level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Development of a human rights consensus against corporal punishment

Now at last there is rapidly accelerating progress to challenge and end the legality and acceptance of adults' punitive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all regions. The major context for progress over the last 20 years has been the almost universal acceptance - by 193 states -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The particular task of the Convention is to confirm that children are holders of human rights alongside adults, including the right to equal protection of their human dignity and physical integrit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monitoring body for the CRC, has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violence against children since it started to examine reports from States in 1993. It systematically recommends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n all settings, including the home and family.

When the Committee examined the Republic of Korea's first report in 1996, it expressed concern at the persistence of corporal punishment, "widely envisaged by parents and teachers as an educational measure" and recommended clear prohibition in the home, schools and other institutions; that was 13 years ago. When it examined the second report in 2003, the Committee regretted that its recommendation had not been addressed; it expressed great concern that corporal punishment was still officially permitted in schools. The Committee went on to recommend explicit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in the home, schools and all other institutions, noting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d also recommended this¹⁾.

1)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Republic of Korea's initial and second reports, 13 February 1996, CRC/C/15/Add.51, paras. 15 and 22; 18 March 2003, CRC/C/15/Add.197, paras. 7, 38 and 39; all Committee documents are available at www.ohchr.org

In 2006, the Committee issued its first General Comment on violence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protection from corporal punishment²⁾. The Convention is the firs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 expressly to require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all forms" of physical or mental violence, in article 19. As the Committee writes in its General Comment: "There is no ambiguity: 'all forms of physical or mental violence' does not leave room for any level of legalized violence against children.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 are forms of violence and States must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and educational measures to eliminate them."

In its General Comment, the Committee provides a broad definition of corporal, or physical, punishment - "any punishment in which physical force is used and intended to cause some degree of pain or discomfort, however light...". And the Committee emphasises that while corporal punishment is invariably degrading, there are other non-physical forms of punishment which are also cruel and degrading and thus incompatible with the Convention - punishment which belittles, humiliates, denigrates, scapegoats, threatens, scares or ridicules the child³⁾.

The Committee highlights that rejecting violent and humiliating punishment does not mean rejecting discipline which is about leading children to good behaviour. Hitting children is an obvious lesson in bad behaviour. And prohibiting violent punishment does not limit the protective use of reasonable force: with babies and young children, parents use protective physical actions the whole time but these are quite distinct from deliberately hitting and hurting children to punish them.

In addition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other relevant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the Human Rights Committe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2)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8, 2006, "The right of the child to protection from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 [http://www.unhcr.ch/tbs/doc.nsf/\(Symbol\)/CRC.C.GC.8.En?OpenDocument](http://www.unhcr.ch/tbs/doc.nsf/(Symbol)/CRC.C.GC.8.En?OpenDocument)

3) See note i, para. 11

Rights, Committee against Torture and the Committee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ave all condemned corporal punishment and recommended prohibition. Also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have done so, including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and most recently the African Committee of Experts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 There have also been judgments from high-level domestic courts constitutional courts and supreme courts in many states in all regions, some condemning corporal punishment in penal systems and schools, including in Fiji, Nepal, South Africa, Namibia and Zimbabwe, some relating to corporal punishment in the home as well⁴).

UN Secretary 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An additional, recent context for progress has been the human rights-based UN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The Study, proposed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was the first comprehensive global review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It was also the first UN exercise of this kind to seek to involve children and to learn directly from children's experiences and views; for example, children played a very visible and vocal role in the nine regional consultations held as part of the Study process. This had a profound impact, because children focused not only on the severe forms of violence, against which there is already a global consensus, but also on the daily routine violence so many of them suffer in their homes and in many states also in schools, other institutions and penal systems. Their presence and their testimony made it very hard for the adults, politicians and others, to remain in denial.

The Study was led by Professor Paulo Sergio Pinheiro from Brazil, and when his report was submitted to the UN General Assembly in October 2006, it included there commendation that States should prohibit all forms of violence, including all corporal punishment. It set an ambitious deadline of the end of 2009. When Professor Pinheiro delivered a progress report to

4) See www.endcorporalpunishment.org for details of human rights recommendations and relevant judgments of high-level courts.

the General Assembly in 2007, he said: "Children are sick of being called 'the future': they want to live their childhood, free of violence, now".

Global progress towards prohibiting all corporal punishment

So, where have we got to globally? This is a summary of the progress:

- 24 states - 12 per cent of UN member states - have prohibited all corporal punishment in all settings, including the home the most recent were Costa Rica, in June 2008, and Moldova, just announced. Supreme Courts in two additional states Italy and Nepal have ruled that corporal punishment in childrearing is unlawful.
- At least 26 more states are committed to full prohibition and/or are actively debating prohibitionist bills in parliament in some, reforms are imminent. If all these commitments are fulfilled, children in more than a quarter of UN member-states will have achieved full legal protection.
- New Zealand became the first English-speaking state and the first state in the Pacific region to enact full prohibition in June 2007 (significant because, as noted earlier, English law, allowing "reasonable" punishment of children, exists in about 70 states worldwide).
- The first Latin American state to achieve prohibition was Uruguay, in November 2007, followed within weeks by Venezuela, and last year by Costa Rica.
- The Council of Europe is the first inter-governmental body to launch a campaign for universal prohibition across its 47 member states; 19 have already achieved full prohibition (plus Italy by Supreme Court decision) and another nine are publicly committed to doing so soon⁵).

What are the steps to eliminate corporal punishment?

It is the child's right to be protected from all corporal punishment, wherever they are and whoever the perpetrator. Eliminating corporal punishment requires both clear and explicit law

5) See www.endcorporalpunishment.org, "Countdown to prohibition" for updated details of global progress

reform and sustained public and parent education about children's rights and the law, awareness-raising of the dangers of corporal punishment and promotion of positive, non-violent relationships with children.

Law reform requires the removal of any existing authorisations of corporal punishment or defences of it which exist in any laws, or in common (case) law. Where, as in my country, England, and many others, there is a long-standing common law right to use "reasonable" corporal punishment, this must be explicitly removed. If all authorisations and defences are removed, then the criminal law on assault should protect children as it protects adults from assaults in all settings of their lives, whether or not the assault is disguised as discipline. Children need this "portable" protection from violence in all settings and by any perpetrators. Because the purpose is to deliver a clear message that it is as unlawful and unacceptable to hit a child as to hit anyone else, it is useful for the various sectoral laws relating to schools, other institutions, child labour situations, penal systems to also include explicit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it appears that corporal punishment is already prohibited in the penal system for young offenders and as a punishment within penal institutions. While there may be policies to prevent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it appears there are also authorisations of school corporal punishment still existing in the law. While there is no explicit defence or justification of corporal punishment by parents, the protections in children's law and in domestic violence law are certainly not interpreted as prohibiting all corporal punishment. I understand that the Child Welfare Act is currently under review this could present one opportunity to fulfil Korea's human rights obligations to children, and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prohibit explicitly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 of children in all settings including within the family. (And in addition, any authorisations of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or other institutions must be removed).

Of course, law reform on its own is not enough. But law reform is necessary. While the law says it is OK to hit children, public education to try and change prevailing attitudes will have little impact.

No state can pretend that it has an effective child protection system while its laws authorise direct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the home, in schools and institutions, in penal systems. It is a nonsense which really has to be exposed and challenged.

We have to emphasise that the first purpose of what we are doing is to require states to recognise and realise children's rights, by quickly developing a clear and adequate framework or foundation of legislation in which corporal punishment and all other forms of cruel or degrading punishment are clearly prohibited. The first purpose of any good law must be preventing crime, in this case preventing assaults on and humiliation of children; the criminal law also exists to punish those who commit crimes but that is not its first purpose. From the child victim's point of view, it is a bit late once they have suffered the assault.

The laws that prohibit all corporal punishment, reflecting children's right to equal protection, must be taken seriously, but when parents are the perpetrators, prosecution and other formal interventions are very seldom going to be in the child's best interests. Prosecuting parents, and sending them to prison or fining them, is very seldom in their children's interests, whatever the crime.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provides detailed advice on this in its General Comment No. 8, suggesting that prosecution and formal interventions should only occur when judged necessary to protect a child from significant harm and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his could be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to re-emphasise its primary aim. Parents are not going to be charged or prosecuted and taken to court for minor assaults, any more than adults are for minor assaults on other adults there is also the legal principle of *de minimis* that the law does not concern itself with trivial things.

There will need to be very clear guidance for all those working with and for families and in child protection, including the police and courts, to ensure the law is implemented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victims.

Nevertheless, fulfilling children's human rights requires that assaults on children should be criminal offences just as assaults on adults are.

When it comes to implementing prohibition in the schools or other institutional settings, it is very important that teachers and carers should know that assaulting children is a criminal offence, and that they risk not only dismissal but also prosecution if they continue to use corporal punishment.

Public education and of course appropriate initial and in-service teacher training must accompany law reform. The process of law reform in itself should be educational if properly disseminated. Some argue that parent and teacher education should come first, and law reform should follow. But laws that authorise or defend corporal punishment fatally undermine attempts to change traditional habits of violence towards children. Nobody would seriously argue that we should wait to prohibit all violence against women until we have achieved full employment and universal anger management courses for men. This issue has become globally visible: the persisting legality and social acceptance of corporal punishment is clearly confirmed as a human rights violation. Banning corporal punishment is children's right now, not tomorrow or next year. Why should children wait any longer?

We must not put governments off this long-overdue reform for children by suggesting that a new and separate and very expensive educational programme is required. Because traditional attitudes to children run so deep, educational efforts will need to be sustained over a very long period. We should encourage government to see that the key messages and they are, after all, quite simple messages should be built into all the state's contacts with future parents, new

parents and existing parents: at birth registration for example, through all points of contact between health services and new parents and families, on entry to pre-school and school and in the school curriculum. There is no shortage of materials and programmes that can be used and adapted.

It is important to aim to build a broad alliance for reform, bringing in professional groups including paediatricians, doctors and psychologists, teachers, social workers, parent groups,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organisations, organisations working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faith groups and so on. And of course it is important to engage with children and child-led organisations who want to work on this issue. It is an adult responsibility to eliminate adult violence against children, but children have a right to express their views and have them taken seriously. And children can be the most powerful advocates for change...

Law reform to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in many states has proceeded sequentially first banning it in penal systems, then in schools and other institutions, then in foster-care, and finally in the home. But for children, there is no logic in this. It is in their homes and families that children are hit the most. It is children's right to be protection from all forms of violence, including all corporal punishment, wherever they are.

If one campaigns for less than complete prohibition of all corporal punishment in all settings including the home, one loses the arguments of principle and logic, the case for reform is weakened, and children have to wait even longer. This is not an issue where compromise is useful, or acceptable.

peter@endcorporalpunishment.org

www.endcorporalpunishment.org



〈제 1 세션〉



체벌금지를 위한 정책 과제

1. 체벌금지를 위한 교육 정책의 방향
김석연 교감 (충북 금천고등학교, 전 교육부 학생인권담당)
2. “그린마일리지” 정책이 체벌금지정책의 실질적 대안인가?
장은숙 회장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3. 교사의 ‘감정 없는 체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김종일 상임대표 ((사)뉴라이트 학부모연합)





체벌금지를 위한 교육 정책의 방향

김 석 언 교감
(충북 금천고등학교, 전 교육부 학생인권담당)

체벌금지를 위한 교육 정책의 방향

김 석 언 교감 (충북 금천고등학교, 전 교육부 학생인권담당)

1. 체벌¹⁾에 대한 사회적 논의

○ 1997.6 제4차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권고

-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이 존중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서의 체벌을 금지한다.
- 체벌금지의 기본 정신을 교육 관련법에 반영토록 하고, 구체적인 관련사항은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토록 한다.

○ 1997.12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초·중등교육법('97.12.13. 제정)>

제18조(학생의 징계)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98. 2.24 제정)>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체벌 금지 법제화 인식 확산

⇒ ‘기타의 방법’, ‘교육상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의 조문이 애매모호하여 법령규정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

1) 일반적 정의 : 교원이, 교육활동 중,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간접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교육개혁위원회(97.6) : 교사(상급생)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학생(하급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 학생·학부모 등이 교사의 체벌에 대하여 112 신고('98.12이후)가 빈발하고, 체벌 교사 연행을 둘러싼 교권 위기 논란에 따라 VIP의 체벌문제 해결 지시

○ 1999.1 국무회의 VIP 보고 체벌관련 대책

↳ 교육부 「집단따돌림 및 교권에 대한 부당한 저항 근절대책」 보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 한 현행법을 구체화해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의 합의로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체벌규정을 만들도록 함
※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란 형법상 정당행위를 말함.

○ 1992.2 교사 체벌권 입법 추진

○ 2000.1 헌법재판소 : '폭행죄라도 정당행위는 죄가 안됨'

⇒ 현재의 판결을 언론 등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보도함으로써 '교육적 체벌 허용' 의식 확산

○ 2002.6 교육부 학생생활규정예시안 제정

-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에 의거 단위학교별로 체벌 규정을 만들도록 함

【제4장 학생지도 및 상벌제】

제40조 【벌의 종류】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체벌(體罰) 외에도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으며, 지벌이나 덕벌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1조 【체벌기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를 체벌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
2. 교사가 체벌할 때에는 사전 학생에게 체벌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하며, 해당학생이 응하지 않거나 대체벌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42조 【체벌대상】 체벌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실시할 수 있다.

1.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4. 학습태도가 불성실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때
5. 본교에서 운영하는 벌점규정에 의한 벌점기준 ()점을 초과했을 경우 등

○ 2002.9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생활규정예시안 개정 권고

○ 2003.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차권고

-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 체벌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동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공공교육 캠페인 수행
-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계 형태를 조성

※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항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004.6 대법원 판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는 체벌은 유죄’

- ☞ 교육적 체벌에 대한 세간의 막연한 인식에 대하여, 정당행위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시함으로써 체벌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확인

○ 2004.10 헌법재판소 판결 ‘체벌 조항 위헌 심판 청구 각하’

- ☞ 현행법상에서 체벌금지가 법제화되어 있음을 확인
- ☞ 체벌이 폭행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정당행위는 별하지 않음

○ 2005.10 부적격 교원대책(상습적 체벌교사 중징계)

<참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05.10.6 교육인적자원부령870호)

제2조 징계양정 기준

5.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 경징계~중징계

제4조 징계의 감경

- 제2항 5호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2006.3 체벌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 2006.7 헌법재판소 결정

재판관 9명 중 재판장 등 6인 기각, (체벌 금지), 주심재판관 등 3인 반대 의견(체벌 불가피)
<판결 취지>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방법으로서도 훈육·훈계가 원칙이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취지다. 이러한 법령(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들에는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특별히 존중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서려있다.

※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체벌 허용 기준

< 대법원('04.6.10) >

○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채 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 행위
-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 모욕을 가하는 지도 행위
- 학생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 학생의 상별·연령·개인적 사정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

< 헌법재판소('06.7.27) >

- 첫째,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훈육이나 훈계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체벌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사의 성격에서 비롯되거나 감정을 내세워 행해지는 폭력행위는 교육상 필요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다른 대체수단으로 지도할 수 있음에도 체벌을 하는 경우에는 체벌의 불가피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 둘째, 체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체벌 전에 학생에게 체벌의 목적을 알리고 훈계하여 변명과 반성의 기회를 주고, 신체의 이상 유무를 살핀 후 시행해야 한다. 만약 학칙에서 정한 체벌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 셋째, 방법이 적정해야 한다.
체벌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체벌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위험한 도구나 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체벌의 장소는 가능한 한 비공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야 한다. 체벌 부위는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은 둔부 등이어야 한다.
- 넷째,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의 성별·연령·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고, 특히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2006.8 두발자유화, 체벌금지 법제화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모임(최순영 등 국회의원 23명)

※ 체벌에 대한 견해 차(06.7.27. 현재 결정문에서 인용)

☞ 체벌 금지 입장 : 체벌은 비교육적인 방법(결정 논거)

- 관심 영역과 개성이 다른 많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적절한 교육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체벌로 쉽게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님
- 또 벌받을 만한 행동이 반드시 맞을 짓은 아니며, 진정한 벌이나 지도란 학생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칫 심각한 인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체벌보다 학생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일깨우고 민주적 가치와 인권 의식을 체화시키는 대안적 훈육방법, 효과적인 학급경영기법 및 학생지도능력을 강화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로 교육담당자의 직무임

☞ 체벌 불가피 입장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되어야(반대 논거)

-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개인주의가 발달할수록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는 의식도 더욱 소중해진다. 그리고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요즘에는 학교의 인성교육이 더욱 긴요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미성년의 학생들을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고 남과 어울려 사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여야 함
- 교사는 훈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고 훈계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훈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이는 교사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고 책임
- 교사는 학생의 인성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이므로, 학생에 대한 훈계의 필요성과 훈계방법의 선택에 대한 교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임

2. 체벌 현황

○ 체벌금지 학교 현황

- '06년 12월말 기준 전체 학교의 53.1%가 체벌을 학칙으로 금지.

학교급	학교수	체벌		비고
		금지	제한허용	
초	5,678	3,832(67.5%)	1,846(32.5%)	
중	2,959	1,159(39.2%)	1,800(60.8%)	
고	2,117	715(33.8%)	1,402(66.2%)	
계	10,695	5,706(53.1%)	5,048(46.9%)	

※ 체벌금지 학교 수 :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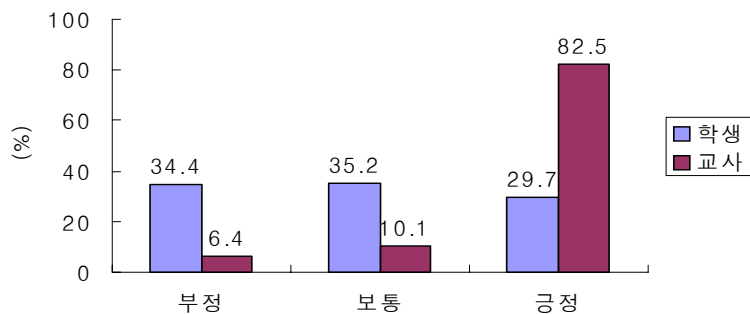
'03년 2,845개교(27.7%)⇒'04년 5,369개교(52.16%)⇒'05년 5,458개교(51.0%)

○ 체벌의 효과에 대한 여론('06.12 R&R)

- 학생생활지도상 체벌의 필요성

생활지도상 체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사는 82.5%가 학생은 29.7%가 필요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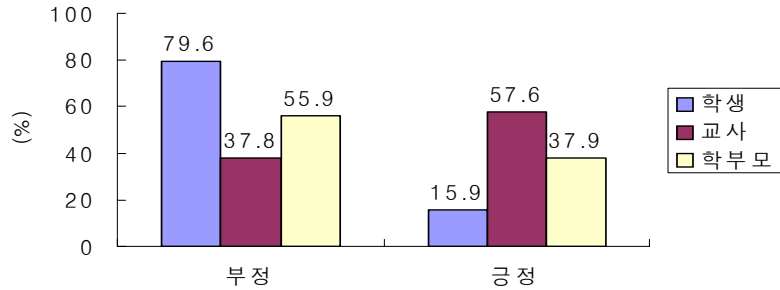
생활지도상 체벌의 필요성



- 체벌의 효과

체벌의 효과에 대하여 교사는 57.6%, 학부모는 37.9%, 학생은 15.9%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응답

체벌의 효과



3. 체벌 대책

- 학교 내 문제는 가능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체벌은 교육적 효과보다는 학생의 정신적 상처를 유발시키고 폭력을 재생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학생생활지도 방식 정착
- 체벌 금지에 따라 교사가 학생지도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교육적으로 의미있고 다양한 생활지도 방법을 개발 실시하도록 권장

가. 법령 개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7항의 조문 내용 중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문구가 ‘체벌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체벌 금지 법제화 논란 야기
- 법리적으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체벌은 폭행죄에 해당함
- 체벌 허용 논란의 근거가 되는 조문 삭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7항

【현행】

- 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 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98년 현행법 제정당시와 같이 체벌 관련 논란이 비등할 수 있음

나. 고충 처리 체제 정비

- 극히 일부의 과도한 체벌 사례의 경우를 제외하면 고소·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고소 사건의 경우도 정식재판 이전의 조사 및 기소단계에서 종결처리
 - 2003년 이후 최근 5년간 하급심에서 체벌 사안이 심리된 사례가 없음
-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구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전국 41개 지역센터)과 협력하여 체벌 사안 감시 및 신고 유도(신고전화 1391)
 - ※ 사례 : 충청북도교육청과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체결('06.11.21)

다. 교육기관 내 체벌 사전 방지 장치 마련

- 교사가 체벌을 할 때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교장에 신고하도록 하여 학교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 학생고충상담전화(1588-7179)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라. 체벌없는 학교 시범운영

- 2007년에 전국 총95개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체벌없는 학교”를 운영하여 체벌 대체 방법을 도출, 그 결과를 2008년 2월에 전국 모든 학교에 보급할 예정



“그린마일리지” 정책이 체벌금지정책의 실질적 대안인가?

장은숙 회장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그린마일리지” 정책이 체벌금지정책의 실질적 대안인가?

장은숙 회장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1. 들어가며

그린마일리지는 국정과제의 하나인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2009년도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온라인 상벌점제)을 말하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체벌을 금지하고 그 대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상벌점제 시행을 통해 체벌을 대체하는 효과와 이를 통해 학교규칙을 준수하게 하고 인권존중,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학생 생활지도 풍토를 정착하여 학생 생활지도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별로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가 과연 체벌금지정책의 실질적인 대안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격적인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또한 비인격적인 체벌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때”로 포장되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체벌도 반대해 왔다. 이는 체벌이 교육적이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인격을 갖추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 가르침을 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할 학생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의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동법시행령은 제31조 7항에서 ‘학교의 장은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미명하에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오래전 교육인적자원부는 체벌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체벌을 없애기 위해서 매의 굵기와 길이는 물론 체벌의 절차와 체벌방법 그리고 체벌장소, 체벌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단위학교에 지침을 내렸다. 그리고 학교현장은 이를 근거로 체벌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이 체벌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아이들은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체벌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었고, 종종 언론을 통해 드러난 폭력적인 체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 대안으로 제시 된 것이 별점제이다. 이 별점제 역시 교사와 학생이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손쉬운 방법의 하나로 별점을 주면서 오히려 역효과로 나타났다. 학생을 선도하는 효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차라리 맞는 것이 더 낫다’라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별점 기록이 입시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도 있어서겠지만 체벌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별점이 가중되는 이중으로 학생들을 옥죄이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9년부터 시행되는 그린마일리지도 상점과 별점제로 나누어지지만 학생들이 처해있는 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에서 집적되어 개인정보의 유출이 될 수 있는 제도가 과연 학생을 위한 제도인지 다시 한 번 재검토되고, 보완되어 시행해야 할 것이다.

2. 상벌점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례들

2-1. 상벌점제의 무리한 적용

상벌점제는 개별 학교의 선도규정에 의거 시행되지만 그러한 선도규정은 분명히 초중

등교육법시행령 39조에 의거하여 적용이 이루어진다. 시행령 39조 2항에서 이러한 징계에 대해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 즉 최소한의 징계와 최대한의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교에서는 이를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 개별 규정에 대한 현실적 고려 없이 현상적, 결과론적, 행정 편의적 결정으로 중징계의 남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징계를 하기 위한 선도규정 기준표와 선도위원회 구성 등 세부 사항 등은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 징계들은 학생의 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프로그램은 가지기보다 일회적이고 징벌적 규칙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퇴학처분에 의한 인권침해(2008.04.03)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요지 : 진정인의 아들이 00시 00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 명찰 미부착, 흡연, 무단 외출, 두발위반, 야간 자율학습 미참여 등으로 별점을 많이 받아서 피진정인으로부터 2007. 5.말경 퇴학예정 및 권고전학의 징계조치와 전학 중용을 받은 것은 부당하며 이와 같은 사유로 20여명의 학생들이 같은 조치를 당함. 또한, 같은 관내의 교장들이 피해자들의 전학(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것은 학생지도 의무를 다른 지역 학교에 전가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임.

결정요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법령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 등에 대하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학예정 조치 및 전학권고를 함으로써 동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또한, 위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에서 퇴학예정 학생들의 전학(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특별한 근거법령이 없음.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의적인 조치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00고등학교에서의 상벌점제에 의한 무더기 전학권고에 대해 인권위는 다음과 같은 권

고 사항¹⁾을 마련하였다.

첫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 (학생의 징계 등) 제 1항의 학생에 대한 징계는 단계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퇴학처분)별로 규정되어 있고, 제 2항에는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2. 상벌점 기준표의 추상성, 비민주성

- 학교장의 허가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하나 학생
- 정치 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위의 학칙들을 보면 학교 명예 훼손이라는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자기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불온문서²⁾라는 불확정적 정의와 단체 행사에 참여에 대한 강요, 때로는 불합리한 강제가 횡횡한다. 학생이 공직자가 아닌 이상에야 정치적 표현이 억압되거나 다른 기타의 자기표현이 제한되는 것은 비민주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언행이 불손한 학생

위에 보이는 학칙에서 예의, 용의, 언행이 ‘바르지 않은’ 학생에 대한 판단은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용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 - 앞머리 5cm 치마는 무릎 밑으로 0cm 등이 있을 수 있다 -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럴 때는 그 규정자체가 문제시 될 수도 있다. 다수의 이런 사항과 관련된 별점들은 대략 선입관과 편견에 의한 개인적 감정에 좌우되어 다른

1) <http://www.humanrights.go.kr> 학교 선택권은 학생에게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8

2) 최근 국방부의 불온문서 논란은 이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사안과 연관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상벌점제의 기본취지인 합리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교사-학생 간의 균형적 동반자 관계보다 관리자-관리대상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크다.

○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벌점 10점

최근 촛불 정국에서 여중생을 비롯한 학생들이 큰 역할적 비중을 차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촛불 정국의 후폭풍으로 전사회적 단체에 대한 검거 열풍이 몰아칠 때 학교에서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 집회 참여 학생에 대한 일괄적인 수사와 경고와 일상적 협박들이 일어난 것이다.³⁾ 이는 서클 조직과 교내 집회의 자유 억압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신고사항인 것들이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허가사항으로 두어 자유로운 의사표현들을 막고 있는 것이다. 민주적 시민 양성이란 일반적 교육의 개념에서 보았을 때 너무나도 퇴행적인 조항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교칙들은 일반적 서울 중고등학교 선도규정의 공통사항이며 세부사항들은 2007 중원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참고 하였다.

2-3. 상벌점제의 비일관성, 자의적 행사

학교, 학급, 교우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선행을 해야만 상점을 줘야 하는데, 교사의 잡무를 보조하는데 동원하고 상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나 선행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학생들은 벌점을 상쇄하기 위해 또는 대학 진학을 위해 상점을 받으려고 합니다.⁴⁾

위에서 보듯이 교사의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학생들도 상벌점제의 취지인 바른 인성 함양 등의 목적보다는 상점을 받기 위한 행위로 수단화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이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상점을 쌓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의미화하기보다 피동적으로 받아들일 염려가 있다. 강제적으로 선행을 하게 하는 것은 교화가 아닌 협박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바로 비일관성인데 교사는 기준표

3) 형사가 수업중 학생 불러내 ‘배후’ 조사 전주/박임근, 김성환 송경화 황춘화 기자 2008/05/16 <한겨레신문>

4) <http://blog.hani.co.kr/jinwoongyong/6324>

에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상점을 매기기도 하고 벌점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는 합리적 학생 생활 지도라는 상벌점제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2-4. 상벌점 부과와 비균형성

사례1) 벌점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벌점이 월 15점 이상이 되면 교내봉사를 해야 합니다. 실제 매월 학생 십여 명이 교내봉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매월 십여 명의 전과자(?)가 양산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에 줄 수 있는 상점의 상한이 5점에 불과한데 벌점은 10점이나 됩니다. 상점은 월 총6점 이상을 받을 수 없지만 벌점은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내봉사 처벌을 받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빌린 책 반납을 연체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2007년 10월 한 달간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점은 16점(9건)밖에 주지 않으면서 벌점은 무려 252점(125건)이나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복위반 104점, 지시불이행 60점, 복장위반 30점, 교사에게 불손 30점 등입니다. 252점이란 벌점은 학생 16명을 모두 교내봉사로 처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학생들은 상벌점 규정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부당하다고 문제제기를 해봐야 찍혀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상벌점 오남용에 적극 가담합니다. 그 결과 한달에 수백 점씩 벌점을 주는 교사는 생활지도의 공로를 인정받아 학교 설립 20주년 기념 이사장상을 받기도 했습니다.⁵⁾

사례2) B고교가 공개한 2006~08년 학생선도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07년까지 벌점과다로 인한 퇴학이나 전출은 없었다. 그러나 2008년 6월 4명의 학생이 벌점 과다로 교내봉사 및 전문상담교육을, 10월 2명이 벌점과다로 퇴학, 1명이 교내봉사 및 특별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B고교 학생 변동현황에 따르면,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자퇴나 전출한 학생이 2006

5) <http://blog.hani.co.kr/jinwoongyong/6324>

년 5명, 2007년 5명이었으나, 올해 11월 현재 10명으로 전년보다 2배가 늘어났다.

B고교는 외부기간으로부터 선행사실이 알려진 학생, 습득물 신고 등 5가지 사안의 경우 각 5점의 상점을 1주 단위로 1회에 한해 줄 수 있다. 상점이 20점 이상이면 5월과 10월에 모범학생으로 학교장이 표창한다. 별점의 경우 복장위반·두발규정위반·수업시간 휴대폰사용 등 21가지 사항에 대해 최소 2점에서 최대 10점까지의 별점을, 1일 단위로 1회에 한해 줄 수 있다. 별점이 20점 이상 누계되면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된다.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최고 퇴학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B고교도 A고교와 마찬가지로 상점과 별점이 상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난 9월 학교장이 바뀐 후 두발규제가 강화되고(윗머리 5cm, 옆·뒷머리 1cm) 두발규정 위반과 수업시간 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별점이 2점에서 10점으로 바뀌면서 별점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두발규정을 한 번 위반하고 수업시간 중 핸드폰을 한 번 사용하다 적발되면 바로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별점이 강화된 9월 이후부터 학교생활 부적응과 대안학교 입학으로 인한 자퇴·퇴학생이 6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B고교 관계자는 "최근의 자퇴나 퇴학생들은 올 초부터 별점이 누적된 학생들"이라며 "별점 20점이 넘더라도 봉사활동으로 점수를 감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과하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B고교 C군은 "얼마 전 한 학생이 수업이 시작했는데도 떠든다는 이유로 별점을 10점이나 받기도 했다"며 "상점을 받는 경우를 본적이 없고 상·별점제에서 상점은 별점을 명분화하기 위한 무의미한 점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⁶⁾

3. 상별점제의 제도적 보완

앞에서 밝힌 대로 상별점제는 비일관성, 비균형성, 무리한 적용 등의 문제점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비교육적이고 폭력적인 체벌의 대체 효과로 작용한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시행착오로 부작용이 심화되지 않게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6) 두발단속 3번에 별점 15점...50점 넘으면 퇴학! - 오마이뉴스 2008/12/01 장호영 기자

우선, 체벌이 상당할 정도로 교사의 자의적 기준에 의거해 행해졌던 것처럼, 상벌점도 그렇게 될 여지가 다분하다. 여전히 합리성과 타당성의 문제는 언제나 발생된다. 때문에 벌점제를 시행할 때에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 할 것이다. 학생들도 자신들의 용의 복장 규정이나, 생활규정, 선도규정을 제정할 때 학생회를 통해 의견이 반영된 규정을 더 잘 지키듯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된 벌점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 하다.

다음으로는 지금의 상벌점제에 의한 포상과 징계에 대한 교육적 고민이 더 필요하다. 포상으로 보통 주어지는 것은 상장 수여이다. 상장을 통한 칭찬은 대외적인 선전효과와 동기유발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벌점에 의한 징계이다. 징계는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처분이 있는데 벌점에 의한 퇴학 처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학교는 가정 다음으로 개인의 인성 교육을 담당하는 최후의 보루로써 학생을 추방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며 무책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요즘 학교의 성적이 공개 되면서 서열이 생기고 있고, 타 학교와 비교되면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선도의 목적보다는 다른 학교로 내보내는 기제로 벌점제가 남발되는 것이다. 때문에 벌점제가 징계가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상벌제가 진정 학생을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선도하는 것이 목적이려면 단순히 벌점이 높다는 이유로 전학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벌점을 많이 받은 학생에 대한 지도 시스템을 학교가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담배 피웠으니까 20점, 태도가 불량하니까 1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축적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점검과 함께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제안과 지원이 교육청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봉사활동이나 착한 행동을 통해 벌점을 상쇄한다든지, 벌점을 통해 징계를 주거나 포상에서 제외 하는 것이 아니라, 벌점 누적 학생의 생활 교육에 필요한 시스템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4. 나가며

그린마일리지 시행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현장에서 교육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아직도 행해지고 있는 차별을 근절시키는 것이다. 그린마일리지처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기 보다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 하다. 지금과 같은 거대한 학급규모와 교실의 과밀화,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속에서 학교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차별 없이 학생을 지도 할 수 없다는 인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전 근대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지금 시대에 차별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의 기본권인 의사 결정권, 표현의 자유, 사생활이 보장되고 자신들을 규제하고 있는 학칙과 규율 개정등에 학생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고, 학생자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생회의 법제화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학교 내에서 학생은 선도와 훈육, 보호, 통제의 대상에서 「헌법」과 「국제 인권조약」 등에서 보장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침해 요소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법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폭력문화를 양산하고 아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 내의 차별이 당장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인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기에 미성숙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차별이 필요하다는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잘못된 인식과 우리사회의 폭력문화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먼저 법제도로서 차별금지를 해야 한다.

<참고>상벌제의 문제와 사례는 우리회 대학생 인턴의 도움을 받아 작성 했습니다.



교사의 ‘감정 없는 체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김 종 일 상임대표
((사)뉴라이트 학부모연합)

교사의 ‘감정 없는 체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김 종 일 상임대표 ((사)뉴라이트 학부모연합)

현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현장에서 행해지는 교사의 체벌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교육적 목적을 위한 학생 체벌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는 교육계 일각에서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므로 교육적 체벌은 정상적 교육 활동과 교권 보호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교사에게 권위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기본적인 교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교육을 잘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교사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지나친 이기심일 수 있다.

1. 땅에 떨어진 교권

이 세대는 이유와 원인이 어찌되었든 아이들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교사가 학생 눈치를 보아야 하고 매를 들기는커녕 꾸짖기도 겁나는 세상이다. 학생을 나무랐다고 학부모가 교실로 뛰어들어 여교사의 머리채를 흔들며 욕설을 퍼붓고 초등학교 어느 여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학생을 나무랐는데 학생이 “×발, 지가 뭔데...”라고 대들었다.

이미 빠른 정보를 통하여 실시간 전해지고 있는 갖가지의 모습 - 교실에서 교사가 체벌을 가하는 모습이나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동영상이나 뉴스는 이제 너무 만연되어 있다.

누가 봐도 교권이 말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하다. 이렇게 되고 보니 체벌을

금지했던 국가들도 교육적 차별이라는 조건과 차별부위를 판례 형식으로 명시하는 등 차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은 교육적 목적을 상실한 폭력이라고 주장하며 차별 완전금지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2. 징계권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자.

교사와 학생 모두는 차별로 인한 권위주의의 공간을 원하지 않는다.

원만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인간적인 신뢰를 쌓기 원하고 문제 해결하는 미래의 민주 시민을 키워내는 공간이 되길 원할 것이다.

이런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현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는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화와 조언만으로 자유분방한 학생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만큼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차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인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인권 침해가 된다고 판단 할 수 있는 차별이 다소 가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되나 이것을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이 소위 “징계권”내지는 ‘벌점제’이다.

이 교육방법은 교사의 잘못된 제재가 가해졌을 때 학생은 규정상의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민주시민양성의 교육적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차별을 가하는데 있어 종종 지탄을 받고 있는 ‘감정이 있는 차별’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외국의 경우 소란을 피우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교장하고 교사 분들이 두 시간에서 네 시간을 학교에 잔류를 시키고 교실에서 즉시 퇴출해서 반성교실이라는 곳에서 반성을 하게도 하는 방법 등이다.

3. 감정이 없는 올바른 체벌

이러한 방법으로도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교사는 반드시 ‘감정이 없는 올바른 체벌’을 해야한다.

만약 올바르지 못한 체벌로 인해 교사의 심리적 손상과 제자의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보게 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교사는 적절한 체벌을 가할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교사도 인간이다. 교사의 권위를 부여받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체벌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때때로 간혹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인권을 앞세워 너무나 세차게 교사의 자격을 운운하며 반발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체벌이 순기능 못지 않게 많은 역기능을 지니고 있음도 사실이다.

물론 여러 학교에서 이러한 체벌과 관련하여 지나친 교사의 체벌과 체벌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바고 이에 따라 학부모 뿐 아니라 국민들이 경악하는 경우도 또한 많다. 그렇다고 하여 주어진 스승으로서의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며 천직으로 여겨 쉽 없이 학생들을 돌보며 진액을 다하는 교사들에게까지 올무 씌울 뿐 아니라 기본적 교권을 박탈하면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라고 한다면 이는 학부모로서도 학생으로서도 참으로 예의가 없는 것이다.

4. 사랑의 체벌

최초의 미국 유학생인 유길준이 공부했던 학교 보스턴 거버너 더머 아카데미를 보자 1800년대 교무실과 교실 사이 체벌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한다.

바이런은 “대영제국의 번영과 영광은 퍼블릭스쿨 회초리 끝에서 시작되었다”고 갈파했다. 지금도 영국 잡화상에서는 체벌용 회초리를 팔며 많은 가정 또한 벽에 회초리를 걸어 놓고 있다고 한다.

교육에 있어 어찌 잘잘못을 따질 때만 회초리의 체벌이 있겠는가?

수업시간에 떠드는 도가 지나치자 교사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친 나의 잘못이다”

라면서 당신의 좋아리를 피가 나도록 때렸다는 감동적인 스승의 회초리에서 교육의 진실이 묻어나오고 있지 않은가?

심각하게 교권이 떨어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책임 또한 여럿의 책임감 없는 교사들로 기인한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불합리한 체벌을 남용하는 폭력적인 교사가 설 자리는 반드시 없어야 하고 교사의 체벌에 절대성을 부여해서도 아니되겠지만 그동안 많은 교육적 효과를 발휘해 온 것을 감안하고 또 진정한 교사의 길을 가는 대다수의 많은 스승들을 위한다면 적절한 체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 2 세션〉



체벌금지에 대한 교육적 대안 모색

1. 아동체벌 전면금지 조치 시행(뉴질랜드)
Dominique Plateau (세이브더 칠드런(스웨덴) 아태지역 담당관)
2. 초중등교육법(학생인권법) 입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정용상 보좌관 (권영길 국회의원실)
3.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의 의의와 전개과정
장휘국 교육위원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4. 체벌 없는 교육활동
이문석 교사 (학생생활연구회)





아동체벌 전면금지 조치 시행 (뉴질랜드)

Dominique Plateau

(세이브더 칠드런(스웨덴) 아태지역 담당관)

1

아동체벌 전면금지 조치 시행(뉴질랜드)

Dominique Plateau (세이브더 칠드런(스웨덴) 아태지역 담당관)

모든 유형의 아동 체벌 전면 금지 조치 시행:

뉴질랜드 – 2007년 개정법



기존 법률

“아동의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는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에 대한 교정 수단으로서 물리력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법률

- 법적 항변권 폐지
- 교정을 위한 물리력의 사용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 도입



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 아동의 권리
- 체벌과 아동 학대 간의 연관성
- 연구 증거
- 비폭력적 보육의 강조
- 변화를 위한 리더십
- 아동의 의사
- 효과적인 권익 옹호



아동의 의사:

물리적 체벌은 효과적인 훈육 수단이 아니다.

- 부모에 대한 반감이 생긴다. 엄마, 아빠를 미워하게 될 수 있다. (6세 남아)
- 복수하고 싶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9세 남아)
- 부모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9세 여아)
- 서러운 느낌이 든다. 되갚고 싶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9세 남아)



효과적인 권익 옹호 - NGO 주도

- 정치권의 지원 확보
- 지원 확보 - NGO 및 전문 단체
-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여론 및 토론
- 바람직한 보육 방법
- 연구 증거



과제

- 체벌: 대중적인 전통 - 일반 국민들의 저항
- 정치권의 고민 - 대중적 지지 확보 난망
- 부모에 대한 처벌 가능성 우려
- 언론 - 항상 우호적인 것은 아님



개정법 시행 후 18개월 경과

- NGO와 아동권익위원회에서 개정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확대할 목적으로 홍보 책자 발간
- 개정법에 대한 높은 인지도(90% 이상)
- 태도의 변화
- 행동의 변화
- 경미한 위반으로는 부모가 처벌되지 않음



개정법에 대한 지지도

아동권익위원회의 의뢰로 실시된 2008년도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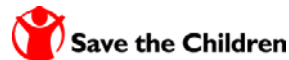
- **43%** 개정법 지지
- **26%** 중립
- **28%** 반대



태도의 변화

특수한 상황에서라면 자녀를 때리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2007년도 OCC 연구)

- 1981년(Jane Ritchie): 남성의 92%, 여성의 86% 동의
- 1993년(OCC): 87% 동의
- 2007년(OCC): 58% 동의



행동의 변화

- 26세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후향성 연구 (Dunedin Multidisciplinary Study)에서 응답자의 80%,
- 5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MSD 2005)에서 응답자의 51%,
- 성인 대상 설문조사(2007 AHS)에서 응답자의 17%가 가정에서 아동에게 체벌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경찰서 신고 현황:

- 체벌 같은 경미한 폭력 행위 신고 건수는 극히 드물었음
- 보다 심각한 폭력 행위 신고 건수는 소폭 증가했음.



감사합니다.



Achieving full prohibition of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New Zealand – Law Reform 2007



Old Law

“Every parent or person in place of a parent of a child is justified in using force by way of correction towards a child if that force i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New Law

- Repeals legal defence
- Introduces explicit ban on use of force f or correction



Factors influencing change

- Children's Rights
- Link between corporal punishment and child abuse
- Research evidence
- Emphasis on non-violent parenting
- Leadership for change
- Children's voices
- Effective advocacy



Children s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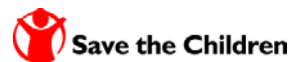
Physical punishment is not an effective form of discipline

- It makes you angry at your parents; they might hate their Mums and Dads (6 year-old boy)
- It makes you feel like you want payback and revenge (9 year-old boy)
- It feels like they [parents] don't love you anymore (9 year-old girl)
- You feel sad. You feel like you want to get them back (9 year-old boy)



Effective advocacy – led by NGOs

- Engaging political support
- Engaging support – NGOs and professional groups
- Establishing supportive networks
- Public information and debate
- Positive parenting information
- Research evidence



Challenges

- Corporal punishment: a popular tradition – public resistance to change
- Political caution – not popular cause
- Parental anxiety about risk of prosecution
- Media – not always supportive



18 months after law reform

- NGOs and Children's Commissioner developed material aimed at explaining new law and increasing support for it.
- Awareness of new law high (over 90%)
- Attitudes changing
- Behavior changing
- Parents not being prosecuted for minor infringements



Support for the law

Research Commissioned by Children's Commissioner
In 2008:

- **43%** supportive of the new law
- **26%** neutral
- **28%** opposed



Attitudes are changing

There are certain circumstances when it is alright to hit or smack children? (OCC research 2007)

- 1981 (Jane Ritchie) 92% of men and 86% of women agreed
- 1993 (OCC) 87% agreed
- 2007 (OCC) 58% agreed



Behaviour is changing

- 80% in retrospective study with 26 year olds (Dunedin Multidisciplinary Study)
- 51% of children 5 and under in last 3 months (MSD 2005)
- 17% of adults had witnessed an adult hitting a child in their home (2007 AHS)



Police reports indicate:

- Very few complaints for minor assaults e.g. smacking
- Slight increase in complaints for more serious assault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초·중·등교육법(학생인권법)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정 용 상 보좌관
(권영길 국회의원실)

◎ 입법경과

- 2008년 11월3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2008년 12월3일 법안발의
- 2008년 3월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미발의

◎ 입법취지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생들은 체벌, 조기등교, 두발규정, 개인인격 침해 등이 교육적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일어나고 있음.

학생 또한 헌법에 보장하는 국민적 기본권을 향유하여야 함에도 실제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실정임. 또한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학생들의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금지, 인권실태 조사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기에 금지규정을 명문화 하고, 관련 조사와 교육 사업에 대한 입법화를 하고자 함.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주요내용

- 학생 징계시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진술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 육체적 체벌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업시간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추가학습이나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행위, 학생 두발·복장·개인소

지품·일기를 검사하는 행위, 가정환경·성적·외모·성별·국적·종교·장애·신념·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행위 등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 교육공무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5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8조의6 신설).

◎ 입법 쟁점사항

1. 열악한 초중등 교육의 현실

초등학교 학급당/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또한 이에 대한 개선 속도 역시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님. 지속적이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교원 총 정원은 2009년 들어서, 동결된 상황임.

각 지역 교육청 역시,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정규 교원의 채용을 꺼리었음. 결원인원이 비정규직 기간제·시간강사로 채워지고 있는 추세임.

교육단계별, 학급당 학생 수(2005)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한국	32.6	32.3	32.6	36	34.8	35.7
OECD평균	21.7	20.4	21.5	23.8	23.0	24.1

2007 OECD 교육지표로 본 한국교육(한국교육개발원)

교육단계별, 교원 1인당 학생 수(2005)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 기관
한국	20.2	28.0	20.8	16.0	자료없음
OECD평균	15.3	16.7	13.7	13.0	15.8

2007 OECD 교육지표로 본 한국교육(한국교육개발원)

2008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급당/교원1인당 학생수

구 분	초등학교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
총 계	5,813	125,935	172,190	3,672,207	29.2	21.3
서 울	578	20,973	28,391	633,486	30.2	22.3
부 산	293	8,233	11,089	227,494	27.6	20.5
대 구	211	6,191	8,476	189,585	30.6	22.4
인 천	224	7,096	9,516	205,781	29.0	21.6
광 주	139	4,023	5,306	127,758	31.8	24.1
대 전	137	3,959	5,432	120,881	30.5	22.3
울 산	116	3,080	4,196	94,111	30.6	22.4
경 기	1,094	27,991	37,693	920,586	32.9	24.4
강 원	361	4,541	6,401	110,747	24.4	17.3
충 북	256	4,215	5,864	116,711	27.7	19.9
충 남	430	5,742	8,270	150,382	26.2	18.2
전 북	420	5,672	7,866	143,293	25.3	18.2
전 남	453	6,205	8,627	141,424	22.8	16.4
경 북	497	7,296	10,210	187,309	25.7	18.3
경 남	498	9,025	12,488	254,368	28.2	20.4
제 주	106	1,693	2,365	48,291	28.5	20.4

구 분	중학교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
총 계	3,077	58,804	108,700	2,038,611	34.7	18.8
서 울	369	10,528	19,038	365,579	34.7	19.2
부 산	170	4,095	7,423	139,913	34.2	18.8
대 구	122	3,068	5,449	112,708	36.7	20.7
인 천	123	3,061	5,404	118,916	38.8	22.0
광 주	81	1,885	3,251	71,092	37.7	21.9
대 전	86	1,914	3,377	67,431	35.2	20.0
울 산	60	1,539	2,587	54,737	35.6	21.2
경 기	545	13,068	24,243	488,203	37.4	20.1
강 원	164	1,899	3,849	59,168	31.2	15.4
충 북	128	1,960	3,644	64,261	32.8	17.6
충 남	191	2,521	4,762	78,437	31.1	16.5
전 북	204	2,518	4,869	78,526	31.2	16.1
전 남	250	2,609	5,357	75,460	28.9	14.1
경 북	281	3,288	6,558	100,182	30.5	15.3
경 남	261	4,148	7,555	138,290	33.3	18.3
제 주	42	703	1,334	25,708	36.6	19.3

구 분	고등학교 (일반계-실업계 전체)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
총 계	2,190	56,629	122,906	1,906,978	33.7	15.5
서 울	302	10,527	22,315	361,942	34.4	16.2
부 산	140	4,155	8,977	139,134	33.5	15.5
대 구	89	3,046	6,526	107,627	35.3	16.5
인 천	109	3,257	7,086	111,480	34.2	15.7
광 주	62	1,787	3,831	64,359	36.0	16.8
대 전	60	1,842	3,899	63,038	34.2	16.2
울 산	48	1,385	2,944	50,725	36.6	17.2
경 기	380	11,971	26,348	436,635	36.5	16.6
강 원	114	1,856	4,346	55,496	29.9	12.8
충 북	82	1,780	3,671	58,398	32.8	15.9
충 남	116	2,362	5,138	72,153	30.5	14.0
전 북	130	2,477	5,590	72,218	29.2	12.9
전 남	153	2,486	5,590	70,264	28.3	12.6
경 북	194	3,172	6,820	96,807	30.5	14.2
경 남	181	3,860	8,391	124,398	32.2	14.8
제 주	30	666	1,434	22,304	33.5	15.6

2. 일부 교원단체의 반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008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이라는 문서를 통해 공개 반대를 천명한 상황임.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위원장이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음.

3. 문화적 문제(?)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가 폭력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교권’이라는 명분, 탈선 방지라는 명분으로 정당화 되고 있음. 잘못된 진단으로 인한 잘못된 처방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음.

부모 소득과 아이들의 학업성취도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부잣집이라고 똑똑한 아이가 더 많이 태어날 리도 없는데, 현실은 명백함.

사교육시장의 폭발적 확대와 탈선 청소년의 증가는 사실 동전의 양면임. 두발·복장규제, 체벌로 다잡아보겠다는 노력은 어른들의 자기 위안이 아닐까 우려됨. 문제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면 처방도 낡은 관행이 아닌 새로워야 한다고 봄.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돌봄과 사랑을 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의 의의과 전개과정

장 휘 국 교육위원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1.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의 의의

1)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의 배경과 필요성

가) 학교에서의 일상적 학생인권 침해와 하소연

- * 학생 권리(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제법 오래 되었지만 학생인권 문제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도 드물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 안에 학생인권이 존중되기는커녕 존재하거나 하느냐?’고 불멘소리를 하고,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무지막지한 폭력적 체벌이나 폭언이 아니라면 학생지도에서 교사의 지도력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체벌금지와 학생인권 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교사들은 ‘지금 학생들은 지나치게 자기 권리 주장이 강하고 사회에서도 교사의 적절한 지도를 지나치다고만 여겨서 학생의 일탈행위에 대한 지도를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 한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이라는 말을 꺼내면 ‘학생 인권이 더 중요하냐?, 교권이 더 중요하냐?’라는 식의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충하는 현실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
- * 그러나 어느 사회에서나 ‘인권 신장이나 보장’이라고 할 때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학교에서의 절대적 약자라고 할 학생인권 신장과 보장에 더 적극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 *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학생인권은 교문 앞에서 사라진다.’ 또는 ‘학생인권은 교문 밖에서 외치는 소리’일뿐이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의 인권(권리)를 보호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학생인권 지킴이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학생인권을 가장 침해하는 존재

로 지탄받고 있다.

- *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 내의 심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규정예시(안)’ 조차,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시정권고(2002년)를 받을 정도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처벌은 ‘교육목적을 위한 직무상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운 평가를 받고 있다.
- * 학교 내 처벌에서 ‘수업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행하는 처벌이 45.4%, ‘학교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29.7%나 되는 것으로 ‘질서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대체로 ‘본보기 효과’를 노리는데 특정학생의 인격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육이 목표자체를 의심케 한다. (김은경, '교사체벌과 학생인권', 「학생인권 신장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육개발원, 1999)
- * 복장이나 두발 등이 학습과 관계가 없다는 질문에 '그렇다'에 교사가 37.4%, 학생은 78.2%, 학부모가 51.6% 응답했다. 규율이나 예절이 권위주의적이다 라는 질문에 교사가 60.1%, 학생은 79.1%, 학부모가 62.3%라고 응답하였다. 그럼에도 규율이나 규칙이 개정되고 있지 않으며 개정할 때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분석」, 2000, pp85~86)
- * 최근의 학교 중도탈락에 대한 논의의 동향을 보면 학교 중도탈락으로 학습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중도탈락자의 경우 교칙위반경험이 63.8%나 되어 학교생활이 힘들었음을 알 수 있으며, 중도탈락의 이유의 다수가 학업과 학교에 불만족(53.8%)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인적자원부, '중도탈락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 2002)
- * 최근 학교에서의 사례를 보면, 학생에 대한 인격 모독적 언행과 체벌 및 학교 폭력 사례로 인한 학생의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과 소요, 개인의 자유권(복장과 두발 등 용의 관련)에 대한 심한 제재에 반발하는 인터넷 시위나 사회적 퍼포먼스 또는 집단행동, 학생의 자율적 활동(자치활동, 취미와 특기 관련 특별활동, 교외활동 등) 억압과 제재에 대한 반발 등이 종종 사회적 문제로 보도되고 있다.

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고양

- * ‘유엔아동권리협약’(1989년 채택, 2003년까지 모두 192개 국가가 가입, 한국도 1991년 12월 20일 가입)은 학생인권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규범으로 등장하고 아동들에 대한

인권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사회와 정부는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5년에 한 번씩 가입국의 정부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에 권고의견을 내고 있다.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했는데, 권고문의 내용 중 학교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부 지침, 학교 교칙을 개정할 것
-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할 것
- 교사 등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할 것,
-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쟁성을 감소시킬 것
- 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등 관련문서를 널리 배포하고 전체 대중뿐 아니라 아동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후 벌써 5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대한 개선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적극적 요구의 목소리(교육관련 법령을 정비,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이 인권의 관점에서 재검토, 정부의 예산도 실질적으로 투입되도록 요구) 필요하다.

다) 학생인권 법제화 움직임

*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인권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신장되었고 보편화되었다. 국회에서도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학생인권을 보장하려는 내용이 법제화되었다. 2007년 12월에 초·중·고등교육법 개정안(학생인권법안-초·중·고등교육법 제 18조)이 가결되어 2008년 6월부터 발효되었다.

그리고 2008년 11월 권영길 의원은 “매 맞지 않을 권리, 자유롭게 머리를 기를 수 있는 권리,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지 않아도 되는 권리 등을 학생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하였다.

라) 학생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 * 불만이 있어도 참던 학부모들과 청소년지도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인권을 옹호하는 주장을 하고, 시키는대로 하거나 잠잠하던 학생들에 의한 인권 운동이 기지개를 펴고 있으며, 현재 꿈틀거리고 있는 학생 인권 운동의 핵심 표적이 학교가 되고 있다.
- * 학생들의 강제야간자율학습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시도, 두발규제 폐지 및 0교시 폐지 운동,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 등은 학생들의 높아진 권리의식과 인권의 세기라는 21세기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며, 간헐적으로 그러나 폭발적으로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 신장에 대한 요구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화급한 사안이다.

2)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목적

- *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권리를 보장하고 신장하며, 학교에서의 인권 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 인권 침해의 사전 예방과 침해 사례 발생시 원만한 해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

3)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의

가) 조례의 개념

- *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였기에 자치입법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며, 광주광역시에는 유사한 조례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07/5/15 조례 제3491호)’ 등이 있다.
- * 조례는 지역 정책을 법규화하여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특정한 업무(학생 인권)에 대하여 수시로 의사결정을 하는 부담을 감경하고 모든 집행기관(학교)에서 평등하게 집행하고, 업무집행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

나) 학생인권조례는 지역 차원의 학생인권 보장 정책 입법화 기능

- * 상시적이며 항구적 보장이 필요한 인권의 속성을 감안할 때,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학생인권 보장정책은 조례로써 실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우리 지역의 인권과 교육, 주민 자치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라고 여긴다.

다) 미비한 학생인권법률(초중등교육법)의 보완 및 입법 선도 기능

- * 국회는 학생 인권 보장을 명시화하는 법률 제정에 미온적이었으나 가능한 자치단체의 현안(학생 인권 보장)을 실제로 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상호영향과 경쟁을 자극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예를 들면 ‘행정정보 공개법’처럼 지역이 독자적인 입법권(조례 제정)을 행사로써 국회의 입법권행사에 자극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자극하고자 하였다. 광주광역시는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를 제정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

라) 학생인권운동의 제도적 근거 및 조례 제정 과정을 통한 교육적 기능

- *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만으로도 학생 인권에 대한 홍보와 시민 교육적 효과가 크고, 학교 안팎에서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들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학생인권 침해를 예방하여 인권 수준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 학교를 인권 친화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장치

- *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의 인권 존중과 인권교육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신장하고, 학교를 인권 친화적 기관으로 재구조화 하여 학생과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신장할 수 있다.
- * 학생인권 조례는 교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질서 유지와 학생들을 교육과정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인권(기본권) 제한과 통제가 불가피하고 효과적인 교육수단’이라는 권위주의적 발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

4) 학생인권조례의 한계

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오해

- * 학교에서 교권(교사의 인권과 가르칠 수 있는 권위)과 학생인권이 충돌한다고 생각하고, 교권침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현실을 구실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교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오해하여 일부 교사들의 교육포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가능성과 한계

- *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서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벌칙 조례 제정권이 있고,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조례 제정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기 어렵다. 한 마디로 안 지켜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추진 활동 과정

1) 1차 시기(2003~2005)

가) 광주학생생활연구회와 청소년인권센터 등의 실태조사와 연구

- *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접하고,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활동과 함께 실태조사와 연구를 시작하였다.
- * 광주청소년인권센터에서 현장 교사와 함께 인권위와 시청의 용역을 받아 ‘광주지역 청소년인권 실태조사(청소년 인권지표 조사)’를 수행하고 실태를 발표하였다.
- * 사례 연구 : 타국의 예 ; 일본 가와사키현의 아동권리 조례와 부천시의 조례 제정 유보 및 부산에서의 조례 제정 시도를 연구
- * 2002년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 * 2004년 12월 시민사회단체, 교원단체, 청소년단체와 일부 교육위원이 청소년(학생)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공동 노력을 위해 연대 가능성을 타진하고 토론회를 열어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토론회에 참여한 단체를 중심으로 2005년 5월에 청소년(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기구 조직에 합의하였고, 8월에 ‘광주 학생권리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흥사단 광주지부, 광주YMCA, 청소년 인권센터, 청소년 포럼 준비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시의회 의원, 교육위원, 대학교수 등이 참여

나) 조례 제정 사업 추진

* 2005년 8월 초부터 12월 하순까지 20여회에 걸친 회의와 16차례의 내부 논의 및 준공청회와 공청회(2005. 12. 23, 광주교육연수원 강당)를 가졌다.

* 조례제정과정 학습, 조례안의 성격 규정, 각종 조례의 형식 및 내용 검토,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한국에 대한 권고 내용,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 가와사키현 조례 내용과 제정과정 확인, 부천시 조례 내용과 과정, 조례안에 들어갈 영역과 항목 설정 등을 학습하고 연구하였다.

*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도움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공신력 있는 분석을 하였다.(학생은 중, 일반계고, 실업계고, 남녀 성별 구분, 교원은 교장, 교감, 교사를 성별로 구분, 학부모는 초중고별로 구분하여 전화 설문조사)

* 조례안 초안 제정 및 수정, 시민 학생 대상의 홍보 활동, 조례안 입법시도, 교육위원회 조례안 상정 실패로 활동을 잠시 중단(협조를 약속한 교육위원들이 2006년 선거를 앞두고 소극적으로 변화)

① 2005년 8월 3일 학생권리조례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 시작

②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권리조례로 조례 명칭 변경

③ 흥사단 광주지부, 청소년인권센터, 청소년포럼준비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 YMCA, 시의원, 교육위원, 교수 등이 참가하여 학생권리조례제정추진위원회 구성

④ 2005년 공식 모임 16회(비공식 20여회) - 조례제정과정 학습, 조례안의 성격규정, 각종 조례의 형식 및 내용검토, 가와사키현 조례 제정과정 학습, 조례안에 들어갈 영역과 항목설정, 조례안 제정 관련 설문 제작 등

⑤ 한국사회조사 연구소 협조 - 학생인권관련 교사, 학생, 시민 설문조사 실시(2005. 12월)

- ⑥ 준공청회 - 광주교사 참교육실천보고대회(2005. 12. 02<금>. 전남중학교)에서 준공청회 형식의 토론
- ⑦ 공청회 전까지 3차례의 수정작업
- ⑧ ‘광주광역시 학생권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실시(2005. 12. 23).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대강당. 200여명 참가
- ⑨ 전국교사참교육실천발표대회 토론(2006. 1월)
- ⑩ 4차 수정안 완성(2006.1월 하순)
- ⑪ 2006년 2월 보수적 시각의 조례안으로 수정
- ⑫ 1-4월 교육위원회 상정시도, 교육청 협상, 발의실패, 유보 결정
- ⑬ 5·18청소년문화제 “레드페스타”학생권리조례부스 설치. 인권지수 설문 및 조례안 내용 홍보 및 의견수렴(2006. 5월)
- ⑭ 2006학생회 임원아카데미를 통한 조례안 홍보 방안 모색

2) 2차 시기

- * 조례 제정을 추진한 교육위원들이 재선(2006. 7)되어 지난 1차시기 활동을 평가하면서 다시 조례 제정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 * 2008년 8월 27일 제5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후반기 의장이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공약(교사권리 조례와 더불어 추진)으로 당선
- * 2008년 10월 20일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 * 1차시기보다 더 많은 단체 참여(권리의 주체인 학생·청소년 단체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
- * 실질적인 조례제정추진 사업 및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중 사업을 동시에 전개하기로 합의(1차 시기의 과오 반성-추진위 참가 단체에서만 조례 제정활동과 내용 공유, 소속 단체별 특성에 따른 활동과 추진위원회 차원의 대중적 활동을 더불어 추진하기로 합의)
- * 추진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 광주·전남교육연대, 청소년공동체 ‘희망’ 광주지부, 전교조광주지부, 광주학생생활연구회,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광주지부, 광주홍사

단, 학벌없는사회 광주지부, 광주YMCA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교육위원(장휘국), 전국청소년학생연합광주지부, 광주YWCA, 문화행동s#arp 등이 있다.

3. 학생인권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

1) 구성 및 내용(수 차례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합의)

- 가) 제1장 총칙(목적, 정의, 책무),
- 나) 제2장 교육받을 권리(주체로서 권리, 수업받을 권리, 선택의 권리, 도움 받을 권리),
- 다) 제3장 자치에 관한 권리(자치활동, 학생회 구성 및 운영, 동아리 조직 및 계발활동, 학교운영에 관한 권리),
- 라) 제4장 문화 및 복지에 관한 권리(학생 문화 활동,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학교 축제, 학생 복지, 편의시설, 건강권, 학생의 날),
- 마) 제5장 적법한 절차를 누릴 권리(적법 절차, 학칙 및 규정, 절차적 적법 절차, 실제적 적법절차),
- 바) 제6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사생활 보호, 개인 물품 권리, 개인 정보 권리, 정보·통신 권리, 모욕당하지 않을 권리, 교제와 종교 선택의 자유),
- 사) 제7장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의사표현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교외활동 참여 권리, 인터넷 표현의 자유),
- 아) 제8장 학생인권 보호 기구 설치 및 인권교육·연수(학교 인권보호기구 설치, 교육청 인권보호기구 설치, 학교 인권 교육과 연수, 교육청의 인권 연수 및 지원),
- 자) 부칙

*** 8장 37조, 부칙 2조로 구성

2) 학생 권리(인권) 영역 : 6개 영역

- * 토론을 통하여 학생 권리를 교육(수업)권, 자치권, 적법절차권, 사생활보호권, 표현의 자유권, 문화 및 복지권 등 여섯 영역으로 잡고, 거기에 포함할 구체적 내용을 선정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광주 지역의 학생 인권 보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광주광역시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초안)이 만들어 졌다.

- * 초안을 토대로 토론회, 준공청회, 공청회를 거쳐 수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보수적 시각을 감안하여 재수정하였다.

4. 조례 제정 운동의 성과 및 전망과 한계

가) 성과

- * 학생인권 보장과 신장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부분적이거나 학교에서 학생 인권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 * 학생과 청소년 단체들이 보다 학생인권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나아가 보편적 인권의식이 고양되고 있다.

나) 전망과 한계

- * 조례가 제정된다면 학생인권 보호와 신장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조례 제정에 실패한다 해도 학생인권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식이 고양될 것이다.
- * 조례 제정이 안 되더라도 학생인권보호기구 설치가 가능하고,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과 교원의 인권연수 기회는 현저히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인권에 대한 인식을 고양할 수 있을 것이다.
- * 다수의 교원과 보수적 학부모들은 아직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 * 교육위원회는 보수적 인사들로 구성되어 조례 제정이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제정 되더라도 내용이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 * 조례가 제정된다 해도 위반 사례에 대한 적절한 제재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 따라서 단 기간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체벌 없는 교육활동

이 문 석 교사
(학생생활연구회)

1. 교육구조와 체벌

우리 교육환경에서 체벌 없는 교육활동이 과연 가능할까?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공문이 수차례 내려오고 학교생활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체벌이 금지되어도 학교에서의 체벌은 아직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에도 몇 개 학교가 학교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군대 열차려 수준의 체벌을 하다가 신문지상에 실린 적이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해 교육부나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다. 결국 학교에서의 체벌은 암묵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상황이며 사회적 파장의 정도를 보며 해당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과중한 공문처리와 사무를 교육활동과 함께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나 상담사, 용무원, 학교생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등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채 담임교사 생활지도 책임제라는 일선교사 무한책임제에 시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경쟁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입시구조는 아이들 간의 골을 넓히고 다수 아이들에게 열패감을 주고 있으며 특목고, 자사고 등 분리교육의 심화로 인해 일반계 고등학교(이제는 심지어 중학교까지도)의 생활지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40명 정도의 학생들과 수업과 학급을 매개로 만나고 있다 보니 학생 한 명 한명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보다는 당장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기에도 급급한 형편이다. 또한 학교에서도 종합적인 생활지도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당장의 문제행동 수정을 교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한다. 결국 교사들은 아이들의 삶과 만나지 못하

고 당장의 행동을 수정하는 데 골몰하게 되고 체벌과 잔소리 등 즉각적인 행동수정을 위한 조치들이 교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여겨진다.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은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없기에 외면되거나 오히려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가 고립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린마일리지제(상벌점제)도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에게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 결국 봉사활동이나 다른 상벌제도와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하는데 봉사활동처럼 품이 많이 들고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은 활동보다는 체벌이 즉각적이기 때문에 완화의 효과는 있을 지 몰라도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체벌 없는 교육활동은 가능하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구조적인 이유들로 인해 체벌 없는 교육활동은 선택되기 쉽지 않은 길이며 학교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과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아래 제시할 실천사례들은 그저 소실천일뿐, 다수 교사들이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호소력을 가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구조와 실천은 함께 변화되어야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

2. 체벌없는 교육활동을 위한 작은 실천

한계적이지만 아이들의 삶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은 체벌없는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1) 학급자치

학급자치는 아이들이 학급의 모든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교사도 그 일원으로 참여하는 학급운영의 방법이다. 아이들은 학급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교사 개인이 운영하는 학급이 아닌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학급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학급자치다. 짝 정하기, 청소당번 정하기 같은 일상의 주제에서부터 소풍, 축제 준비 등 행사 준비, 학교생활규정 등 학교전체에 대한 고민까지 학급자치활동을 통해 결정하고 고민하고 집행한다. 아이들은 주어진 일을 하는 피동적인 존재에서 내가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변한다.

모든 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잠시 행복한 행사가 있으면 참여하며 견디고 있을 때 아이들은 지치고 문제행동에 동참한다. 특히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경쟁만을 신봉하는 우리교육에서 계속 소외된 경험을 축적한 아이들은 학교, 교사, 사회 모두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아무리 능력 있는 교사도 배정해 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자치는 그걸 찾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방법이다.

물론 학급자치는 앞에 말한 구조의 한계에 갇혀 있다. 비자치적인 학교구조를 넘어설 수 없고 학교생활규정등으로 제약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토론과 토의를 생명으로 하는 자치가 비민주적인 학교구조와 비인권적인 학교규정과 만날 때 아이들과 교사가 한계를 느끼고 아이들은 특히 포기하기 때문이다.

2) 합의된 규칙

학기 초 아이들에게 상을 받고 싶은 경우 3가지와 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 5가지에 대해 의견을 적어 내도록 한다. 다수의견을 중심으로 학급회칙에 상벌규정을 명시하고 다시 발제 후 토론을 한다. 학급부서와 회의규정, 학급생활과 관련한 규칙들도 함께 정한다. 합의된 규칙은 학생들 사이에서 더 잘 지켜지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일관된 집행이 되었을 때 그렇다. 학교생활규정도 합의과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합의라기 보다는 협의에 가깝고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면 교장, 교감샘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학교생활규정의 대부분이 학생이 지켜야 할 규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수의견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두발규정처럼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논리를 통한 토론과 토의가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3) 상담

상담은 체벌없는 교육활동의 즉각적인 대안이다. 담임을 맡으면 5차시 정도의 계획을 짜 두레별로 진로 또는 인성 집단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통해 일상적으로 포착하지 못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고 집단상담은 또래들이 교사보다 더 나은 치유력을 가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해준다. 자치가 씨실이라면 집단상담은 날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한계는 사교육과 지원이다. 아이들은 저녁시간을 내기도 어려워하고 잘 맞지도 않는다. 시스템의 지원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전문적이지 못하고 과중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4) 칭찬을 일상화하기

매주 또는 격주 학급에서 칭찬할 만한 학생들을 선발한다.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된 경우, 묵묵히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한 일을 하는 경우 등등 학급 내에서 칭찬이 이루어지게 한다. 상점제와 연동하면 여러번 칭찬 받은 학생에게 모범상을 줄 수도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칭찬은 어떤 벌규정 보다 강력하다.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변화게 하는 힘이 있다. 하지만 이도 역시 또 다른 보상과 연결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점제와 연동하면 다른 반과의 형평성문제, 상점을 받기 위해 칭찬을 유발하는 행동 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

5) 생각할 시간을 주는 벌/행동에 대응하는 벌

처음부터 때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방법을 찾을 수 없고 느린 변화를 참을 수 없는 건 모든 교사가 느끼는 한계다. 아직도 체벌은 하지 않지만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특히 학급아이들이 아닌 경우 관계 맺기가 쉽지 않다. 즉각적인 행동수정을 위한 조치로 불가피하게 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데 생각할 시간을 주는 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벌이다. 타임아웃 또는 타임 딜레이라고도 부르는 벌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잘못을 생각하고 진술하게 하는 방법이다. 요즘 아이들은 점점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다. 강하게 채근하는 교사가 있으면 듣고 아니면 넘어간다. 그냥 맞고 말자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스스로 진술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 행동에 대응하는 벌은 침을 뱉으면 청소를 시킨다든지 하는 자기 행동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벌이다. 역시 자기 진술과정을 마지막에 거친다. 문제는 역시 시간이다. 그 정도의 시간을 교사도 학생도 내기 쉽지 않다는 것.

3. 교육당국에 바라는 것.

어떤 실천도 구조 속에 있다. 최근 많은 교육예산이 영재교육, 분리교육에 쓰이고 있다.

대안의 제도가 아니라 차별 없는 교육의 핵심은 적은 학생과 교사가 만나는 것(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이다. 다수의 아이들을 패배감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입시구조의 완화)이다. 또한 교육을 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해 종합적인 학생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핀란드와 스웨덴의 예처럼)이며 동의와 합의에 근거한 교육활동(자치구조)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담임으로서의 소실전은 교사로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느끼게 해 주었다. 하지만 학생부장의 경험은 구조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 그린마일리지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대안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작은 실천이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교육당국이 할 일이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한다.



참 고 자 료

1. 『UN아동폭력보고서』
2. 『아동에 대한 모든 신체적 체벌 금지』
3. 아동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1~2008)
4. 아동권리협약



아동폭력에 관한 UN 보고서

UN

A/61/



유엔총회

2006. 8. 23

원본 : 영어

제 61회

임시 안의 제 62번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

아동권리

아동폭력에 대한 UN연구를 위한 독립적 전문가의 보고서

사무총장의 보고

사무총장은 유엔총회의 회원들에게 아동폭력에 대한 UN연구를 위한 독립된 전문가 보고서를 전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Paulo Sérgio Pinheiro는 유엔총회 결의안 57/90에 준거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사무총장은 유엔총회가 이 연구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이 중요한 주제의 결론과 제언의 실행에 대한 후속작업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이라 믿는다.

요약

2002년 유엔총회 결의안 57/90에 준거하여 사무총장에 의해 지명된 독립적 전문가인 Paulo Sérgio Pinheiro가 연구한 내용에 기초한 이 보고서는 아동폭력에 대한 국제적 양상을 보여주고, 이런 이슈에 대처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언을 시사해 준다. 가족, 학교, 아동보호시설, 격리시설, 아동노동이 이뤄지는 곳과, 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발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지역적 국가적 조인, 전문가 주제 회의, 현장 견학 등 참여적 과정을 통해 준비되었다. 또한 많은 정부가 2004년 독립적 전문가가 전달한 설문지에 응답하여 주었고 이를 활용하였다.

독립적 전문가는 정부, 지역기구, 정부간 기구, UN, 시민사회조직, 그리고 아동들의 연구를 위한 지원에 매우 감사한다.

목 차

	문단번호
I. 도입 : 폭력으로부터의 아동 보호	1-23
A. 훈령 및 연구의 범위	7-10
B. 연구 절차	11-23
II. 국제적 문제	24-37
A. 숨겨진, 보고되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문제	25-27
B. 드러난 양상	28
C. 위험요소, 보호 요소	29-35
D. 광범위한 파급효과	36-37
III. 아동폭력이 발생하는 환경	38-80
A. 가정과 가족	38-47
B. 학교에서와 교육현장에서의 폭력	48-52
C. 보호 및 사법제도안에서의 폭력	53-63
D. 노동 환경에서의 폭력	64-68
E. 지역사회에서의 폭력	69-80
IV. 연구성과	81-89
V. 결론	90-93
VI. 제언	94-123
A. 포괄적인 제언	96-109
1. 국가 및 지방의 약속과 행동강화	96
2.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금지	97-98

3. 예방우선	99
4. 비폭력의 가치와 인식 증진	100
5. 아동을 위하여,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역량개선	101
6. 회복 및 사회재통합 서비스제공	102
7. 아동참여보장	103
8. 접근가능한 그리고 친아동적인 신고체계와 서비스의 수립	104
9. 책임보장과 처벌 감형의 폐지	105
10. 성별적 차원의 아동폭력에 대한 대응	106
11. 제도적인 국가자료 수집과 조사의 개발 및 시행	107
12. 국제적 약속의 강화	108-109
B. 환경 특별 제언	110-114
1. 가정과 가족	110
2. 학교와 그 외 교육 환경	111
3. 보호 및 사법제도	112
4. 노동현장	113
5. 지역사회	114
C. 시행과 사후점검	115-123
1. 국가 및 지역적 수준	116-119
2. 국제적 수준	120-123

1. 도입 : 폭력으로부터의 아동을 보호

1. 아동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 할 수 없다;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은 예방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화, 계층, 교육적, 경제적 수준, 인종적 차이를 막론하고 어디에나 폭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바이다. 인권에 대한 책임과 아동발달 욕구와 위배되게 모든 지역에서 아동폭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아동폭력은 합법적으로 정부의 허가 하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 본 연구는 아동에 대한 폭력이 “전통” 또는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성인들로부터 정당화되어 일어나는 것을 중단하는 전환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타협될 수 없다. 아동의 잠재력과 취약함, 성인에 대한 의존성과 같은 아동의 특성은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더욱더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3. 문화, 경제적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은 근절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가해자에 대한 제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사회의 인식을 전환시켜야함을 의미한다.
4. 본 연구는 처음으로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과 관련하여 UN에서 실행한 국제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Graça Machel이 작성하여 10년 전에 유엔총회에 제출한 분쟁지역의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에 토대를 두었고, 세계보건기구의 “폭력과 건강에 대한 국제 보고”에서 영감을 얻었다. 또한 본 연구는 아동을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에 동참시킨 첫 번째의 국제적 연구이다. 아동은 모든 지역적 자문협의회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아동이 경험한 폭력과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아동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5. 아동폭력은 다차원적이므로 다방면의 반응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인권과 공중보건, 아동보호를 종합하였고, 이처럼 다양한 실무의 전문가들이 연구에 협력하여 지원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폭력에 대한 원인, 결과, 예방을 설명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과학적 연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6. 아동폭력에 대한 보호는 긴급한 문제이다. 아동은 수세기 동안 성인의 폭력으로부터 고통당해왔으나, 보여지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이제 아동폭력에 대한 범위와 영향이 더 잘 알려졌으므로, 아동에게 그들의 절대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보호 및 예방이 실시되어야 한다.

A. 훈령 및 연구의 범위

7. 2001년 아동권리위원회의 제언에 의하면 유엔총회는 결의안 56/138에 의해 사무총장이 아동폭력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할 것과 회원국이 적절한 관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언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3년 2월, 본인은 사무총장으로부터 이 연구를 지휘하도록 임명받았다.
8.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1조에 나와 있는 아동의 정의를 따른다. : “아동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폭력에 대한 정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 19항 이다: “모든 형태의 신체적, 심리적 폭력, 상해, 학대, 무시 또는 무관심한 태도, 학대 또는 착취, 성적 학대” 또한, 2002년 『폭력과 건강에 대한 세계 보고』에서의 정의도 따른다: 아동에게 위협하거나 실제로 가해지는 의도적인 물리적 힘 또는 권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수행되며, 그 결과로 인해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또는 존엄성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해를 끼치는 것.¹⁾
9. 보고서는 다양한 세팅에서의 아동폭력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학교, 대체적인 아동보호 시설, 격리시설, 아동노동이 이뤄지는 곳, 지역사회이다. 분쟁지역의 아동관련된 사항은 아동과 무력분쟁을 위해 임명된 사무총장의 특별대표의 임무이기에 본 보고서에서는 분쟁지역의 아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난민과 기타 이주 아동에 대한 폭력과 같은 주제는 다루고 있음을 밝혀둔다.
10. 이 보고서는 연구조사결과와 제언을 포함하는 심층 자료를 책의 형태와 아동우호적인 버전으로 추가된다.

B. 연구절차

11. 본 연구를 준비하는데 있어, 본인은 regional(지역적), subregional(소지역), 국가적 자문 협의회, 전문가 주제 회의, 현장 견학 등을 포함하는 참여 절차를 실행했다. 2004년 3월 본인은 아동폭력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조사하는 설문지를 배포하였

1) E. G. Krug et al. (eds.),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p. 5

고, 총 131건의 응답을 받았다.²⁾

12. 2005년 3월과 7월 사이에, 캐리비언, 남아시아, 중서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동아시아 태평양, 중동과 북아프리카, 유럽과 중앙아시아, 동남부 아프리카의 9개 지역 자문협의회가 모였다. 각각의 자문은 정부 장관과 공무원, 의원, 지역 대표, 기타 정부간 조직과 UN, NGO, 국가의 인권 단체인 NHRIs, 기타 시민단체(미디어, 종교 조직, 아동)를 포함하여 평균 350명의 참가자에게서 받았다. 아동은 각각의 지역 자문협의회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연구를 위한 의견과 제언을 개발하여 제공했다. 각 지역 자문협의회의 보고서와 제언들은 누구나 참고할 수 있다. 다수의 소지역과 국가 자문협의회 또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13. 이러한 자문협의회를 개최하는 정부는 연구의 진전을 위해 활발히 개입하였다. 아프리카 연합(Africa Union), 아랍 동맹(the Arab League), 캐리비언 지역사회(the Caribbean Community(CARICOM)),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European Union), 미국조직의 인권을 위한 미대륙 국가간 위원회(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와 지역협조를 위한 남아시아협회(the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와 같은 지역 조직은 자문협의회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가적, 지역적 조직은 연구의 후속작업을 위해 지속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14. 본인은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옌살바도르, 과테말라, 하이티, 온두라스, 인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말리, 파키스탄, 파라과이,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본인은 이러한 자문협의회가 열린 정부와 방문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15. 본인은 아동권리위원회 위원, 이전 인권위원회의 특별 절차 훈령소지자들과 (special procedures mandate holders) 정기적인 자문협의회를 열었다. 특별 절차의 훈령소지자들의 보고서와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안들을 모두 분석하였다.
16. 본 연구와 제네바의 사무국은 3개의 UN 기관들에 의해 지원되어왔는데, 이들은 UN고등인권위원사무국(OHCHR), 유니세프(UNICEF), 세계보건기구(WHO), 그리고 여러 전

2) As of 31 July 2006, 132 Member States and one Observer had submitted responses. All responses are available at the OHCHR website: <http://www.ohchr.org/english/bodies/crc/study.htm>.

문 분야로 이뤄진 편집위원회였다.

17. 세계노동기구(ILO),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HCR),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약물범죄사무국(UNODC), UN경제사회여성발전부(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of the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등 많은 다른 조직도 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UN관계부처 조직 또한 연구의 후속작업을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모임을 가져왔다.
18. 본인은 또한 지난 3년 동안 아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에 도움을 받았다. 전 세계 270명 이상의 개인과 조직이 공식적 제출물을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하였다. 아동이 제출한 자료와 주요 연구 보고들 또한 포함되었다.³⁾
19. NGO들이 제출한 보고서도 매우 주요한 공헌을 하였다. 연구초기에 NGO자문 패널이 형성되었다. 이 패널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아동과 청소년들도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본인은 또한 아동권리 위원회를 위해 형성된 NGO Group산하의 아동과 폭력을 위한 소위원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20. 수많은 연구들을 준비하는 국제세이브더칠드런연맹은 Unicef와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지역 자문협의회와 아동의 참여를 도와줌으로써 특별한 지원을 해주었다. 국제아동권리정보네트워크(CRIN)는 본인의 아동면담 등을 포함하여 연구의 과정을 문서화해왔다. 이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⁴⁾
21. 연구 센터와 네트워크는 정보를 제공하였고 자문협의에 참여해 주었다. 유니세프 이노센티 연구 센터는 아동매매, 여성할례, 인권기준과 아동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출했다. 성별과 관련된 폭력, 학교, 집과 가족, 아동, 청소년 정의 시스템과 법적분쟁 중인 아동에 대한 주제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종교 조직, 정보와 의사소통기술, 피난민과 기타 난민아동, 폭력 측정 방법 연구와 관련된 주제회의 또한 개최되었다.
22. 본 연구의 준비는 지역적·국가적 활동을 야기시켰다. 많은 나라에서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국가적 논쟁과 액션을 취해야한다는 인식증진과 후속 활동을

3) The list of submissions is available at the website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http://www.violencestudy.org>

4) Child Rights Information Network (CRIN) : <http://www.crin.org/violence/>,

이미 실시하였다.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에서는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지역적 후속작업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바뀌게 되었고, 아랍 연합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등 멤버십의 영역을 확대시켰다. 정부간의 주체로서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남아시아 포럼은 모든 나라의 대표와 함께 장관급 수준에서 실시되었다. 첫 2년 동안에 사무국은 파키스탄에 주재한다. 류블라나 자문협의회의 후속으로 유럽 이사회는 2006년 4월에 “아동을 위한 아동과 함께 하는 유럽 건설하기”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는 연구의 후속 메커니즘으로 아동폭력 근절을 위해 각 나라에 정책과 기술적 지지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2006년 4월, 지역 자문협의회에 참여했던 아동들이 뉴욕에서 자문협의회와 다른 회의에서 받아들여질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제언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회의를 했다.

23. 본 연구 절차는 특히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촉진제가 되길 바라는 아동들에게 높은 기대를 받으며 제작되었다. 본인은 연구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II. 국제적 문제

24. 잔인하고 모욕적인 체벌, 여성할례, 방임, 성학대, 살인, 기타 다른 형태의 아동폭력에 대한 보고는 그동안 기록되어왔으나 이러한 국제적 문제의 심각하고 긴급한 특성은 최근에야 드러나게 되었다.⁵⁾

A. 숨겨진, 보고되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문제

25. 아동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문화적 물리적 환경에 의한 희생자와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의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아동폭력의 대다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숨겨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두려움인데, 많은 아동은 아동폭력의 경험이 기록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대부분의 경우 아동을 보호해야하는 부모는 아동폭

5) A. Reza, J. A. Mercy and E. Krug, “Epidemiology of violent deaths in the world”, Injury Prevention, vol. 7 (2002), pp. 104~111; Krug, op. cit at footnote 1, pp. 59~86.

력이 가족이나 배우자, 고용주나 경찰, 지역사회 지도자 등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발생되었을 경우 침묵을 지킨다. 두려움은 아동폭력 기록의 낙인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아동의 안전이나 삶의 질보다 가족의 “명예”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더욱 그렇다. 특히 강간이나 또 다른 형태의 성학대인 경우 배척하고, 더 나아가 폭력 또는 죽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6. 폭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아동과 가해자 모두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피할 수 없거나 정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보이거나 지속적인 신체적 상처가 없는 경우 신체적/모욕적 체벌, 왕따와 성적 괴롭힘을 통한 훈육은 정상인 것으로 인식된다. 체벌에 대한 분명한 법적 금지가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반영한다. 아동폭력근절을 위한 국제단체(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에 따르면 적어도 106개국에서 학교 체벌을 허용하고 있고, 147개국에서는 대안적 보호 환경에서의 체벌을 금지하지 않는가 하면, 16개 국가만이 집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⁶⁾
27. 폭력은 아동이나 성인이 안전하게 또는 신뢰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폭력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들이 경찰과 사회적 서비스 또는 다른 권위를 가진 자를 믿지 않는다. 특히 시골지역에서는 폭력을 보고할 기관이 없다.⁷⁾ 데이터가 수집된 지역에서 모두가 완벽하고 일관되며 투명한 방법으로 기록하지는 않았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호 시설과 수용 시설에서의 폭력에 대한 자료는 거의 수집되지 않았는데, 이는 폭력이 행해지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설은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거나 드러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도 요청받지 않았다.

B. 드러난 양상

28. 국제통계 분석에서부터 지역수준의 활동 조사에 이르는 다양한 노력은 문제의 심각성과 지속적인 양상을 더욱 분명하게 제공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의한 자료는 어떤 폭력

6)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Global Summary of the Legal Status of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28 June 2006).

7) Multi-Country Study on Women's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은 예상치 못하고 특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폭력행동에 대한 대다수는 아동이 부모님이 나 학교친구, 선생님, 고용주,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배우자 등의 삶을 같이하는 사람들 중 누군가로부터 폭력이 가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은 아동폭력의 범위를 보여주는 예이다.

- 세계보건기구는 한정된 국가수준의 자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거의 53,000명의 아동들이 2002년 살인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을 추론하였다.⁸⁾
- 세계의 모든 지역의 국가들을 보면, 80~98%의 아동들이 가정내에서 체벌을 겪으므로, 이 중 1/3은 도구를 사용한 심한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다.
- 개발도상국의 보고에 의하면 국제학교보건 조사(Global School-based Health Survey)에서 최근 20~65%의 학령기 아동들이 지난 30일 동안 언어적, 신체적 왕따를 당하였다고 하였다.⁹⁾ 왕따는 선진국에서도 빈번히 일어난다.¹⁰⁾
-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2002년 동안 18세 미만의 1억5천만 명의 소녀와 7천3백만 명의 소년들이 성관계 또는 다른 형태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성적 폭력을 강요받았다고 한다.¹¹⁾
-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1억 명에서 1억4천명의 소녀들이 여성할례를 경험하였다고 한다.¹²⁾ 유니세프에 의하면 2005년에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이집트, 수단에서 매년 3만 명의 소녀와 성인 여성이 여성할례를 당한다.¹³⁾

8) Global Estimates of Health Consequences due to Violence against Children. Background paper for the United Nation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6).

9) Analysis provided to the Study by the Global School-based Health Surve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www.cdc.gov/gshs> or http://www.who.int/school_youth_health/gshs) using data from surveys conducted from 2003 to 2005 for Botswana, Chile(metropolitan areas), China(Beijing), Guyana, Jordan, Kenya, Lebanon, Namibia, Oman, the Philippines, Swaziland, Uganda, the United Arab Emirates, Venezuela (Lara), Zambia and Zimbabwe(Harare)

10) C. Currie et al.,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HBSC) Study: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01/2002 survey. Health Polic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No. 4(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11) Global Estimates of Health Consequences due to Violence against Children, op. cit. at footnote 8, based on estimates by G. Andrews et al., "Child sexual abuse", chapter 23, in M. Ezzati et al., Comparative Quantification of Health Risks: Global and regional burden of disease attributable to selected major risk factors(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vol. 2, pp. 1851~1940, and using data of the Population Division of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for population under 18 years.

12) Female genital mutil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Fact Sheet No. 241(Geneva, 2000).

13) Changing a Harmful Social Convention: 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 Innocenti Digest No. 12(Florence,

- 최근 세계노동기구에 의하면 2004년 2억1천8백만 명의 아동이 아동노동에 동원되었으며 이 중 1억2천6백만 명은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다.¹⁴⁾ 2000년도 보고에 의하면 5백7십만 명이 강제노동 또는 노예적 노동에 동원되었고, 1백8십만 명이 성매매나 포르노그래피를 강요당했다. 그리고 1백2십만 명이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었다.¹⁵⁾ 그러나 2002년에 보고된 자료와 비교해 보면, 아동노동의 경우 11% 줄어들었으며, 25% 줄어든 아동이 위험한 장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C. 위험 요소, 보호 요소

29. 경제 수준, 지위, 연령, 성별은 치명적 폭력과 관련된 많은 요인 중 하나이다. 세계보건기구는 2002년도 아동살해 비율이 고소득 국가보다 저소득 국가에서 2배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100,000명 인구의 (2.58 대 1.21) 가장 높은 아동살해 비율은 청소년 특히 15세에서 17세의 소년의 경우 (여:3.28; 남:9.06) 많이 발생하고 0세에서 4세의 유아에서 (여:1.99; 남:2.09) 많이 발생한다.¹⁷⁾
30. 연구들에 의하면 나이가 어린 아동은 신체적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성폭력은 주로 사춘기에 이르렀거나 청소년기인 아동들에게 가해진다.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신체적 폭력에 더욱 노출되어 있고, 반면 여아들은 성폭력, 방임, 매춘 등을 강요당하는 아동폭력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¹⁸⁾ 행동양상, 고정관념적 역할 등의 사회/문화적 형태와 수입이나 교육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31. 소규모의 연구들에 따르면 어떤 집단의 아동들은 특히 폭력에 취약하다고 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장애아동, 소수인종 아동, 거리의 아동, 법적문제에 휘말린 아동, 난민 또는 피난민 아동 등이 이에 속한다.
32. 불평등한 부의 성장, 국제화, 이민, 도시화, 에이즈와 같은 건강 위협, 기술 발전과 분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2005).

14) The End of Child Labour - Within Reach: Global Report(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06).

15) A Future Without Child Labour: Global Report(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02).

16) Global Trends in Child Labour 2000-2004. International Programme on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ur (IPEC) and Statistical Information and Monitoring Programme on Child Labour(SIMPOC)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06).

17) 17. Global Estimates of Health Consequences due to Violence against Children, op. cit. at footnote 8.

18) Krug, op. cit. at footnote 1.

- 쟁 등은 아동을 대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를 다루고 새천년개발목표와 같은 국제적으로 동의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은 아동폭력 근절에 도움을 줄 것이다.
33. 아동폭력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있듯이 폭력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요소도 있다. 비록 더 많은 이러한 보호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안정된 가족 단위는 모든 세팅에서 아동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34. 집에서나 다른 세팅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요인은 좋은 부모역할과 부모와 아동간의 강한 유대감, 긍정적인 비폭력 훈육을 말한다. 학교에서의 폭력을 보호하는 요인은 학교 정책, 비폭력, 비차별적 태도를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커리큘럼을 말한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단결은 비록 다른 위험요소가 존재한다할지라도 지역사회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35. 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복원력을 높이는 여러 요소를 연구들이 밝혀냈다¹⁹⁾. 이러한 복원력을 높이는 요인은 가족의 성인과 아동 간에 안전한 친밀감, 아동기 때 부모가 아동을 잘 돌봐주는 것, 학대를 하지 않은 부모와의 따뜻하고 지지적인 관계, 학대나 범 죄와 관련되지 않은 동료들과의 지지적인 관계 등이 있다.

D. 광범위한 파급효과

36. 비록 아동폭력의 결과가 그 성질이나 가혹함에 따라 매우 다양해질 수 있지만 장/단기의 영향은 매우 심각하고 치명적이다. 폭력은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결함과 약물중독,²⁰⁾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갖는 것과 같은 건강 위협 행위들에 대한 민감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²¹⁾ 관련된 정신건강과 사회 문제는 불안, 우울증, 환각, 능률저하, 기억문제, 공격행동 등을 포함한다. 어린나이에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나중에 폐, 심장, 간 등에 질병, 성병과 사산, 자살과 배우자 폭행을 야기할 수 있다.²²⁾

19) Preventing child maltreatment: a guide to taking action and generating evidence(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October 2006).

20) V. J. Felitti et al., "Relationship of childhood abuse and household dysfunction to many of the leading causes of death in adults.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ACE) Stud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vol. 14 (1998), pp. 245~258.

21)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Study(Atlanta, National Centers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6). Available at: <http://www.cdc.gov/NCCDPHP/ACE>.

22) See previous footnote. Also see Panel on Research on Child Abuse and Neglect, Commission on Behavioral

37. 아동폭력에 대한 경제적 국제소요비용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그러나, 아동에게 행해지는 폭력의 다양한 장/단기 경제적 비용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6년 미국에서 아동 학대, 방임, 사후의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치료를 위한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은 124억 달러로 나타났다.²³⁾

III. 아동폭력이 발생하는 환경

A. 가정과 가족

38. 가족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단위이다. 이는 대표적으로 세계인권선언문 16조와 경제·사회적, 문화적 권리조약과 시민적 정치적 국제조약 제 23조에 공포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서문에 의하면 가족은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연적인 환경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제공하고 아동을 보호하는데 가장 큰 잠재력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가족의 사생활과 자율성은 모든 사회에서 가치 있고, 가족들의 사생활 보장권은 국제인권조약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²⁴⁾ 아동폭력을 다루고 근절하는 것은 모든 사적 영역과 비교하여 가족의 구조 안에서 가장 도전적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생존, 발달, 존엄과 신체적 통합에 대한 권리는 대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정부의 책임 또한 대문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39. 부모 및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한 신체적, 의도적인 방임, 성적, 심리적 폭력과 같은 아동폭력의 심각성은 최근 몇 십년 동안 인지되고 문서화되어왔다. 영유아기 부터 18세 까지 아동은 가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연령 및 성숙도에 따라 부모, 양부모, 위탁부모, 형제, 기타 다른 가족 구성원, 보호자 등 다양하다.

and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 National Research Council, Understanding Child Abuse and Neglect (Washington, D. C., National Academy Press, 1999).

23) S. Fromm, "Total estimates cost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 the United States-statistical evidence." Prevent Child Abuse America(Chicago, PCAA, 2001).

24) See, for example, article 8 of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article 17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40.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아동폭력은 치명적이지 않고, 영구적이거나 심각한 외상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정에서 매우 어린 아동에게 가해지는 어떤 폭력은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영구적 상처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각 국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 유아의 머리 또는 뇌 손상과 빈번하게 관련이 있다고 한다.²⁵⁾
41.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폭력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자주 발생하고 신체적, 모욕을 주는 체벌의 형태로도 발생한다.²⁶⁾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혹한 체벌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것이다. 보고서에 기록되고 연구 지역 자문협의회에서 발언하였던 아동들에 의하면 그들은 이러한 형태의 체벌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받아 괴로웠으며,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훈육의 방법을 제안하였다.²⁷⁾
42. 신체적 폭력은 종종 심리적 폭력을 동반한다. 모욕, 헐뜯, 격리, 거절, 위협, 정서적 무관심 등은 아동의 심리적 발달과 성장을 해치는 폭력의 형태이다. 특히 부모와 같은 성인에 의해 가해지는 폭력은 더욱 그렇다. 부모가 비폭력적인 훈육방법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43.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방임은 질병을 치료받아야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아동이 의료서비스 등을 받지 못하게 하므로 사망과 질병을 야기한다. 여아와 남아의 성비율의 불균형이 있는 지역에서 여아는 특히 폭력과 함께 방임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 장애는 방임의 확률을 높인다. 장애아동들은 버려지기도 하고, 이 또한 장려되거나 용납되기도 한다.²⁸⁾
44. 가정에서 성폭력의 발생은 많이 알려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이 선진국으로 구성된 21개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7~36%의 여성과 3~29%의 남성이 아동기에 성학대의 피해자였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1.5~3배 정도 더 학

25) O. Flodmark, “Imaging in battered children”, Rivista di Neuroradiologia, vol. 17(2004), pp. 434-436.

26) J. E. Durrant “Corporal punishment: prevalence, predictors and implications for child behaviour and development”, in S. N. Hart(ed.), Eliminating Corporal Punishment (Paris, UNESCO, 2005), pp. 52 and 53.

27)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website (<http://www.violencestudy.org/r27>),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Ending Physical and Humiliating Punishment of Children~Making it Happen, Part 1. Sub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Stockholm, Save the Children Sweden, 2005).

28)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Regional Desk Review: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West and Central Africa, 2005, p.11.

대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학대는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발생한다.²⁹⁾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여러 나라를 연구한 자료에서도(개발도상국과 선진국 포함) 1~21%의 여성이 15세 이전에 성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다수의 경우 아버지나 양아버지이외의 다른 남성 가족 구성원에 의해 가해진 것으로 밝혀졌다.³⁰⁾

45. 결혼 연령이나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하는 법이 마련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아동이 폭력의 대상으로 노출될 수 있다. 8천2백만 여아가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많은 수의 아동들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강압된 성관계와 같은 폭력의 위험을 직면하고 있다.
46. 유해한 전통관습은 아동에게 적절치 못하게 영향을 미치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통을 부모나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아동들에게 강요한다. 세계보건기구의 특별 보고관(Special Rapporteur)에 의하면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 유럽, 캐나다, 미국 이민자 지역 등에서 여성과 여아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관습인 여성할례는 어린 여아에게 더욱 많이 실행되고 있다고 한다.³²⁾ 그 밖에 묶기, 상처내기, 화상, 낙인, 종교적 예식, 살찌우기, 결혼강요, “명예”를 위한 범죄, 신부지참금과 관련된 폭력, 엑소시즘이나 마력 등이 존재한다.
47. 1억3천3백만에서 2억7천5백만 명의 전 세계 아동이 매년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³³⁾ 집에서 아동이 폭력에 노출되는 것이 주로 부모들끼리 또는 동거자와의 싸움을 통해 이뤄지는 것은 아동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

29) D. Finkelhor, “The international epidemiology of child sexu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vol. 18, No. 5 (2005), pp. 409-417.

30) Multi-Country Study on Women's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op. cit at footnote 7.

31) J. Bruce, “Married adolescents girls; human rights, health and development needs of a neglected majority”, paper presented by the Population Council at the Supporting Event: Early Marriage in a Human Rights Context, United Nations Special Session on Children, 8-10 May 2002.

32)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main subsidiary body of the former Commission on Human Rights, has studied several thematic issues relating to the question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the last few years. The Special Rapporteur on traditional practices affecting the health of women and the girl child, Halima Embarek Warzazi, has particularly focused on the elimin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FGM). See, for example, her ninth and final report on the situation regarding the elimination of traditional practices affecting the health of women and the girl child(E/CN.4/Sub.2/2005/36).

33) Estimate based on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data for global population under 18 years for 2000 and domestic violence studies from 1987 to 2005. *Behind Closed Doors: Th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London, UNICEF and The Body Shop International Plc., 2006).

동기와 성인기에 개인 성격 발달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³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아동에 대한 폭력의 상관관계를 입증한 캐나다, 콜롬비아, 이집트, 멕시코, 필리핀, 남아프리카의 연구에서는 동거자의 폭력 또한 가정에서의 아동폭력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³⁵⁾ 인도의 연구에서는 가정 내 폭력이 아동폭력을 두 배로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³⁶⁾

B. 학교에서와 교육현장에서의 폭력

48.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들은 집밖의 교육환경에서 성인의 보호를 받으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학교는 아동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감독하는 성인들은 아동의 존엄성과 발달을 증진시키고,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49. 교육현장은 많은 아동들을 폭력에 노출시키고 폭력을 보며 배우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중인식은 극단적인 총기사례나 유괴사례들에 초점을 맞추는 언론에 의해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죽음이나 중상들은 집에서나 사회에서보다 훨씬 희소하다.
50. 학교교사 및 그 밖의 학교 교직원에 의한 학교폭력은 차별, 심한 당혹감을 느끼게 하는 정신적 처벌, 성폭력 그리고 권한을 막무가내로 행사하는 등이 있다. 때리는 등의 처벌은 많은 국가의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례적인 행위이다. 아동권리협약은 국가들로 하여금 학교처벌이 이 협약에 일치하게 실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모든 신체적 처벌 폐지를 위한 전 세계적 노력(The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은 집행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미 102개국에서 학교체벌을 금하고 있으나, 집행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다.³⁷⁾

34) L. A. McClosky, A. J. Figueredo and M. P. Koss, "The effect of systemic family violence on children's mental health", *Child Development*, vol. 66(1995), pp. 239~1261 cited in Krug, op. cit. at footnote 1, p.103; and S. R. Dube et al., "Exposure to abuse, neglect, and household dysfunction among adults who witnessed intimate partner violence as children: implications for health and social services", *Violence and Victims*, vol. 17, No. 1(2002), pp. 3~17.

35) Krug, op. cit. at footnote 1, p. 68.

36) W. M. Hunter et al., "Risk factors for severe child discipline practices in rural India", *Journal of Paediatric Psychology*, vol. 25(2000), pp. 435~447.

37)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Ending Physical and Humiliating Punishment of Children-Making it*

51. 학교폭력은 놀이터에서의 형태로도 발생한다.³⁸⁾ 어떤 국가에서는 싸움을 가벼운 징계 감 정도의 문제로 인식한다. 괴롭힘은 주로 빈민가정의 아동들이나, 소수민족그룹 또는 개인적인 결함(외모나 정신장애)이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어난다. 괴롭힘은 보통 비하하는 말로 상대를 낮추지만 신체적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학교는 또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조직 폭력적 문화와, 특히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³⁹⁾
52. 성폭력 및 성별에 관련된 폭력도 교육현장에서 자주 일어난다. 여학생들이 주로 남자 교사들이나 급우들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폭력은 동성연애자, 성전환자 및 양성애자를 표적으로 많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폭력은 해당 정부가 아동들을 이런 차별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지 못해 더욱 쉽게 일어난다.

C. 보호 및 사법 제도 안에서의 폭력

53. 수백만 명의 아동들이(특히 남자아이들)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고아원이나 보호원,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의 보호기관 또는 사법제도의 통제와 감시 속에서 지내고 있다.⁴⁰⁾ 이런 아동들은 그들의 건강과 건전한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감독관이나 직원들의 폭력에 의한 위협에 처하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런 통제시설에서 벌어지는 체벌을 금하지 않고 있다.
54. 혼잡하고 누추한 시설상태, 사회적인 낙인 및 차별행위, 그리고 직원들의 잘못된 교육은 폭력을 유발시킨다. 효과적인 항의, 모니터링, 감사 및 적절한 정부규제와 감시는 주로 시행되지 않는다. 또한 일부의 가해자는 오행을 저지른 후에 처벌받지 않음으로 폭행에 대한 관대라는 어긋난 사회적 문화를 만들기도 한다. 수용시설의 영향은 아동이 경험하는 폭력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 제도적인 결함에 의해 상처 입은 아동들은 경험에 의한 일시적인 충격은 물론이고, 심한 성장둔화, 신체장애, 되돌릴 수 없

Happen, Part 1.Sub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Stockholm, Save the Children Sweden, 2005).

38) Global Summary of the Legal Status of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op. cit. at footnote 6.

39) D. Olweus,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Oxford, Blackwell, 1993).

40)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Regional Consultation Outcome Report: Caribbean, Port of Spain, March 2005.

- 는 정신적 충격, 자살충동 및 상습적 범행등과 같은 장기적인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55. 세계적으로 8백만여 명의 아동들이 보호기관에서 생활한다.⁴¹⁾ 이들 중 극소수만이 고아이기 때문이고, 대부분은 장애, 가족불화/분열, 가정폭력 및 빈곤을 포함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인해 보호를 받는다.
 56. 보호기관 직원들이 “훈계”의 명목으로 저지르는 아동대상 폭행에는 손, 막대기, 호스 등으로 때리는 행위, 아동의 머리를 고의로 벽에 내려치는 행위, 옷장 속이나 추운 방 안에 며칠 씩 아동들을 감금하는 일, 아동 자신들의 배설물에 눕게 하는 행위들이 있다.⁴²⁾
 57. 보호기관에서는 장애아동들이 치료라는 핑계 속에서 폭력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는 아홉 살 밖에 안 된 아동들이 완화제나 마취 없이 전기경련요법(ECT)을 받기도 한다.⁴³⁾ 전기충격은 아동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또한 약물은 아동들을 순종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고, 그들을 폭력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만든다.⁴⁴⁾
 58. 방임은 많은 낙후된 보호기관들에서 흔히 발생하므로 많은 아동들의 건강과 삶을 위협한다. 많은 시설들에서 장애아동은 교육, 오락, 재활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길이 없다.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그냥 침대에 장시간 동안 아무의 관심이나 보호 없이 방치된다. 이러한 문제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인 손상을 불러일으킨다.
 59. 보호기관의 아동들은 타 아동들의 폭력에 의해 피해입기 쉬운 상태에 처해 있다. 이는

41) Please note that the situation of other children in State custody, including refugee and migrant children, as well as the situation of children in peacetime armies is addressed in detail in the in-depth study on violence.

42) D. Tolfree, *Roofs and Roots: The care of separated children in the developing world*(London, Save the Children UK, 1995) cited in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A Last Resort: The Growing Concern about Children in Residential Care*(London, Save the Children UK, 2003), p. 15.

43)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Regional Desk Review: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gion(2005), p. 19; Mental 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Hidden Suffering: Romania's Segregation and Abuse of Infants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Washington, D. C., Mental 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2006).

44) Mental 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Behind Closed Doors: Human Rights Abuses in the Psychiatric Facilities, Orphanages and Rehabilitation Centres of Turkey*(Washington, D. C., Mental 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2005).

특히 관리시설이 열악하고 관리관의 나이가 많은 경우,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아동들이 어리거나 약한 아동들과 분리되지 않았을 때 많이 발생한다. 관리직원들은 가끔 이런 아동들 사이에 학대를 허락하고 더욱 부추기기까지 한다.

60. 실제로는 국제 시민 및 정치 권리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만, 어떤 국가들은 여전히 18세 이하의 아동범죄에 대한 사형을 허락하고 있다. 현재까지, 최소 31개국의 나라가 범죄를 지은 아동들에 대해 체벌을 허락하고 있으며,⁴⁵⁾ 이는 보통 매질, 채찍질, 돌로 치거나 신체부위 절단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동반 할 수 있다.
61. 비록, 아동권리협약의 제 37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 감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그리고 최소감금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로 1999년에 100여만 명의 아동들이 자유를 박탈당한 것으로 추정된다.⁴⁶⁾ 대부분의 이런 아동들은 사소한 범행 및 초행을 저지른 경우이며, 특히 피부림, 방랑, 가출등과 같은 일 때문에 감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국가에서는 유치된 많은 아동들이 유죄선고를 받지 않는 않지만 재판관을 기다리고 있다.⁴⁷⁾
62. 유치된 아동들은 흔히 작은 규칙위반 행위 등으로 유치소의 직원들로부터 폭력의 피해를 입게 된다. 최소한 77개국의 나라에서는 체벌과 그 밖의 극단적인 처벌이 형벌로 허락되고 있다⁴⁸⁾. 아동들은 구타, 매질, 제지에 의한 처벌을 받으며, 다른 유치된 사람들 앞에서 매질 당하거나 나체로 있는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고문을 받는다. 여성아동들은 특히 남자직원들에 의해 신체 및 성폭력을 당하기 쉽다.⁴⁹⁾
63. 아동권리협약의 사항에 근거하여 어떤 국가들은 법적으로 성인유치소/집행소를 아동 시설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 이는 아동들을 성인들의 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동들이 성인들과 함께 감금된다. 이런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은 특히 자해나 자살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특히

45)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Summary report, thematic meeting on violence against disabled children, 28 July 2005(New York, UNICEF, 2005), p. 18.

46) Global Summary of the Legal Status of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op. cit. at footnote 6.

47) G. Cappelaere and A. Grandjean, *Enfants privés de liberté, e: droits et rv, ealitv, es(Li`ege, Editions Jeunesse et Droit, 2000).*

48) F. Martin and J. Parry-Williams, *The Right Not to Lose Hope(London, Save the Children UK, 2005).*

49) Global Summary of the Legal Status of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op. cit. at footnote 6.

이런 환경이 오랜 시간동안 지속됨에 따라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가끔은 감옥에서의 하루가 일년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10일 후에는 너무 익숙해져버려 더 이상 울지 않는다.”

-중동의 남아-

D. 노동환경에서의 폭력

64. 아동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자료는 거의 없다. 더구나 비공식적인 일터에서의 폭력에 관한 자료는 더욱 없다.⁵⁰⁾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ILO) 제 138호 같은 국제규범은 고용최소연령 미만의 아동이 일터에 고용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모든 지역을 초월해서 폭력 -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이 일터에서, 합법적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노동을 하는 수백만 아동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폭력은 일터의 아동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벌을 주거나 혹은 아동을 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어떤 범주의 아동노동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으로 판정되어 그 노동은 폭력으로 간주된다.
65. 일터에서 일어나는 아동폭력 행위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비록 가해자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 손님들, 십장들, 고객들, 경찰, 범죄 집단, 그리고 성폭력인 경우는 포주 등에 의해 행해지나 거의 고용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고 전한다.
66. 16세 미만의 여자 아동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노동범주는 가사노동으로⁵¹⁾ 이는 단속할 수 없는 형태의 고용이거나 착취이며 때로는 강제노동이나 노예상태로 일한다.⁵²⁾ 몇몇 국가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과 근절을 위한 즉각적 조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ILO) 제182호에 의해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으로 명시하고 있다.⁵³⁾ 아동노동자들은 그들이 차별, 모욕감, 성희롱 등 혹사를 당했

50)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on the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issue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State and federal prisons(E/CN.4/1999/68/Add.2), paras. 55 and 58.

51) M. Gröndal, One Day in Prison~ Feels like a Year: Palestinian Children Tell their Own Stories(Save the Children, Stockholm, 2003).

52)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Regional Desk Review: East Asia and the Pacific (2005); *ibid.*, Middle East and North Africa(2005); *ibid.*, Latin America(2005).

53) Child Labour: Targeting the Intolerable. Report submitted to the 86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98).

다고 보고한다. 또한 가사에 종사하는 아동들은 그들이 노동현장에서 끊임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대우를 받았다고 보고한다.⁵⁴⁾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여자 아동들은 대개 여자 고용주에 의해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당하지만 흔히 고용가정의 남자가족들로부터 성 폭력의 대상이 된다.⁵⁵⁾

67. 18세 미만 아동들을 매춘, 포르노그래피, 또는 이와 유사한 노동착취 하는 것은 폭력으로 간주한다.⁵⁶⁾ 매년 이러한 분야로 빠져드는 아동의 수가 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⁵⁷⁾ 많은 아동들이 강제로, 유괴를 당하거나 팔리거나 속아서, 혹은 인신매매로 이러한 길로 들어서게 된다. 아동매춘, 소년/소녀 매춘,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들로 이루어진 성폭력에 더하여 아동들은 신체적/심리적 폭력으로 시달리곤 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흔히 도움을 찾지 못하고⁵⁸⁾ 혹시 그들이 도움을 청하여도 범죄자로 취급되거나 자유를 빼앗기고, 보상에도 제한적이다.
68. 아동의 노예적 노동(Bonded Labour)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노동형태이다. 강제노동 혹은 노예적 노동에 처한 아동들은 고용주나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연구 보고서나 아동들의 증언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폭력이 강제노동이나 노예적 노동 아동들에게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폭력은 이 세상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전통적인 노예들이 하던 형태의 노동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54) Abuses Against Child Domestic Workers in El Salvador, Human Rights Watch, vol. 16, No. 1(B)(2004), Always on call: Abuse and Exploitation of Child Domestic Workers in Indonesia, Human Rights Watch, vol. 17, No. 7(C)(2005); Human Rights Watch, Inside the Home, Outside the Law: Abuse of child domestic workers in Morocco, Human Rights Watch, vol. 17, No. 12(E)(2005); and T. Blanchet, Lost Innocence, Stolen Childhood(Dhaka, University Press Limited, 1998).

55) Helping Hands or Shackled Lives? Understanding Child Domestic Labour and Responses To It(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nternational Programme on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ur, 2004).

56) Child domestic workers: A handbook on good practice in programme interventions(London, Anti-Slavery International, 2005), pp. 5 and 6.

57) J. Blagbrough, "Violence against child domestic workers"(Anti-Slavery International paper presented at a Save the Children workshop, Thailand, September 2003).

58) For a full definition of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see the Declaration of the World Congress Agains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Stockholm, June 1996. Availableonline: <http://www.csecworldcongress.org/>.

E. 지역사회에서의 폭력

69. 지역사회는 아동들에게 보호와 단합의 근원지가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래 간의 폭력이나 폭력과 관련된 총기 및 무기들, 집단의 폭력, 경찰폭력, 신체/성폭력, 유괴, 인신매매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 폭력은 또한 대중매체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과도 연관될 수 있다. 연령이 높은 아동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높고 여아의 성폭력과 성관련 폭력(gender-based violence) 위협에의 노출 또한 증가하고 있다.
70. 어떤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학교에 가고 오는 여정이 지역사회에 자신들의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처음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기도 하다. 또 다른 아동들은 가사를 돕는 일로 물이나, 연료, 음식, 동물사료들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폭력에 노출 되기도 한다. 이런 가사는 개발도상국의 농촌의 여자아동들에게 부여되곤 하는데 아동들은 이러한 물건들을 들고 상당한 거리를 걸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⁵⁹⁾
71. 갑자기, 그리고 급격하게 폭력이 (피해자와 가해자 공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5세 내외의 소년들 간의 폭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요인들을 종합하면 청소년기의 아동들에게 또래간의 폭력이 공통적으로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에 따르면 세계의 많은 곳에서 15세부터 17세 사이의 아동들 사이에 일어나는 살인 사건이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아동들의 비율보다 세배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15세 이상의 아동들의 폭력발생율의 급작스러운 증가는 살인율이 낮은 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폭력 행위를 제어하는 조치들이 10대 중반 이전이거나 10대 중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적임을 암시한다.⁶⁰⁾
72. 또래 간에 일어나는 신체폭력은 주로 도시지역에서 성행되는데 그 도시환경이 일자리의 부족, 교육의 부족, 편의/복지시설의 부족 혹은 주거환경의 열악함이 있는 곳으로 젊은 층들이 도시로 몰려 빠른 속도로 인구 증가를 이루면서 좌절감, 분노, 억압된 긴

59) Profiting from Abuse. Report into children in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New York, UNICEF, 2001), p. 20.

60)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10 Essential Learning Points: Listen and Speak out against Sexual Abuse of Girls and Boys. Global Submission to the U.N.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Oslo, Save the Children Norway, 2005), p.58.

장감, 반사회적 행위 등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이러한 폭력은 친구나 지인들 간의 분쟁이 포함되고, 마약이나 알코올 문제도 강하게 연루 되어있다. 총기와 다른 무기들이 사용되기도 하여 이러한 싸움은 심한 부상이나 죽음을 야기하기도 한다. 사춘기 살인 발생률의 성비 차이는 남성의 사회화 과정이나 남성다움의 기준 등이 폭력에 기여 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예컨대, 라틴아메리카와 칼리비안 지역에서는 사춘기 살인 발생률이 여자보다 남자가 2-6배나 높다.⁶¹⁾

73. 폭력이 심각한 곳에는 경찰의 만행과 공정한 법체계에 접근의 어려움도 동시에 발생한다.⁶²⁾ 어떤 국가에서는 조직적인 범죄나 집단 폭력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그들을 저지하는 강한 억압적 조치를 채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강한 조치들이 일관성 있는 폭력 예방 전략과 믿을만한 자료 시스템, 인권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연관되지 못할 때 폭력의 위험수위는 높아진다. 증가하는 차별조치들과 집단 폭력배로 추측되는 자들의 대량구금, 큰 규모의 집단 폭력배들의 구금, 비효율적이고 폭력적인 법집행 등이 가난한 젊은이들을 낙인찍는 일이 되거나 폭력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기여하게 된다.
74. 비치명적 폭력에 관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청소년 살인이 있을 때마다 약 20-40명의 희생자가 죽지는 않지만 병원치료가 요청되는 희생자가 발생한다. 살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비 치명적 폭력의 희생자들 역시 여자보다 남자 청소년들에게서 더 많이 일어난다.⁶³⁾
75. 아동들은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성 폭력과 성 착취로 상처 입기가 쉽다. 성 폭력은 아동이 잘 아는 사람들, 즉 가족이나 믿을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운동코치, 성직자, 경찰, 교사, 고용주 등)에 의해 범해 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아동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가해진다.⁶⁴⁾ 최근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폭력은 흔히 사춘기 청소년들 사이에서 관계의 한 특성 이라고 한다. 현재 진행 중인 13세-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 학교에 기초한 보건연구 (Global School-based Health Survey)의 초기 보고서에 의하면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 간에 신체폭력이 성행하고 있음이 보

61) Every Girl Counts. Development, Justice and Gender. Girl Child Report(Ontario, World Vision Canada, 2001), p.17; UNICEF Somalia, From perception to reality: A study on child protection in Somalia(Nairobi, UNICEF, 2003).

62) Global Estimates of Health Consequences due to Violence against Children,op. cit. at footnote 8.

63) Ibid.

64) Easy Targets: Violence against children worldwide(New York, Human Rights Watch, 2001).

고 되었다.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상대친구에게 맞거나, 뺨을 맞거나, 의도적인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하여 요르단에서는 15%의 여자와 29%의 남아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나미비아(Namibia)에서는 여자 9%, 남자 16%가, 스와질란드에서는 여자 6%, 남자 8%, 잠비아에서는 여자 18%, 남자 23%가 그렇다고 대답했다.⁶⁵⁾

76. 지역 사회의 폭력은 소외계층의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거리아이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 - 언어폭력, 때리기, 강간, 기타 성폭력과 고문, 유괴 등 - 은 연구 자료에 흔히 중요한 테마로 등장 한다. 모든 지역의 아동들은 그들의 사소한 범죄에도 경찰이 잔인하게 이유 없는 폭력을 행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⁶⁶⁾
77.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기 시작하면서, 관광이 성을 즐기는 관광으로 전환되고 흔히 그러한 관광의 희생자들은 아동들이다. 인터넷과 다른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 또한 아동들의 성 착취 와 기타 다른 형태의 폭력의 위협이 심해지는 일과 연관되고 있다.
78. 난민 가정의 아동들은 독특한 폭력을 경험한다. 아프리카에서 나온 난민에 대한 연구 보고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간에서 아동들이 성과 관련된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며 특히 여아들에게 그 위협이 높다고 보고한다.⁶⁷⁾ 많은 난민수용소(캠프)에 안전한 건물이 부족하고, 규칙적인 법 시행이나 공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위한 쉼터가 부족하거나 보상 받는 체계가 부족하다.⁶⁸⁾ 강제적인 이주 난민의 경우 여성과 여아들이 특히 성과 관련된 폭력의 위협에 심각하게 노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과 여아들은 그들의 문화와 사회 경제적 위치, 법적 지위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또한 이들의 권리행사는 남자와 남아들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 하는데 비해 훨씬 미치지 못한다.
79. 아동을 포함한 인신매매는 여러 국가 내에서, 또 국가간의 경계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우선 빈곤, 이주노동, 갈등, 인구 강제 이동에 따른 정치적 불안으

65) Krug, op. cit. at footnote 1, p. 27.

66) 10 Essential Learning Points, op. cit. at footnote 59, p. 22.

67) Analysis provided to the Study by the Global School-based Health Surve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op. cit. at footnote 9.

68) M. Wernham, An Outside Chance: Street Children and Juvenile Justice~An International Perspective (London, Consortium for Street Children, 2004).

로 인한 복합적인 현상이다.⁶⁹⁾ 인신매매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의 폭력이 포함 된다. 유괴, 아동과 부모와 후견인 및 연계하는 중개인에 의한 속임수,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이 그들의 목적지로 이송되는 중⁷⁰⁾ 가해지는 성 폭력, 그리고 일자리를 기다리는 동안 당하게 되는 폭력 등이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폭력적인 상황에서 인신매매 되어 빛 때문에, 혹은 계약으로 묶여서 노예처럼 강제결혼, 가사노동, 농사일로 착취당한다.

80. 때때로 대중매체는 인쇄물에서, 텔레비전이나 영화, 비디오 게임 등 시청각 자료에서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또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려낸다.⁷¹⁾ 인터넷 역시 아동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을 담은 자료들을 생산하여 배포하고 활용하도록 부추긴다. 인터넷은 아동을 유인하여 아동들에게 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 아이들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한다. 인터넷은 또한 아동들을 폭력적이고 포르노그래픽한 자료들에 노출시키고, 성인들과 다른 친구들에게 당하는 왕따, 괴롭힘 등의 위험에도 노출시킨다.⁷²⁾ 캐나다와 영국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메일이나 이동전화기에 의해 괴롭힘과 왕따에 희생되고 있다고 한다.⁷³⁾ 또한 타인에 대한 거짓정보를 온라인에 올려 대중들에게 알리는 일도 한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아동들에게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쇄물, 텔레비전, 혹은 영화를 보는 것을 제한하는 일 보다 훨씬 어렵다.

69) Darfur: women raped even after seeking refuge; donors must increase support to victims of sexual violence. Human Rights Watch, press release, 11 April 2005; Lives blown apart: Crimes against women in times of conflict(London, Amnesty International, 2004); A. C. Okot, I. Amony and G. Otim, Suffering in Silence: A Study of Sexual and Gender Based Violence(SGBV) in Pabbo Camp, Gulu District, Northern Uganda(New York, UNICEF, 2005); J. Gardner and J. El Bushra, Somalia, The Untold Story: The War through the eyes of Somali Women(London, CIIR and Pluto Press, 2004).

70) J. Ward, If not now, when? Addressing gender-based violence in refugee, internally displaced, and post-conflict settings (The Reproductive Health for Refugees Consortium, 2002); Seeking Protection: Addressing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in Tanzania's Refugee Camps (New York, Human Rights Watch, 2000).

71) Trafficking in human being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in Africa(2nd edition) (Florence, UNICEF Innocenti Insight, 2004).

72) Trafficking for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exploitative practices(Florenc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2005).

73)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Regional Desk Review: North America(2005).

IV. 성과

81. 본인의 연구 설문지에 대한 각 정부의 응답과 아동권리위원회의 결과보고는 본인이 위에서 제시한 아동폭력의 모든 형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기타 기관들에 의해 이미 수많은 노력들이 개발되어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82. 예방 및 조치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의 축적된 경험 및 지식은 지역자문단(Regional Consultations)에게 발표 되었고, 이 중요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역량이 입증되기도 하였다.
83. 192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고,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유엔아동권리 선택의정서와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많은 국가들이 비준 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시행된 이래로 다른 중요한 국제문건들이 채택 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상당한 수의 국가들이 비준하였다. 국제노동기구협약(ILO) 182호는 1999년에 채택되었다.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범죄 방지협약을 보완하는 여성과 아동에게 가해지는 억압, 체벌, 그리고 인신매매 방치를 위한 선택의 정서가 2000년에 채택되었다.
84. 이러한 법적인 문건에 기초하여 많은 조치들이 시행되고 구체적인 행동이 취해졌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182호를 통해 새로운 노동법들과 국가 행동계획들이 제정되거나 수정되었고 가장 잔악한 형태의 노동을 없애는 체계가 형성되었다. 아동인신매매는 반 아동인신매매 법을 통하여 아동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된 국가들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력이 강화되어 왔다.
85. 본인의 설문지에 대한 답들은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응한 활동들이 현저하게 입법적이었음을 알린다. 국가들이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관련하여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선택의정서, 또는 다른 국제 법에다가 자국의 법을 조화시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적 개혁은 아주 미시적인 접근으로 아동폭력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효과적 접근보다는 오히려 아동폭력과 관련된 그 행위(비록 중요하긴 하지만)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주 적은 수의 국가들만이 효율적으로 아동 폭력을 다룰 수 있는 관점의 법제도적 점검을 했을 뿐, 법적 개혁을 포함한 실천이 과제로 남아있다.

86. 여러 국가에서 아동폭력에 대해 언급한 법적 조치는 주로 성폭력과 신체폭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심리적 폭력은 간과하고 있다. 보호와 처벌에 집중을 하는 반면 회복, 재통합, 보상에는 관심이 적다. 또, 어떤 국가들은 예방을 법적 측면에서 보호와 처벌 등을 통해 단순한 대응만 하고 있을 뿐이다.
87. 본인의 설문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아동폭력과 관련, 각 국가에서 행동계획, 사업, 정책 고안들이 주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것 역시 아동의 성 착취나 인신매매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어떤 국가들은 아동보호와 아동관련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법적 구조- 청소년법원 혹은 가정법원을 포함한 -를 창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많은 국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아동권리와 아동보호 문제를 위해 아동권리옹호, 인식증진, 그리고 아동권리교육/훈련 사업들이 수행 되었다. 또한 대중매체들도 아동권리 인식 증진과 정보 확산 및 사회동원 문제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해 주었음을 보고했다. 그러나 어떤 국가들은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역할에 대하여 보고 하기도 하였다. 즉, 폭력에 희생된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공개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등의 해로운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기도 했다.
88. 법시행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현존하는 조치들이 충분치 않지만, 아동권리위원회와 인권 특별절차 훈령소지자들은 여러 현장에서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지역 당사국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좋은 프로그램들과 조치들을 통해 여성 성기절단문제, 아동노동 특히 가장 잔악한 형태의 노동문제들, 또 여성과 아동들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 등을 철폐하기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시하였고, 감사를 표하고 있었다. 거리아이들을 돕고 지원하기위한 프로그램들, 부모를 돕고 부모들의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소외된 계층의 아동들 - 장애를 가진 아동들, HIV/AIDS에 감염되거나 영향 받은 아동들, 토착민 자녀들과 국가, 민족, 종교, 언어 등의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법들이 제정되었다.
89. 지역적 인권보호기구들이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위한 법적기준을 개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럽인권법원과 유럽 사회권위원회를 포함한 유럽인권기구의회의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적학대와 차별을 포함하는 모든 폭력에 대한 매우 중요한 판결과 결단을 이행 하였다. 아동인신매매 및 신정보기술과 연관된 폭력을 문제 삼

는 법적 문건들이 유럽 법기구 의회와 함께 개발 되었다. 아프리카연합의 회원국들은 여성성기 절단 같은 해로운 전통 행위의 근절과 관련된 추가 조치들을 포함하여, 아프리카 여성의 권리를 다루고 있는 아프리카 인권 헌장을 채택하였다. 또 지역 내 수준에서는 2000년에 지역협력을 위한 아시아 연합에서 아동과 여성 매춘을 위한 인신매매 예방과 인신매매와의 싸움에 대한 지역협약을 채택하였다.

V. 결론

90.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위해 제안되거나 개발된 조치들의 영향을 저해하는 요인들 또한 존재한다. 이는 아동폭력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하고, 또는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폭력문제와 관련한 자료와 통계의 부족도 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폭력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흔히 사건에 반응하는 식으로, 폭력이 낳은 증상과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원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 전략들도 단편적으로 수립되어 통합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문제제기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에 할당된 자원도 불충분하였다.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국제적인 약속들이 국가 수준에서 실천되지 못하였다.
91. 당사국들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는 약속을 이미 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과정에서 만난 아동들의 증언과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폭력과 관련된 약속들이 충족되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어떠한 아동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과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은 미연에 방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용납 되어서는 안 된다. 당사국들은 이제 인권에 대한 긴급한 의무수행과 아동을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 한다는 국제 약속을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법적 의무가 당사국에게 있지만, 사회의 모든 분야와 개인들과 아동폭력을 예방하고 아동희생자들에게 적절히 대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만일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인정하거나 용인 한다면 그 누구도 아동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것이다.

92. 동시에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그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폭력의 형태,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 가해자 혹은 가해자들을 반영하여 다각도로 접근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93. 연구과정에서 아래의 원칙들이 나의 제언에 영향을 주었다.
- (a) 아동에 대한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아동이 성인보다 덜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
 - (b) 모든 폭력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국가는 아동폭력을 만연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 근거기반의 정책들과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
 - (c) 국가는 아동들의 보호권을 지켜주고, 서비스에 도움을 받게 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가정의 역량강화를 지원해줄 우선적인 책임을 진다.
 - (d) 국가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e) 아동이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그들의 나이나 성숙과정과 연관 된다. 어떤 아동들은 성별, 인종, 인종적 태생, 장애 혹은 사회적 지위로 인해 특별히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
 - (f) 아동들은 자기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실행 될 때 반드시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한다.

VI. 제언

94. 본인의 제언은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모든 노력에 적용하기위한 포괄적인 권고문이며, 가정과 학교, 그리고 다른 교육 세팅, 보호와 구금을 위한 시설들, 일터와 지역사회에 적용할 구체적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95. 우선적으로 국가들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가의 법, 행정, 사법, 정책제정, 서비스 전달 체계, 제도적 기능을 다루고 있다. 어떤 제언은 사회의 매우 중요한 다른 부분들에게 제안하는 사항들이다. 이에선 전문가기구, 무역연합, 연구소, 고용인, 그리고 비정부기

관과 지역사회조직들이 포함된다. 또한 부모와 아동들에게도 전하는 제언들이다.

A. 포괄적인 제언

1. 국가 및 지방의 약속과 행동 강화

96. 모든 국가들이 아동폭력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면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개발하고 그것이 국가행동계획 절차에 통합되어야 함을 권고 한다. 한 국가의 전략, 정책, 행동계획은 현실감 있어야 하고, 기한 안에 시행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광범위한 시행전략에 다양한 분야를 포함시킬 역량이 갖춰진 기관과 협력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국가의 법, 전략, 정책, 계획, 그리고 사업들은 국제적 인권과 공인된 과학적 지식에 충분히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의 전략, 정책, 계획의 실행은 목표와 시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전략, 정책, 계획과 사업은 각국의 상황과 자원을 충분히 고려해 세워져야 한다.

2.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금지

97. 본인은 18세 미만의 어떤 아동도 사형제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석방의 가능성 없는 종신형에 처해도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국가가 18세 미만의 아동이 행한 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사형집행을 즉시 정지하고 국제 인권기준에 준한 다른 방법으로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한다. 18세에 이르기 전에 지은 범죄에 대하여 내려진 사형선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98. 본인은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 모든 장소에서의 폭력들, 즉 체벌이나 조기결혼, 여성 성기절단 같은 해로운 전통적 습관들, 그리고 소위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범죄, 성폭력, 고문을 비롯하여, 다른 형태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등은 아동권리협약이나 고문 및 다른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등 국제적인 법적 문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 되어야 한다. 아동권리 위원회가 General comment No. 8(2006)에서 아동들을 체벌과 그 외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언급한 것에 대해 주목해 주기를 바란다. (협약 제19항, 제28항 2호, 특히, 제37항) (CRC/C/GC/8)

3. 예방우선

99. 본인은 국가들이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관련, 그 근본원인을 다루면서 미연에 방지 하도록 권한다. 폭력이 발생한 후 개입을 위해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고 위험한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이 분배되어야 한다.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 즉,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부재, 가족해체, 알코올과 약물 남용 그리고 총기나 다른 무기체의 접근성 등을 다루어야 한다. 새천년개발목표에 따라서, 빈곤, 성별 및 다른 형태의 불평등, 수입의 격차, 실업, 도시인구집중 등 사회를 약화시키는 모든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 비폭력 가치와 인식증진

100. 본인은 국가들과 시민단체들이 아동폭력, 일반화 되어있는 성역할과 차별, 체벌의 수용, 그리고 해로운 전통관습들을 눈감아주거나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함을 주장한다. 국가들은 아동권리를 널리 알리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이해 시켜야 한다. 아동폭력으로 생기는 해로운 영향에 사람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모든 행태의 언론 매체가 아동권리를 충분히 존중할 수 있도록 국가들은 대중매체가 비폭력 가치를 갖도록 유도하며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5. 아동을 위하여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역량 개선

101. 아동을 위해 일하거나 아동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동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 함을 권고 한다. 일차적, 그리고 이후의 연수를 통해 또는 사업 활동 중에 아동의 권리존중과 아동권리에 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국가는 아동과 가족들을 위하여 일하는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 모두가

아동폭력을 예방하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투자하여야 한다.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방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과 명백한 활동 기준들이 조성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6. 회복 및 사회 재통합 서비스 제공

102. 각 국가는 입원전의 간호와 긴급 치료, 그리고 아동을 위한 법의 지원은 물론 폭력이 목격되거나 적발되는 등의 적절한 경우에는 아동의 가족들에게도 법률적 지원과 접근 가능한 보편적인 보건과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보건, 범죄 재판, 사회복지 제도는 아동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추어 고안되어야 한다.

7. 아동 참여 보장

103. 각 국가는 적극적으로 아동의 참여를 도모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2항을 고려하여, 아동폭력의 예방, 대응, 모니터링의 모든 방면에 대한 아동의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폭력에 대처하고자 하는 아동기구와 아동중심프로그램들은 지원받아야 하고 장려되어야 한다.

8. 접근 가능한 그리고 친 아동적인 신고체계와 서비스의 수립

104. 아동폭력 신고와 관련, 각 국가는 안전하고, 널리 홍보가 되어 있고, 비밀이 보장되고 아동 및 아동의 대리인이 접근하기 쉬운 절차들을 세워야 한다. 보호 및 처벌기관에 있는 아동들을 포함한 모든 아동은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아동이 학대를 신고하고, 전문 상담가에게 말하고, 지원 및 조언을 비밀리에 요청할 수 있는 상담전화서비스와 같은 방법들이 고안되어야 하며, 신기술을 이용하여 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의 수립도 고려되어야 한다.

9. 책임보장과 처벌 감형의 폐지

105. 각 국가들은 모든 아동 폭력법을 적합한 형사상, 시민의, 행정의, 전문적 절차와 제재를 통해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폭력범죄와 아동성학대로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들은 아동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10. 성별적 차원의 아동 폭력에 대한 대응

106. 각 국가들은 폭력에서 여아와 남아가 겪게 되는 다른 위험요소들을 고려하여, 비폭력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성인지의 측면에서 고안되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들은 여성과 여아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것이며, 폭력예방의 포괄적 전략 중 한 부분으로써 성차별의 모든 형태에 대응해야 한다.

11. 제도적인 국가 자료 수집과 조사의 개발 및 시행

107. 각 국가들은 취약 그룹을 찾아내고, 모든 단계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폭력 예방을 위한 목표달성 진행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및 정보 체계를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국제적으로 동의된 기준들로 국가 지표를 나타내야 하고, 각 시대의 진행과정을 모니터 할 수 있도록 자료가 취합, 분석, 배포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자료들이 있는 경우, 전체적인 국가적 자료 수집에 출생, 사망, 결혼 자료 등록을 생성하고,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한다. 국가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는 아동과 형사상 관할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자료도 제작하고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자료는 성별, 연령, 도시/시골, 가정, 가족 특징, 교육, 인종에 따라 분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폭력이 자행되는 상황들에 대한 아동폭력 국가연구안 개발을 제안하는데, 조사는 취약한 여아와 남아 그룹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아동 및 부모와의 인터뷰 등으로 실시될 수 있다.

12. 국제적 약속의 강화

108. 각 국가는 아동권리협약과 무력 분쟁상황에 있는 아동들의 참여와 아동 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두개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시행해야 한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의 행동계획(Plan of Action)과 비엔나 선언에 따라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목적과 동기에 모순된 유보사항들은 철회되어야 한다. 국가는 아동보호를

제공하는 모든 관련된 국제 및 지역 인권협약들을 비준해야 한다. 관련 인권협약은 다음과 같다: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f Punishment 와 이의 선택의정서,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와 이의 선택의정서, 최소고용연령에 대한 ILO 제 138호, 최악의 아동노동에 대한 협약 제 182호,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을 보완하는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국가는 국가의 모든 국제적인 법적의무를 시행해야 하고, 협정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109. 각 국가는 폭력 및 보건에 대한 세계 보고서(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⁷⁴⁾의 제안사항 시행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보건총회 결의안과 그 외 본 결의안을 지지하는 지역공공보건 결의안과 관련하여 유엔아동총회에서 수립된 폭력예방을 위한 약속들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B. 환경 특별 제언

1. 가정과 가족

110. 가족은 아동발달과 양육에 대한 주요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아동보호를 위해 부모와 양육자들을 지원할 것을 숙지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 한다:
- (a) 아동양육의 역할에 있어서 부모와 그 외 양육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강화하도록 한다. 보건, 교육,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는 질 높은 초기 아동발달 프로그램, 가정방문, 출산 전·후 관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수입증대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 (b)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구체적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러한 가정들에는 여성 혹은 아동 가장인 가정, 소수민족이나 차별을 당하는 그룹에 속한 가정,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포함된다.

74)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Report of the World Health Assembly(WHA56.24), Fifty-sixth World Health Assembly(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 (c) 훈육의 비폭력적인 형태를 중점으로 하는 성인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아동의 발달 역량과 아동관점 존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건강한 부모-아동 관계를 촉진하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훈육의 형태와 아동발달접근들을 소개해야 한다.

2. 학교와 그 외 교육환경

- 111. 모든 아동은 비폭력의 상황에서 학습해야 하고, 학교는 안전하고 친아동적이어야 하며, 교과과정은 권리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폭력을 묵과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는 시정되고 비폭력적 가치들과 행동이 학습되어야 함을 숙지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한다:
 - (a) 국가는 학교가 성차별 고정관념과 행동, 그리고 차별의 다른 형태들과 관련, 모든 직원과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시행하도록 장려한다.
 - (b) 국가는 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비폭력 교수법 및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두려움, 위협, 모멸 혹은 신체적 폭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교실 운영과 훈육방법들을 채택하도록 한다.
 - (c) 비폭력적인 분쟁해결방법과 같은 기술들의 수립을 장려, 비협박적 정책들의 시행, 학교 내의 모두에 대한 존중 촉진을 포함하는 학교 환경 실태 보고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교의 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켜야 한다.
 - (d) 모든 형태의 차별을 활발하게 혹은 소극적으로 촉진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교과과정, 수업진행, 그리고 그 밖의 시행들은 아동권리협약의 조항과 원칙을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3. 보호 및 사법 제도

- 112. 국가는 보호기관과 청소년 구류시설에 있는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음을 숙지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한다:
 - (a) 시설 보호는 최후의 방법으로만 사용되도록 하는 가운데, 가정보존과 지역사회기반 대처방안들을 지원함으로써 시설기관화 비율감소를 최우선으로 한다. 가정기반 보호는 모든 경우에서 가장 우선적인 방안이어야 하는 동시에 영유 아에게는

유일한 방법이어서야 한다. 가능한 경우마다, 국가는 보호기관에 있는 아동들이 적절한 상황 하에 그들의 가족들과 재결합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원주민 아동과 소수민족에 속한 아동은 특별히 위기에 처해있음을 인식하며, 국가는 이러한 아동과 그들의 가정이 문화기반 지원과 보호 서비스를 받고, 사회복지사들은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 (b) “우범죄” (아동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범죄, 예, 무단결석, 가출,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 생존을 위한 행동들(구걸, 성매매, 버려진 음식 등을 찾아 헤매는 것, 빈둥거림, 부랑생활), 밀매 혹은 불법행위의 희생자가 되는 등을 비범죄화 함으로서 처벌기관에 들어가는 아동의 수를 감소한다. 국가는 또한, 국제 기준⁷⁵⁾을 반영하는 포괄적이고, 아동 중심적인, 회복될 수 있는 청소년 구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타인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평가된 우범자들만 구금해야 하며, 지역사회기반 재화와 재통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방법들에도 막대한 자원이 투자되어야 한다.
- (c) 아동을 가정 혹은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시설로 이송한 다는 목표를 가지고, 아동이 보호기관 혹은 구류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원인들을 검토함으로써 아동의 이송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한다.
- (d) 보호 및 구류시설에서의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고발, 조사, 강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 (e) 기관에 있는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고 있도록 하며 그러한 권리들이 보호되기 위한 방법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f) 사전공고하지 않은 방문을 행하고, 사적으로 아동 및 직원들과 인터뷰를 실시하며, 폭력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진술을 조사하는 권한이 있는 독립 기관에 의해 보호 및 구류시설들이 효과적으로 모니터 되고 정기적으로 접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5) See, for example, articles 37, 39 and 40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the Beijing Rules),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the Riyadh Guidelines), the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and the Guidelines for Action on Childre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g) 구류시설에 예방을 위한 독립적인 방문 가능 제도를 제공하는 고문반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한다.

4. 노동현장

- 113.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제 138, 182호,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그 외 국제협약들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미성년은 노동에 가담할 수 없으며, 일터에 있는 모든 아동들을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보호해야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제안 한다:
 - (a) 국내 노동법을 시행하고, 아동노동철폐를 국가 개발 정책으로 포함시키고, 아동노동의 “잔혹한 형태”를 제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데, 이러한 “잔혹한 형태”는 폭력과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착취가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 어업, 가사일과 같은 비공공부문에서 아동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에 특별한 주의를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에 아동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 (b) 아동이 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곳(즉, 국제협약을 준수하는)에서는 폭력예방프로그램, 고발 제도, 소송절차들을 명백히 포함하는 규제제도와 조사과정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c) 아동이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미성년과 “잔혹한 형태”의 노동을 하고 있는 아동들이 일을 그만 두고,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더 이상의 희생 없이 삶의 기회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복 및 통합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장한다.
 - (d) 기업 사회책임 방법들을 고무하고, 사기업 부문, 무역 연합과 시민 사회가 노동현장에서 예방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한 윤리지침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기업 부문, 무역 연합, 시민사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5. 지역사회

- 114.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들이 사회경제적 위험요소들과 그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한다:

- (a) 지역사회의 긴급 위험 요소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전략을 시행한다. 위험 요소들은 장소마다 차이를 보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알코올과 마약에 대한 쉬운 접촉, 총 및 그 외 무기들을 소지하는 것, 불법적 활동에 아동을 사용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 (b)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정부는 지역사회의 취약성과 폭력을 당하는 아동들에 대한 공공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 가정, 고용, 그리고 질 높은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들의 시행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한다. 경제·사회적 문화적 권리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 집단간, 집단내의 참여와 빈곤, 그리고 관계망 개선을 위한 접근이 우선적이어야 한다.
- (c) 특별히, 소외된 계층과 차별당하는 그룹에 속해있는 아동들을 비롯하여, 모든 아동들을 대할 때에 적합한 방법들을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아동권리 교육이 경찰력을 위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안하고 시행한다. 또한, 아동발달의 단계, 정체성 발달의 과정, 아동에 대한 폭력의 행태와 성격, 일반 또래 그룹과 비행 소년 그룹의 차이점, 알코올 및 마약의 영향에 있는 아동들의 적절한 관리 등의 교육이 경찰들에게 실시되어야 한다.
- (d) 희생자와 가해자를 위한 서비스들의 상호 추천과 사후 점검을 포함하는 통합 서비스들에 대한 조기 접근을 제공한다. 입원전의 치료와 희생자를 위한 신체적, 정신적 지원 서비스와 함께 응급치료를 개선시킨다. 가해자가 충분한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가해자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도 제공해주어야 한다.
- (e)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는 지방정부 및 시민 사회의 노력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는 특별히, 절대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을 염두에 두면서, 소년 소녀들을 위한 안전한 오락프로그램 및 그 밖의 기회들을 제공하는 등으로 활성화 될 수 있다.
- (f) 지방 및 시(市)정부가 물리적 환경에서의 위험 요소들을 감소시키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돌아다니기에 안전한 길을 만들어 주는 것과 같이, 밝고 안전한 공공장소의 제공은 도시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g) 관련 국제 협약과 국제적 기준에 일치하는 적합한 법적 틀을 개발하고 인신매매 근절 국내법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양자의, 지역 내에서, 지역 간의,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모든 아동을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에서 보호하기 위한 노력

을 강화하며, 법적 정의들, 절차들, 그리고 모든 단계의 협력을 조화시켜야 한다. 전략은 일차 예방에서부터 인신매매 범들을 다루는 법적 강화에까지 이르러 세워져야 하고(즉, 아동이 인신매매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들을 바꾸는 것), 인신매매 및 관련된 모든 착취의 희생자들이 유죄가 되지 않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 (h) “이중 범죄⁷⁶⁾”의 조건들을 폐지하고,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범법행위의 처벌 강화를 위해 국내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에 대한 선택의 정서를 비준한 국가들은 선택의 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법행위자의 본국송환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사용하자는 국내법을 수정하도록 당부한다.
- (i) 인신매매당한 아동이 범죄 조사와 법적 절차에 연루되는 경우, 이들에게 보호, 의료적 도움, 적절한 지원, 사회 재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국가들은 아동 희생자와 범죄행위 목격자를 포함하는 사법관련 사항들에 대한 유엔 가이드라인(United Nations Guidelines on Justice in Matters)에 만반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⁷⁷⁾
- (j) 아동의 성착취와 기타 폭력의 모든 형태에서 인터넷, 핸드폰, 전자오락을 포함한 정보기기의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들에게 위험적 상황들을 교육하고 알리는 방법들을 지원한다.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유통시키고,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자들을 유죄로 인정하고 적절한 처벌이 있도록 조치한다.
- (k) 아동 보호를 위한 전 세계적 기준이 고안되고, 시행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산업을 장려시킨다. 각각의 보호제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신기술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전 세계적 교육 캠페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C. 시행과 사후점검

“아동에 대한 폭력을 멈추기 위해서는 각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의 지원이 필요

76)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2005/20.

77) Under 18-Delegates' Keynote Address, in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Regional Outcome Report: East Asia and the Pacific(2005).

하다. 중국속담에 “Gu Cheung Lan Ming”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한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와 아동이 한 손이면, 어른들은 다른 한 손이다. 지역사회도 한 손이다. 정부도 한 손이다. 우리가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평화, 사랑, 화합이 있는 지역사회가 세워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Young People, 아시아태평양

115. 제안된 사항들의 시행에 대한 근본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그러나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다른 집단의 참여는 국가의 의무수행에 절대적인 지원이 된다. 이러한 참여는 유엔기구들, 국가 인권 기구를 포함하는 시민 사회 기구, 의사·간호사 연합과 같은 전문 기구, 지역사회 연합, 교육자, 부모, 그리고 아동을 포함한다.

1. 국가 및 지역적 수준

116. 국가차원의 시행은 지체 없이 곧 시행되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한 국가 계획 절차의 통합은 2007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하면 장관급으로 구심점이 임명되어야 한다. 2009년까지 아동에 대한 폭력금지 법을 마련하고 신뢰로운 국가 데이터 수집 체계 개발을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이상의 제안에 대한 자료를 아동 권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 보고서에 첨부할 것을 권고한다. 제 65차 유엔 총회에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권고한다.
117. 국제기구들은 정부가 본 제안사항들의 시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제 재정 기구들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그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정책과 활동을 검토해주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유엔 국가 팀은 아동에 대한 폭력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들을 빈곤감소 전략, 국가 평가들, 개발 원조 틀에 포함시켜야 한다.
118. 국가 인권 기구 지위 관련 규범(The Paris Principles)⁷⁸⁾에 따라 정부는 아동권리를 위한 옴부즈맨(Ombudsperson)이나 감독관의 임명을 고려해야 한다. 공중보건과 아동보호관련 분야에서 일하며,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지방의 차원에서 분명한 임무를 가

78)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vailable at <http://www.unhchr.ch/html/menu6/2/fs19.htm#annex>. These recommendations were endors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its resolution 48/134 of 20 December 1993.

지고 아동권리를 모니터하는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를 바란다. 적절한 경우, 아동을 포함한 시민들이 아동권리위반에 대한 진정, 고소사항들을 접수하고,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19. 연구개발에 대한 지역적 기관들의 기여하는데 있어, 지역 기관들은 제안사항들의 시행과 사후점검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사후점검을 위한 전반적인 틀의 주요부분으로써, 지역적 체계의 향후개발이 장려되어야 한다. 지역 인권 보호체계들도 또한 제안사항 시행 모니터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2. 국제적 수준

120. 아동 폭력을 대처하는 데에 다양한 분야들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유엔총회는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의 예방과 제거를 촉진시키고, 국제적·지역적 통합을 고무하며, 현 제안사항들을 사후 점검할 수 있는 고위급의 글로벌 애드보킷의 역할을 하는 아동폭력 특별대표의 임명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
121. 특별대표는 각각의 국제, 지역, 국가 포럼에서 본 연구의 제안사항들을 알리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제 65차 총회에 제출될 제안사항들의 시행에 대한 보고서의 작성을 진행해야 한다.
122. 특별대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해야 하지만, 아동권리위원회, 아동과 무력분쟁을 위한 사무총장특별대표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 아동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특별 보고관, 여성폭력에 대한 특별 보고관, 특히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인신매매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대표는 지역 인권 보호 제도와 그 외 모든 지역 및 국가들의 사후점검을 위한 노력에 협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23. 특별대표는 일차적으로 4년간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중시하고 있는 기관간의 성공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비정부기구와 아동들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유엔 아동폭력 기관간 그룹(UN Inter-agency group on Violence against Children)도 사후점검을 지원하기를 요청한다.

아동에 대한 모든 신체적 체벌 금지¹⁾

모든 신체적 체벌 금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될 때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체벌과 관련하여 무엇을 금지할 것인가는
부모와 가족의 삶에서 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책자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묻는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제공하고
체벌금지에 대한 이유와
그것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들을 없애줄 것이다.
또한 이 질문과 대답들은
아동이 읽기 쉽도록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1) ‘아동에 대한 모든 신체적 체벌 금지’에 대한 보고서는 2004년 1월에 시작된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아동체벌 근절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Save the children sweden이 함께 발간한 자료이다. 이 보고서는 모든 신체적 체벌 금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될 때, 가장 빈번하게 묻는 질문들에 답을 제공하고, 신체적 체벌금지 이유와 그것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들을 없애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질문과 대답들은 또한 아동이 읽기 쉽도록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를 가진다.

모든 신체적 체벌 금지에 대한 이유

신체적 체벌은 정말로 해롭나요?

네, 물론입니다! 체벌은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해를 끼칩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다는 것은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아동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신체적 체벌이 아동의 존재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정서적 고통을 수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종종 간과합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12조에는 ‘아동은 그들에게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를 통해, 아동들이 신체적 체벌로 인한 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얼마나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 발간된 『UN 아동 폭력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서는 아동에게 행해지는 신체적 체벌 문제의 특성과 범주에 대해 최초로 포괄적이고 세계적인 연구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이자 이 보고서를 집필한 Paulo Sergio Pinheiro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연구 과정 동안, 아동은 시종일관 모든 폭력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다. 어른들의 용인과 승인 하에서 이루어지던 폭력은 아동에게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피해를 가져왔다. 정부는 실제로 이 문제의 시급성을 받아들이 필요가 있다. 아동은 오랜 시간 동안 어른들에 의한 폭력으로 고통 받아왔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동에게 행해지는 폭력의 규모와 영향이 점차 이슈화 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더 이상 아동들의 침해되는 권리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릴 수 만은 없는 시점이 되었다.”

신체적 체벌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고, 신체적 체벌이 장단기적인 잠재적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개인과 사회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2년 발행되었던 88편의 메타 분석연구는 신체적 학대의 위험에 대해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부모에 의한 신체적 학대와 그것이 아동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 아동의 폭력성, 반사회적 행동, 낮은 수준의 도덕적 내면화, 그리고 낮은 수준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사랑의 매를 사용할 때 가해지는 힘에 관하여 부모들을 대상으로 물었을 때, 그들 중 2/5정도가 의도한 것과 다른 강도의 힘을 사용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런던 대학의 심리학 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서는, 힘을 서로 주고받는 상황일 때 사용되는 힘의 강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

게 되고, 이 때 가해지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것이 부정확해지는 뇌의 활동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폭력을 금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성이나 성인을 때렸을 때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이것은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 차별 금지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나요?

여성 폭력, 인종차별과 같은 다른 이슈들처럼 차별 또한 정책가들은 공공의 의견을 따라 움직이기 보다는 먼저 이끌어야 하지요. 중요한 점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들도 어른과 같이 절대적 인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체적 차별 금지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낸 나라는 대부분 대중의 의견에 앞서 실행했어요. 그러면 대중들은 재빨리 그러한 변화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지요. 아마 몇 년 후, 우리는 아동 차별을 법적으로 용인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결과이지요. 사실 여론조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질문들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진술되었는가, 답변자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지요. 만약 사람들이 차별금지과 그 목적, 그리고 아동보호에 존재하는 불평등성에 대하여 전부 알고 있다면, 차별 금지에 매우 지지적일 거예요. 똑같은 여론조사가 다른 질문방식으로 제공되었을 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인 사례도 이미 있지요.

어렸을 때 맞았던 것은 나에게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신체적 차별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이 당신을 때리지 않았다면, 잘 자라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부모님께 맞거나 창피를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지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 겪었던 차별이 전혀 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신체적 차별을 하는 것으로 아

등을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만큼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이 어렸을 적 경험했던 고통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때리는 부모들은 보통 자신이 아동일 때 그렇게 맞았기 때문에, 훈육이 필요한 순간에 체벌을 사용하기 시작하지요. 연구결과에서 보면, 부모들이 체벌 후 종종 죄책감을 느낀다고 나오지만, 부모들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여전히 자녀를 때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체벌에 대해 언급하며 이전 세대를 비난하는 것은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그 세대의 사람들은 또 그 시대의 문화적 흐름에 맞게 행동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에 대한 비판이 두려워 현재의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시대는 변했고, 사회는 움직이고 있어요. 아동을 어른과 똑 같은 권리의 주체로 재인식하는 것은 사회에서 여성 폭력을 없애고자 하는 움직임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아동 폭력을 막고자 하는 사회적 수용과 법제화에 대한 실질적 행동이 요구되지요.

몇몇 사람들은 “나는 아동기 때 맞았지만 잘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종류의 부정적 경험을 참으면서 ‘잘 자란’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들의 경험이 ‘괜찮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어린 시절 경험을 다루고, 그들 삶이 ‘괜찮았다’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일 뿐이지요.

저는 아동, 청소년들이 신체적 체벌을 옹호 하는 것을 종종 들었어요.

그들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아동들이 “신체적 체벌은 때로 긍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신체적 체벌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체벌을 통해 부모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이지요. 물론 우리는 이런 아동청소년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른들은 아동의 말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동이 신체적 체벌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신체적 체벌은 정말, 상처를 줍니다”라고 말한 3쪽을 보세요.) 아동들이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고 좋다고 이야기 할 때는 신체적 폭력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문화적 규준에 맞춰 사회화 되어가고, 그들의 부모님의 행동과 태도가 답습되어가며, 그들의 경험을 합리화시켜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지요.

아동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 받을 수 있는 양도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학대와 착취,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평등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요. 이러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동에게 그들의 권리를 스스로 알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

를 존중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와 다른 성인들의 책임이지요.

부모는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녀를 키울 권리를 가집니다. 그렇기에 부모들은 학대와 같은 극도의 사례에 한해서만 비난 받아야 하지 않은가요?

사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스스로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권리를 가진 것처럼, 아동 또한 똑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아동 권리의 문제가 가정에서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아동들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금지를 주장하는 것처럼 가족의 삶에 개인이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동을 보호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동최선의 이익을 기초로 하여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어요(제 18조항). 어떤 사람들은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자녀를 신체적으로 체벌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동 최선의 이익을 반영한 일이라고 주장해요. 그렇지만 그에 대해 아동권리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 했지요.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원칙의 해석은 일관적으로 모든 협약에서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의 의무화가 포함되고, 아동의 견해가 힘을 가지는 것이 충족되어야 한다. 실제로 다른 종류의 잔혹하고 품위를 저하시키는 벌의 형태를 포함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신체의 소중함을 침해하는 신체적 체벌은 어떠한 것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아이를 때려 학대하는 것과 사랑의 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너무 구분 없이 모두 신체적 체벌로 여겨 금지하는 것은 아닌가요?

아이를 때려 학대하는 것은 사랑의 매를 때리는 것보다 신체적으로 더욱 큰 해를 끼칠 거예요. 그렇지만 둘 다 폭력의 연속선상에 있고 둘 다 아동의 권리, 즉 존중받고 신체적으로 고결할 권리를 위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이나 일반성인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폭력도

인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폭력수준이라는 기초선도 만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것이 아동에게만 적용되어야만 하나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사이에 연결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고, 그 위험성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해요. 사랑의 매는 '최악의 모순적인 말'입니다. 이 단어는 나쁘지 않은 용어처럼 보임으로써 폭력을 암묵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속임수일 뿐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가볍게 몇 대 매를 때리는 것과 아동학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반발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폭력을 사용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사용된 폭력의 강도에만 집중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폭력의 심각성에 상관없이 폭력 그 자체가 '아동의 신체가 보존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체벌은 법 아래에서 학대와 보호,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아동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법 제정자들과 정부는 전통적으로 '아동학대'와 '신체적 체벌'을 분리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대는 신체적 체벌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을 벌하고 통제하기 위해 아동을 때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성 폭력의 경우를 보면, 그러한 위협은 어떤 것도 수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동의 경우에만 법으로 용인되는 폭력과 그렇지 않은 학대 사이에 임의적인 구별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아동 학대와 신체적 체벌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체벌을 전적으로 금지하기 보다 안전한 체벌을 정의하는 것은 어떤가요?

때리는 것, 맞는 것에 있어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매는 아동의 신체보존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경시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가벼운 신체적 체벌이 학대상황의 심각한 폭력을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힘의 사용 시 그 정도에 대해 개인적으로 판단이 부정확해지는 경향성에 대해서도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안전한 체벌이라는 것 자체를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3쪽)

어떤 나라에서는 아동을 때리는 방법, 나이, 몸의 부분, 사용되는 도구 등에서 수용될 수 있는 정도를 정의하고자 하였지요.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실행이에요. 여성이나 다른 성인, 아니면 또 다른 인구 집단을 학대하는 방법에서 수용적인 방법에 대한 정의를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동들 또한 모든 인간과 동등하게 폭력으로부터 마땅히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동들은 일반적

으로 성인에 비해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보호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집니다.

제 종교는 제가 신체적 차별을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저에게 차별을 멈추게 하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종교적 자유는 인권에 위배되면서 지켜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아동 권리 위원회는 분명히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기반해서 신체적 차별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해요. 차별사용의 정당성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차별의 필요성과 의무를 제공하는 종교교리의 해석도 함께 제시하지요. 종교적 신앙의 자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보장됩니다(Art. 18). 그렇지만 종교나 신앙을 행사하는 것은 타인의 존엄성과 신체에 대한 존중과 반드시 공존되어야 해요. 따라서 개인의 종교나 신앙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적인 제한을 받게 될 수도 있지요.”

지나친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아동을 때리거나 다른 형태의 심각한 신체적 차별을 가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최근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정을 포함해 모든 신체적 차별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평화를 위한 세계종교인의 모임이 일본 교토에서 열렸고, 800명이 넘는 종교지도자들이 “아동폭력에 반대하는 종교적 합의문”을 채택하였지요. 그 협약문은 아동권리협약에 부합되면서 동시에 신체적 차별을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는 뜻을 함께 합니다. 이상의 존경 받는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해 신체적 차별을 포함한 모든 폭력을 금지하고 아동 폭력에 대해 아동 권리 협약 기준에서 명시하는 것에 맞게 법적 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를 재촉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왜 이것을 법적인 문제로 이야기 하나요? 신체적 차별을 막을 수 있도록 부모를 교육하는 수준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떤가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 부모교육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워요. 우리에게는 “법이 허락해야만 무조건 괜찮다.”는 가정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교육은 법적으로 지지 받을 때 더욱 효과적이게 됩니다.

모든 신체적 체벌과 잔인하고 모욕적인 체벌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과 강제적 금지 둘 다 필요해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은 아동들이 가정을 비롯해 어느 곳에서든 최소한 성인과 똑같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해요. 법은 그 자체로 강력한 교육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 체벌을 금지하는 법 개정 또한 대중과 부모를 교육하는 것과 연결될 필요성이 있어요. 체벌 금지는 부모들이 자녀양육에서 좀 더 긍정적인 방법을 찾도록 동기화 시키고, 전문가와 정책가, 그리고 대중매체들이 교육을 제공하고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선생님들과 다른 학교 관계자들도 자원부족과 혼란스러움 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신체적 체벌 금지를 주장하기 이전에, 그러한 조건들이 개선될 때까지 그들을 좀 기다려주고,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러한 논쟁을 한다는 것은 신체적 체벌이 아동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보다 어른들이 울컥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배출한 결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가정을 비롯하여 많은 시설들에서, 성인들이 아동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더 많은 자원과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인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아동에게 폭발해 부여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요. 여성을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해 남성들의 상태변화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동들을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인들의 생각과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동을 때리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화가 나서 아동을 때리게 되는 성인들은 자주 죄책감을 느끼고, 침착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의 자녀양육 방식에 화를 내고 있음을 발견하고 좌절하게 되지요. 신체적 체벌을 금지하고 대신 긍정적인 훈육을 통해 아동을 지도하는 가정과 시설에서의 삶은 스트레스가 훨씬 더 적습니다.

분쟁영향지역에서 아동과 함께 일하는 성인들은, 부모와 교사를 포함해서 모두 아동들과 똑같이 폭력과 착취의 희생자이지요. 그들은 아동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아동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렇게 아동권리 침해가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성인이 되어 그들 고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지요. 모든 사람들이 법 아래서 동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신체보존을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지

고 있고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아동들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백인사회나 유럽 사회 중심의 문제입니다. 신체적 차별은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이자 아동 양육의 전통방식이에요.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차별 아닌가요?

아동을 때리는 것이 문화적인 자랑거리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여하튼 역사적으로 아동을 때리는 것이 많은 부분 노예, 식민지배 그리고 선교사의 가르침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했어요. 아동에게 신체적인 차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문화권은 매우 적고, 수렵 채집 사회 같은 곳밖에 없는데, 그런 가장 '자연에 가까운' 사람들의 사회는 이제 도시화 영향으로 급속히 사라져버렸지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인간의 권리는 보편적이고 전 세계 아동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에서나 전통적으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문화권은 신체적 차별을 근절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지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모든 아동이 인종, 문화, 전통과 종교의 차별 없이,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신체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 학교 폭력이 불법이라고 판결되고 있습니다.

아동을 때리는 행위를 멈추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정책가들을 포함한 성인들이 이런 이슈가 쉽다고 생각했다면, 매우 오래 전에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동들도 어른과 똑같이 법적으로 동등하게 보호받고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보존에 대해 존중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아동이 매우 작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인들보다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쉬워요.

그래서 성인들은 여전히 훈육이나 통제라는 이름하에 아동들을 때리고 해를 가하는 것을 권리라고 인지하고, 포기하기 어려워하지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i) 개인적인 경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맞았어요. 또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때렸지요. 우리들 중 어떤 사람도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가 받아왔던 양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정책가들과 의견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아동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체벌을 인간의 권리와 동등한 기초적인 이슈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이것이 비난 받을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사회기대에 부응하여 행동해왔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아동들과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할 시기가 되었어요.

신체적 체벌금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아동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즉, 모욕적이고, 잔인하고, 또는 인격을 깎아 내리는 체벌의 모든 형태에서 아동을 보호해주는 것이지요

(ii) 성인들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종종 아동을 때립니다. 많은 성인들이 아동을 이성적으로 훈육하기 보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때리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자주 거듭되면서, 아이들을 때리는 횟수가 늘어나고, 이는 자연스럽게 문제 행동을 다루는 방법으로 자동화 되지요. 자동화 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변화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정부는 비폭력적이고 긍정적인 자녀양육 방법에 대해 대중을 교육시키고 인식증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는 자녀를 때릴 필요가 없어지고, 문제 행동에 대처하는 방법의 성격들도 달라질 수 있지요.

(iii) 대체 행동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원인이지요. 법 개정은 부모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아동과 사회가 일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아동과 성인이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체적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기 전에, 성인들이 자녀를 때리지 않으면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폭력근절을 법제화시키기 전에 남자들이 여자를 적절하게 대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이지요.

모든 신체적 체벌금지의 영향력

만약 부모들이 그들 자녀를 체벌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 존중하지 못하는 응석받이로 무례하게 자라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훈육은 체벌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훈육은 강제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존중과 관용, 이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자랄 때 성인, 특히 그들의 부모에게 자기 통제가 성숙되도록 안내 되고 지지 받으며 부모에게 완전하게 의존하며 삶을 시작하지요. 신체적 체벌은 아동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어떤 가르침도 주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 나쁜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나 갈등의 해결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수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가르치는 격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아동을 때리는 것은 자녀를 혼란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아동들은 다른 친구들을 함부로 때릴 수 없고, 어른들은 또 다른 어른을 함부로 때릴 수 없는데, 자신보다 더 크거나 강한 어른들이 작고 약한 아동을 때리는 것은 괜찮다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즉 이것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리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틀린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아동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운답니다.

존경은 공포에 대한 혼란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나타나는 좋은 행동은 아동이 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른에 대한 존경 때문에 보이는 행동은 아니에요. 아동은 그 사람이나 사물의 진정한 가치를 느꼈을 때, 진정한 존경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때렸을 때, 아동은 오직 벌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배우고 폭력이 논쟁을 다루기 위한 수용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을 배울 뿐입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다른 아동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과 보존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자녀를 또한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마음을 배우게 될 거예요.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자녀를 훈육할 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면서 문제나 갈등 해결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신체적 체벌과 다른 잔혹하고 모욕적인 형태의 체벌은 훈육의 긍정적 형식을 대신할 수 없어요. 아동들을 망치는 이러한 체벌 대신, 자녀가 자기 행동의 결과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정부는 긍정적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책임을 가집니다. 교육 프로그램들을 번역하고 적용 '폭력 없는 긍정적인 양육 및 교육 증진을 위해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 신체적 체벌이 금지된다면 정서적 학대나 비난 또는 감금과 같은

다른 더 안 좋은 방법들이 사용되지 않을까요?

아동은 신체적 체벌뿐 만 아니라 모욕적이고 잔인한 처벌과 같은 다른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법 개정은 아동에게 비폭력적인 관계증진과 인식증진과 함께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가능한 최상의 상태에서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지요. 그러한 부모가 자녀를 때린다면, 자녀의 긍정적인 삶의 시작에 좋은 감정을 갖기 어렵고, 대개 자신들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좋아합니다. 긍정적인 훈육은 그런 부모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폭력 없이 서로 존경하고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아동을 '그들 스스로의 삶에 권리를 가진 존재로 간주하고, 아동을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체벌을 범죄로 여긴다면, 수천 명의 부모가 체포되고 그보다 더 많은 아동들이 주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모든 신체적인 체벌을 금지하는 법의 중요점은 부모를 감옥에 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동 권리를 실행하고, 아동들과 비폭력적이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를 움직인다는 의미이지요. 신체적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에서 부모의 구속율 증가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신체적 체벌 금지는 아동을 위한 국가의 인권의무 수행을 달성시켜줍니다. 체벌금지 법제화 작업은 교육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해요. 각 가정에서 자녀를 때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수용될 수 없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해주시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체벌금지 법제화 이행은 아동최우선의 원칙에 가장 중시한다는 사실을, 경찰을 비롯해 지방 공공기관의 권위자들까지 아동보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지도해야 합니다. 유해한 것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체포나 다른 공적 개입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한 절차는 아동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동 권리 위원회는 일반 논평 8에서 부모들에 의한 신체적 체벌 금지의 맥락으로 체포에 대한 이슈를 설명하고 있어요.

"가정을 포함해 모욕으로부터 아동과 성인 모두를 동등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은, 부모들에 의해 아동이 신체적 체벌을 받은 사례 모두를 부모체포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Minimis(라틴어:

약 최소한의 물건)의 원리 - 법은 사소한 문제를 모두 고려하지는 않는다 - 처럼, 즉 성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소한 폭력이 법정에 오는 것이 매우 예외적인 경우인 것처럼, 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정부는 효과적인 신고체계와 위탁시설의 발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아동 폭력에 대한 모든 보고서는 정확하게 조사되어야 하고, 의미 있는 상해로부터 아동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상해제공에 대한 형벌이 아닌 교육적, 지지적 개입을 통해 부모들의 잔혹한 신체적 폭력 사용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예방적 목적입니다.”

“아동의 의존적인 위치와 가족 관계에서의 특별한 친밀함을 고려할 때, 부모체포에 대한 결정이나 가족 내에서 행해지는 형식적인 법적 절차와 개입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체포하는 것은 그들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부합하는 사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의 견해는 체포와 다른 형식적 법적 절차가 개입될 때는, 예를 들면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거나, 범인과 격리하는 것은 아동에게 가장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고 특별한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때 필요하다고 간주되었을 때 가능한 절차여야 합니다. 이 때 아동의 나이나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견해 반영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자해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 때리는 것도 옳지 않은가요?

그것은 무의미해요. 때를 때리는 것은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자녀가 자해하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충고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물론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 특히 영아나 유아일 경우 거의 모든 시간 신체적인 행동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양육의 자연적인 부분일 뿐이지요. 만약 아동이 불을 향해 기어가거나 위험한 길로 뛰어든다면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멈추게 하려고 그들을 붙잡거나, 들어올리거나, 위험에 대해 말해주거나 보여주는 행동들을 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신체적인 행동이지요. 그렇지만 그들을 때려서 고통을 주는 행위는 자녀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부모가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켜주겠다는 메시지의 의미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아동 권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 양육과 아동을 돌보는 것, 특히 아기와 어린 아동의 경우 종종 신체적인 행동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이 요구된다. 이것은 형벌적이고 고의적인 힘의 사용, 즉 해를 끼치거나 굴욕감을 주거나 불편감을 주는 힘의 사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신체적인 행동과 형벌적인 폭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것을 아동에게 하는 행동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것과 그들을 고의적으로 다치게 하는 것, 벌을 주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모든 국가법은 형벌적인 성격이 아닌 보호의 목적을 띤 힘의 사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또는 함축적으로 용인하고 있어요. 체벌에 힘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성격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인권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2001 ~ 2008)

1. 정책·법령 등에 대한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2002. 10. 28.자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내용관련 직권 수정 권고
교육부의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개정 내용 중 학생들의 인권존중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일부 부분에 대해 교과서 내용을 수정 협의할 것을 권고한 사례

② 2003. 5. 12.자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개선 권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에 대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원인사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 사례

③ 2004. 5. 27.자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방지 관련 권고

④ 2005. 3. 25.자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기장 검사관행에 대해 그 개선을 권고한 사례

- ⑤ 2005. 6. 27.자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현행 학생 두발제한 관련 제도에 대해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그 개선을 권고한 사례
- ⑥ 2006. 4. 10.자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의견표명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사례
- ⑦ 2006. 10. 9.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 방안 권고
- ⑧ 2007. 7. 23.자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
 주민등록말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제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 시행을 권고
- ⑨ 2007. 12. 13.자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 ⑩ 2008. 1. 14.자 국립중앙도서관 입관제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의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국립중앙도서관 입관제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 ⑪ 2002. 9. 9.자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 의견
- ⑫ 2003. 3. 10.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안) 의견
 「소년법」 제32조 제5항 및 「소년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소년 보호의 취지를 감안하고, 성인이 아닌 소년의 범죄 등에 대하여는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에 그 조회와 회보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소년의 인권보호에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13 2004. 1. 26.자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의견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은 아동인권 및 보호자 등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폐기 권고

14 2004. 8. 23.자 민법중개정법률안 의견

민법중개정법률안의 내용중 가족의 범위, 자녀의 성과 본 변경제도, 친양자제도에 대해 의견 표명

15 2004. 9. 6.자 실종아동찾기지원법안 의견

실종아동찾기지원법안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의 개선 및 보완에 대한 의견 표명

16 2004. 5. 12.자 소년원법시행령개정령(안) 의견

[1] 분류수용의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지 말고 개인의 체질적 특성과 과학적 기준을 좀 더 심화시켜 제시하여야 하고, 감호장비의 사용에 대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 최소침해의 원칙의 적용과 요건·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2] 징계자에게 면회, 통신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상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면회의 규제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37조 제1호 및 제2호는 원장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수정 내지 삭제가 필요하고,

[3] 퇴원·가퇴원의 요건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내용을 예시하는 것이 타당하고, 자치회 및 휴양에 관한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사례

17 2004. 10. 11.자 소년원법시행규칙제정(안) 의견

[1] 소년원법시행규칙제정안 제12조 제7호를 삭제하여 다른 보호소년의 범범·규율위반행위를 직원에게 알릴 것인지 여부를 보호 소년 스스로의 가치판단에 맡길 것과

[2] 퇴원, 가퇴원은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근거 규정인 소년원법 제43조, 제44조에 퇴원·가퇴원의 대략적인 내용을 예시할 것과

[3] 제정안 제87조 제3항을 수정하여 수용기간 또는 수용일수 산정에 있어서 수용당일

을 산입함은 물론 출원일 또한 산입할 것을 권고한 사례

☞ 2004. 10. 11.자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의견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및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정보인권의 충분한 보장을 위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견 표명

☞ 2006. 10. 13.자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환경영향평가항목 조정에서 별표2 환경영향평가항목(제5조 관련)의 ‘교육’ 항목을 존속시키고, 학습환경 보호 차원에서 ‘교육’ 항목의 주요 평가 내용 및 작성지침을 보완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 표명

☞ 2005. 10. 24.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개선 의견

청소년의 지나친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2005. 7. 18. 발의)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및 헌법 제75조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과 헌법 제11조 평등권 보장에 반할 수 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5조 및 제31조에도 부합하지 못하므로 국회의장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례

☞ 2007. 7. 24.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청소년 인권에 관한 포괄적 조사구제 권한을 부여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18조6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

☞ 2002. 9. 24.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의견

☞ 2005. 5. 28.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의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의 내용중, 제20조의2의 세부정보등록제도

및 세부정보제공제도, 제21조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등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사례

㉔ 2007. 1. 8.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의견

㉕ 2007. 9. 20.자 소년법 개정안의 적용연령 인하에 대한 의견
소년법개정안중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아동의 인권보호에 반하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

㉖ 2003. 12. 8.자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가입 권고

㉗ 2005. 4. 11.자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의 유보철회 및 이행에 대한 권고

㉘ 2006. 12. 26.자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 인권침해 결정례

㉑ 2003. 5. 21.자 03진인26 결정 [학교내 장애인이동시설 미설치]
학교내 ‘장애인등’을 위한 승강기등 편의시설 미설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㉒ 2004. 6. 4.자 03진인5950 결정 [비밀전학생 신상정보 보호]
가정폭력피해자 아동이 가해자에게 신분 누출 염려 없이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 사례

③ 2005. 9. 25.자 04진인1497, 03진인5870(병합) 결정 [‘0교시수업’, 보충·자율학습 등]
2004. 2. 17.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 발표 이후 전국의 많은 중, 고등학교
에서 ‘0교시 수업’,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운영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의 직접적인 행위
로 인한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려워 기각한 사례

④ 2005. 8. 31.자 05진인1055 결정 [학교급식 관련 지문날인]
각급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학생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
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⑤ 2006. 5. 18.자 06진인136 결정 [퇴학 처분]
퇴학처분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학생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⑥ 2006. 6. 28.자 06진인1030 결정 [부당 퇴학]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해당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충분히 허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⑦ 2007. 1. 15.자 06진인3067 결정 [부당 퇴학처분]
퇴학처분을 재심의할 것과 향후 학생 퇴학처분시 학교생활규정에 정해진 적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한 사례

⑧ 2008. 4. 3. 자 07진인2330 결정 [퇴학처분]
피진정인의 퇴학예정 및 전학권고 조치는 법령을 위반한 자의적인 조치로서 학생의 학
교를 선택할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⑨ 2005. 12. 26.자 05진인3073 결정 [직권남용]
학생이 거짓말 한 것에 대해 시인 및 기록을 요구하고, 방송실 문을 닫고 카메라를 설치

하여 거짓말 시인 사항을 촬영하려고 한 행위는 교육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며, 교실에서 학생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토록 하는 등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9조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㉑ 2008. 2.28. 자 06진인1951 결정 [과도한 체벌]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체벌(뺨때리기 등)은 학생지도 방법과 교육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서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㉒ 2007. 12. 14.자 07진인2659·2660·2793 (병합) 결정 [폭행 등 부적절한 처우]

아동들에 대해 폭언, 폭력, 체벌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나아가 일부 내용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 등을 한 사례

㉓ 2007. 1. 15.자 06진인943 결정 [학생간 폭행 방치]

피해자가 6학년 학교생활 동안 수시로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특히 가해학생들이 경찰에 고소되어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 입원 및 4주 진단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피진정인 학교측 및 지도·감독기관인 관할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업무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헌법 제10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㉔ 2007. 2. 13.자 06진인495 결정 [운동선수 이적불허]

이적 동의서 발급후 12개월 동안 선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중고등학교농구연맹지도자 및 선수등록규정은 헌법 제10조 침해이므로 개정을 권고한 사례

㉕ 2007. 9. 7.자 07진인898 결정 [야구선수 이적동의 불허]

초등학교 야구선수의 타시도 진출시 향후 2년간 시합출전이 불가능하도록 피진정인인 ○○초등학교 교장이 야구선수 이적동의를 불허한 것은 헌법 제10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15 2008. 2. 13. 자 06진인1254 결정 [고교투수 혹사]

피진정인(대한야구협회장)에게 고등학교 야구 환경 및 여건을 볼 때 수많은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이 무리한 투구를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고등학교 야구투수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혹사행위는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충분하므로 협회가 이 문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16 2008. 11. 26.자 08진인2598 결정 [전학 강요 등]

운동실력 부족 등을 이유로 운동선수의 전학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17 2008. 2. 28.자 07진인1146 결정 [학교 안 학생의 표현의 자유]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 등을 교내에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술서를 요구하고 선도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18 2008. 9. 25.자 07진인4150 결정 [학생에 대한 집회 해산 등]

학내 집회 해산, 집체교육 실시 및 진술서 징구 등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19 2008. 9. 25.자 07진인4677 결정 [부당한 학교폭력 조사]

폭행가해자를 찾기 위해 사진 제공을 부탁받은 즉시 촬영을 해야 할만한 긴박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개별동의 없이 즉시 학생을 임의로 촬영한 것은 헌법 제10조 초상권(촬영거부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20 2004. 8. 16.자 04진인1581 결정 [사증발급 불처분]

국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자녀까지 출산한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불처분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㉑ 2005. 2. 28.자 05진인03 결정 [사증인정서 미발급]

친척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진정한 자녀의 사증인정신청서의 발급을 불허한 것은 아동 및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권고한 사례

㉒ 2004. 12. 27.자 04진인37 결정 [성폭력수사과정]

[1]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 누설 및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을 위법이라 판단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의뢰한 사례

[2]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 등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경찰청장에게 관련자들의 징계 등을 권고한 사례

[3] 성폭력사건 수사 관련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장에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㉓ 2004. 10. 11.자 04진인1589 결정 [수사권 남용]

장애인 청소년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

㉔ 2005. 6. 21.자 04진인3707 결정 [적법절차위반 등]

[1] 경찰관이 청소년 절도혐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면서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한 것이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청소년에게 경찰관 정보원의 역할을 강요한 것이 신체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의 침해인지 여부(적극)

㉕ 2005. 11. 28.자 05진인774 결정 [미성년 피의자 조사]

경찰조사 후 자살한 미성년자의 사건에서 미성년 피의자 조사에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 등을 침해함을 이유로 권고한 사례

㉖ 2008. 7. 3.자 08진인1739 결정 [집회의 자유 침해 등]

학교에서 수업중인 피해자를 미성년자인 피해자 부모의 동의나 사전에 최소한의 알림

도 없이 불리내어 조사를 하고 피해자 부친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내부 정보보고서에 사용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㉓ 2008. 2. 28.자 07진인4343 결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지도·감독]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보호 관찰함에 있어서 필요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㉔ 2008. 7. 17.자 08진인762 결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장구 사용]

구인장 및 긴급구인서를 발부받지 아니하고 보호관찰대상자 대하여 보안장구(수갑과 포승)를 사용하고, 조사과정에서도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것은 헌법 제12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㉕ 2005. 10. 10.자 05진인 2212 결정[가족만남의 집 이용신청 거부]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사범인 진정인이 ‘가족만남의 집’ 이용신청에 대해서 교도소 측이 장기를 기준으로 불허한 행위가 행복추구권의 침해인지 여부(적극)

3. 차별 결정례

㉖ 2002. 7. 31.자 01진차3 결정 [크레파스색상의 피부색 차별]

[1] 한국산업규격(KS)상 살색 색명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국제화·세계화로 국가 및 인종간 교류가 활발한 현 상황에서 특정한 인종의 피부색깔만을 살색으로 규정하는 것이 산업표준화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소극)

[3] 민간기업인이 특정 색깔의 제품에 살색이라는 표기를 부착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② 2002. 6. 18. 자 02진차22결정 [대학신입생모집과정상 나이차별행위]

대학의 입학시험에서 동점자처리기준으로 연소자 우선원칙을 채택하여 연장자를 불합격처리한 것이 입학시험 지원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③ 2003. 5. 7.자 02진차70 결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보호자 정의의 차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보호자”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관행의 개선을 권고한 사례

④ 2003. 3. 31.자 02진차80, 130 (병합) 결정 [성적 지향에 의한 행복추구권 등 침해]

[1]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동성애를 표현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제7조 관련)은 헌법상 평등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규정 중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권고한 사례

⑤ 2004. 2. 16.자 03진차27 결정 [기타사유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1] 대학입학전형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장애종류 가운데 특정장애 종류에 대하여서만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부여한 것이 다른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를 특별전형함에 있어서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관행의 시정을 권고한 사례

⑥ 2003. 9. 15.자 03진차127 결정 [비학생청소년 차별]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의 할인에서 학생과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구별하는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인지 여부(적극)

㉓ 2006. 8. 29.자 04진차386 결정 [화교학교 학력 불인정 차별]

화교학교를 다니는 화교학생들이 한국 학교로 전·입학을 하려면 반드시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 등,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㉔ 2005. 8. 22.자 05진차37 결정 [소년보호처분전력과 관련한 사생활 자유 침해]

지방검찰청이 청원경찰 특별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고등검찰청에 회보한 것이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적극)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㉕ 2006. 10. 6.자 05진차100, 236, 534, 06진차29, 171 (병합) 결정 [대학교의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

대학입학전형 중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검정고시 출신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신입생 선발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㉖ 2005. 6. 27.자 05진차204·145·119(병합) 결정 [두발제한]

[1] 두발단속 시 규정을 어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강제이발을 한 것이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중학교 여학생에 대하여 머리를 묶지 못하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교육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㉗ 2005. 9. 28.자 05진차250 결정[부당한 퇴학처분]

고등학교 학생이 두발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배포하였다고 하여 학칙위반으로 퇴학 처분 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㉘ 2005. 11. 7.자 05진차355 결정 [이혼여성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수급요건]

이혼한 여성공무원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자녀가 동일호적에 있거나 주

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의 조항이 이혼한 여성공무원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인지 여부(적극)

13 2005. 9. 28.자 05진차517 결정 [교육기관의 성차별]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부여하고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14 2006. 5. 29.자 05진차523 결정 [성별을 이유로 한 기타 차별]

초등학교들이 학생의 어머니들을 급식당번으로 배정한 후 불참 시 돈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저학년 급식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5 2006. 2. 27.자 05진차540 결정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여자축구선수가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실업여자축구팀으로 진출하는 것을 불허하는 「선수선발세칙」의 규정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6 2006. 7. 18.자 06직차6 결정 [성별 및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신입생 모집 시 차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모집 시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육군본부 간호장교 채용 조건보다 더 엄격한 키, 몸무게, 내반슬에 대한 제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적극)

17 2006. 5. 29.자 06진차37 결정 [성별 및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신입생 모집 시 차별]

○○대학교총장에게,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수를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적극)

18 2006. 12. 11.자 06진차96, 107(병합) 결정 [종교 차별]

검정고시를 평일이 아닌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을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9 2006. 12. 10.자 06진차411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 차별]
피진정인에게 ○○학교에 등하교하는 장애학생들의 교육학습권이 실효성있게 보장되도록 현재의 통학버스 운송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

20 2007. 3. 28.자 06진차418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 차별]
【1】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환경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피진정인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통합교육 및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1 2006. 11. 28.자 06진차449 결정 [학급 회장 자격 제한 차별]
중학교 학급 회장의 자격을 학업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로 제한한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2 2008. 5. 19.자 07진차459 결정 [성적우수자반 운영으로 인한 차별]
고등학교에서 특정과목의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상시적으로 성적 우수자반을 편성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3 2008. 5. 19. 07진차1031 결정 [인재숙 운영으로 인한 교육기회 차별]
공립기숙학원생을 특정과목의 학업성적을 선발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4 2008. 1. 28.자 08진차13 결정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독실 운영]
정독실 입실자격을 성적우수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5 2008. 5. 2.자 08진차116·117(병합) 결정 [특수학급 설치 거부에 의한 차별]
특수학급설치를 거부하거나 연기하는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6 2008. 8. 25.자 08진차158 결정 [성적을 기준한 자율학습 전용실 운영]
자율학습전용실에 성적우수자만 입실하게 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7 2008. 11. 10.자 08진차727 결정 [정학 이력을 이유로 한 교육기관 이용 차별]
정학 이력을 이유로 전입학을 불허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규칙"(베이징 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8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에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 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 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제11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 협정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 (b)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

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 (a)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b)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 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c)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 (d)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e)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

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

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 (a)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b)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c)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d)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아동의 타국 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 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

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받을 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 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 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b)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 (c)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 (d)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 (e)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 (f)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자력과 주변 사정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b)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c)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d)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e)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밖의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 (b)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 (c)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b)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c)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b)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 (c)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d)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

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 i.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 ii.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 iii.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iv.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 v.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 vi.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 vii.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 (a)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 (b)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 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a) 당사국의 법;
- (b)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 2 부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1.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 이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 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선거 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약 당사국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a)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 (b)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b)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 (a)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 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b)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 (c)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 (d)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 3 부

제4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부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5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52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노력에 관하여 존재하는 광범위한 성원을 보여주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에 고무되고,

아동의 권리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며, 또한 아동의 상황에 대한 구분 없이 지속적인 개선은 물론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에서 아동의 발달과 교육을 요구하고 있음을 재확인 하고,

무력분쟁이 아동에 미치는 유해하고 광범한 영향과 이것이 지속 가능한 평화, 안전 및 발전에 대하여 갖는 장기적인 결과에 우려를 하며,

무력분쟁 상황에서 아동을 목표로 삼는 행위, 그리고 학교 및 병원과 같이 일반적으로 아동이 많이 존재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국제법상 보호되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비난하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채택, 그리고 특히 15세 미만의 아동을 징집하거나 소집하는 행위 또는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분쟁시 아동을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용하는 행위가 전쟁범죄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하고,

따라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들의 실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은 무력분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에서 그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군대의 징집 가능 연령 및 이들의 적대행위 참가연령을 높이는 협약의 선택의정서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동에 관한 모든 행동의 제1차적 고려사항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1995년 12월의 제26차 국제적십자사 회의가 무엇보다도 분쟁당사자들이 18세 미만의 아동이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음을 주목하고,

1999년 6월 특히 무력분쟁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아동의 강제적 내지 의무적 징집을 금지하는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즉각적 제거조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 182호의 만장일치에 의한 채택을 환영하고,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에 의하여 적대행위에서 국경 내외로 아동이 징집, 훈련 및 사용되는 것을 심각한 우려를 갖고 비난하며, 이와 관련하여 아동을 징집, 훈련 및 사용하는 자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무력분쟁에의 각 당사자는 국제인도법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고,

이 의정서는 제51조를 포함한 국제연합 헌장 내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 그리고 인도법 관련규범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강조하고,

국제연합 헌장에 포함된 목적 및 원칙의 전폭적인 존중과 적용 가능한 인권조약의 준수에 기반을 둔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가 특히 무력분쟁 및 외국의 점령시의 아동의 완전한 보호에 긴요함을 유념하고,

경제적 내지 사회적 지위 또는 성별로 인하여 이 의정서에 위반되는 징집이나 적대행위에서의 사용에 특히 취약한 아동들의 특별한 필요를 인정하고,

무력분쟁에 대한 아동의 관여의 경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근본원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하고,

이 의정서의 이행은 물론 무력분쟁의 희생자인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사회적 재활과 사회로의 재통합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를 확신하고,

이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에 있어서 공동체의, 특히 아동 및 아동피해자의 참여를 장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의 군대구성원이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의 자들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징집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8조 제3항에 포함된 원칙을 고려하고 이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들은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여, 당사국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국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제38조 제3항의 연령보다 높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를 비준 또는 가입할 때 자국 군대에 자발적 입대가 허용되는 최저연령을 설정하고, 이러한 입대가 강제나 강박에 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택한 안전조치를 설명하는 구속적 선언을 기탁하여야 한다.
3. 18세 미만의 자에게 자국 군대의 자발적 입대를 허용하는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의 안전조치들을 유지하여야 한다.
 - (a) 그러한 입대가 순수하게 자발적일 것;
 - (b) 그러한 입대가 당사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통보와 함께 이루어졌을 것;
 - (c) 그들이 이와 같은 병역에 관련된 의무들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을 것;
 - (d) 그들이 병역근무를 수락하기 전에 연령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것.
4.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지으로써 언제든지 자국의 선언내용을 강화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당사국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5. 이 조 제1항의 입대연령 인상 요구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당사국의 군대가 운영 내지 통제하고 있는 학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

1.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자를 징집하거나 적대

행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사국은 위와 같은 징집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를 금지시키고 범죄화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조처의 채택을 포함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3. 의정서의 이 조항의 적용은 무력분쟁의 어떠한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이 의정서의 어떠한 내용도 아동의 권리의 실현에 보다 도움이 되는 당사국의 법률이나 국제문서 또는 국제인도법상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조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내에서 이 의정서의 규정들의 효과적인 이행 및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및 기타의 조처들을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원칙 및 규정들을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성인 및 아동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할 것을 약속한다.
3. 당사국은 자국 관할 내에서 이 의정서에 반하여 징집되거나 적대행위에 사용된 자들이 제대하거나 병역에서 해제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필요할 경우 이러한 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회복 및 사회로의 재통합을 위한 모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반하는 활동의 예방을 포함하여 이 의정서의 이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기술적 협력 및 재정적 원조를 포함하여 이 의정서에 반하는 활동의 피해자들의 재활과 사회로의 재통합에 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원조 및 협력은 관계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된다.
2. 가능한 위치에 있는 당사국은 기존의 다자간, 양자간 및 기타 프로그램을 통하여, 또는 무엇보다도 국제연합 총회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자발적 기금을 통하여 이러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내에, 참여와 징집에 관한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취한 조처를 포함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처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포괄보고서의 제출 이후, 각 당사국은 협약 제44조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 이행에 관한 추가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의정서의 기타 당사국은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1. 이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 또는 협약 서명국에게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비준을 받아야 하며, 어떠한 국가의 가입에도 개방된다.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3. 사무총장은 협약 및 의정서의 수탁자의 자격으로 모든 협약 당사국과 협약 서명국에게 제3조에 따른 각 선언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1. 이 의정서는 10개국의 비준서 내지 가입서의 기탁이 있는 지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이 의정서의 발효 이후에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의정서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1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11조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시킬 수 있으며, 그는 이후 협약의 다른 당사국 및 협약 서명국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당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그러나 이 기간의 만료시 폐기 통고국이 무력분쟁에 관여하고 있을 경우, 당해 폐기는 무력분쟁의 종료 이전에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2. 위와 같은 폐기는 당해 폐기가 발효하는 일자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국이 이 의정서상의 의무로부터 면제시키는 효과를 갖지 아니한다. 또한 그러한 폐기는 당해 폐기가 발효하기 이전에 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하여 이미 검토 중인 문제에 대한 계속적 검토를 어떠한 경우에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2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여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들에게 통보하며, 이를 검토하고 표결하기 위한 당사국회의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묻는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 중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후원하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한 승인을 받고,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이 수락할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할 때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과거 개정에 구속된다.

제13조

1. 이 의정서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협약당사국 및 협약 서명국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목적과 그 조문의 이행, 특히 제1조, 제11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이행을 더 한층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하여야 할 조치들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경제적 착취로부터, 그리고 아동의 교육에 유해하거나 침해가 될 것 같거나 아동의 건강 내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달에 해가 될 것 같은 어떠한 작업의 수행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그리고 점증하는 아동의 국제적 이동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며,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직접적으로 촉진하고 있으며 아동이 이에 특히 취약한 섹스관광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데 깊이 우려하며,

여자아동을 포함한 수많은 특별취약 집단이 더욱 큰 성적 착취의 위협에 처하여 있으며, 성적으로 착취되는 자들 중 여자아동이 지나치게 많음을 인식하고,

인터넷 및 기타 신기술을 통한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이용가능성의 증대에 대하여 우려하며,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와의 전투를 위한 국제회의(비엔나, 1999년)와, 특히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제작, 배급, 수출, 전송, 수입, 의도적 보유 및 광고의 전세계적인 범죄화를 촉구한 당시의 결론을 상기하며, 정부 및 인터넷 산업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 및 유

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제거는 저개발, 빈곤, 경제적 불균형,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구조, 비정상적인 가족, 교육의 결핍, 도시-농촌간 인구이동, 성차별, 성인의 무책임한 성적 행태, 유해한 전통적 관행, 무력분쟁 및 아동의 거래를 포함하는 그 발생 요인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촉진될 것이라고 믿으며,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일반인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모든 관계자간의 전세계적인 유대관계의 강화 및 각 국가 차원에서의 법집행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믿으며,

아동의 보호 및 국가간 입양의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국제 아동유괴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 부모책임 및 아동 보호조처에 관하여 관할, 적용법률,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그리고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즉각적 제거조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82호를 포함하여 아동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률문서의 규정들을 주목하고,

아동의 권리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존재하는 광범위한 성원을 보여주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에 고무되고,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의 방지를 위한 실천계획 및 1996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아동의 상업적인 성적 착취에 반대하는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및 의제,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의 그에 대한 결정 및 권고들을 이행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의 보호 및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를 금지하여야 한다.

제2조

이 의정서의 목적상,

- (a) 아동매매란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위하여 아동이 어느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모든 행위 내지 거래를 의미한다.
- (b) 아동매춘이란 보수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대가를 위하여 아동을 성적 활동에 사용함을 의미한다.
- (c) 아동포르노그래피란 그 방법을 불문하고 실제로 또는 모의로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을 보여주는 것 또는 주로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의 성적 부위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1. 각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의 행위와 활동은 그 행위지의 국내 국외를 불문하고, 그리고 개인적 차원이나 조직적 차원의 실행인가를 불문하고 형법상 완전히 처벌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a) 제2조에 정의된 아동매매와 관련하여,
 - (i) 어떠한 수단에 의하든 다음의 목적을 위한 아동의 제공, 배달 또는 인수.
 - a. 아동의 성적 착취.
 - b. 영리를 위한 아동 장기의 이전.
 - c. 아동의 강제노동에의 종사.
 - (ii) 입양에 관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률문서를 위반하며 중개자로서 아동입양을 위한 동의를 부당하게 유도함.
 - (b) 제2조에 정의된 아동매춘을 위한 아동의 제공, 획득, 조달 내지 공급.
 - (c) 제2조에 정의된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제작, 배급, 보급, 수입, 수출, 제공, 판매 또는 소유.
2.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러한 행위의 미수 및 공모 또는 참여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된다.
3. 각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형벌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국법 규정에 따른 것을 전제로 하여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법인의 책임을 확립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국의 법원리에 따른 것을 전제로 하여 법인의 이러한 책임은 형사적, 민사적 또는 행정적일 수 있다.
5. 당사국은 아동의 입양과 관련된 모든 자가 적용 가능한 국제법률문서를 준수하여 행동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법률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1. 각 당사국은 제3조 제1항에 언급된 범죄가 자국 영토 내에서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상에서 범하여졌을 경우 이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제3조 제1항에서 언급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범죄혐의자가 자국민이거나, 그 영토 내에 상주하는 자일 때;
 - (b) 피해자가 자국민일 때.
3. 각 당사국은 범죄혐의자가 자국 영토 내에 있고 당해 범죄가 자국 국민에 의하여 범하여졌음을 이유로 그를 다른 당사국으로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이 의정서는 국내법에 따라 행사되는 형사 관할권을 배제시키지 아니한다.

제5조

1. 제3조 제1항에 언급된 범죄들은 당사국간 기존의 범죄인인도조약에 인도가능범죄로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국간에 추후에 체결되는 모든 범죄인인도조약에는 이들 조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인도가능범죄로 포함시킨다.
2.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이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당사국으로부터 인도요청을 받을 경우, 당해 국가는 이 의정서를 그러한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인도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범죄인인도는 피요청국의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야 한다.
3.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지 않는 당사국은 피요청국의 법률에 규정된

조건의 한도 내에서 이들 당사국간에는 위와 같은 범죄를 인도가능범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당사국간의 범죄인인도의 목적상 위와 같은 범죄는 발생한 장소에서 뿐 아니라, 제4조에 따른 관할권을 확립시킬 것이 요구되는 국가의 영토 내에서도 범하여진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5. 제3조 제1항에서 규정된 범죄와 관련하여 범죄인인도 요청이 있었으나, 피요청당사국이 범인의 국적을 근거로 인도하지 않거나 인도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당해 국가는 기소를 위하여 이 사건을 담당기관으로 회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상호간에 제3조 제1항에서 규정된 범죄와 관련하여 제기된 조사 또는 형사상 내지 범죄인인도 절차와 관련하여 절차상 필요한 보유 증거의 수집지원을 포함하여 최대한의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사범공조조약 또는 기타 협정에 따라 이 조 제1항 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약이나 협정이 없을 경우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상호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당사국은 국내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

(a) 적절한 경우 다음의 물건들을 압수 및 몰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i) 이 의정서상의 범죄를 범하거나 조장하기 위하여 사용된 용구, 자산 및 기타 도구와 같은 제품;

(ii) 이러한 범죄로부터 얻어진 수익;

(b) 타방 당사국으로부터의 (a) (i)에서 규정된 제품 또는 수익을 압수하거나 몰수하라는 요청을 실행하여야 한다;

(c) 이러한 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사용된 건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1. 당사국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이 의정서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의 피해자인 아동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에 의한다.
 - (a) 아동 피해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아동증인에 대한 특별조치를 포함하여 이들의 특별한 필요를 인정하는 조치를 채택한다.
 - (b) 아동 피해자에게 그의 권리, 역할과 그 범위, 절차의 개시시간, 진행 및 그 사건의 처분을 통지한다.
 - (c) 아동 피해자의 개인적 이해가 영향받는 절차에서는 국내법의 절차규칙에 일치되는 방식으로 그의 견해, 필요 및 관심사항이 제시되고 고려되도록 허용한다.
 - (d) 법절차 전반을 통하여 아동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e) 아동 피해자의 사생활 및 신원을 적절히 보호하고, 아동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질 수 있는 정보의 부적절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국내법에 따라 취한다.
 - (f) 필요한 경우 아동 피해자는 물론 그의 가족 및 이들을 위한 증인에 대한 위협 및 보복으로부터의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 (g) 사건의 처리 및 아동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부여하는 명령이나 결정의 집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지연을 막는다.
2. 당사국은 피해자의 실제 연령이 확실하지 않다 하여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비롯한 형사조사의 개시가 방해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기술된 범죄의 피해자인 아동을 형사사법제도를 통하여 다룰 때 아동의 최선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의정서상 금지된 범죄의 피해자들과 함께 작업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적절한 훈련, 특히 법률적 및 심리적 훈련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의 예방 및/또는 보호와 재화에 관여하는 자 및/또는 조직의 안전과 통일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6.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해하거나 이와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행정조치, 사회정책 및 계획을 채택 내지 강화, 시행 및 보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처에 특히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2.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한 정보제공,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조치 및 그 악영향에 대하여 아동을 포함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 조의 의무를 이행할 때 당사국은 국제적 차원의 것을 포함하여 정보제공, 교육 및 훈련 계획에 대한 공동체, 특히 아동 및 아동 피해자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이들의 사회로의 완전한 재통합 및 완전한 육체적 및 심리적 회복을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의 아동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책임있는 자들로부터 차별없이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 홍보물의 제작 및 유포를 효과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1. 당사국은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아동 섹스관광과 관련된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을 예방, 적발, 조사, 소추 및 처벌을 위하여 다자간, 지역적 및 양자간 협정을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당국, 국내 및 국제적 비정부기구 그리고 국제기구 사이의 국제적 협력 및 조정을 증진시켜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 피해자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회복, 사회로의 재통합 및 송환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아동 섹스관광에 대한 아동의 취약성에 기여하는 빈곤과 저개발과 같은 근본원인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강화를 증진시켜야 한다.

4. 가능한 위치에 있는 당사국은 기존의 다자간, 지역적, 양자간 및 기타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정적, 기술적 및 기타의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이 의정서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에 포함된 아동의 권리 실현에 더욱 도움이 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a) 당사국의 법;
- (b)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12조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내에 이 의정서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처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포괄 보고서의 제출 이후, 각 당사국은 협약 제44조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추가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 의정서의 기타 당사국은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1. 이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 또는 협약 서명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비준을 받아야 하며, 협약의 당사국 또는 협약 서명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14조

1. 이 의정서는 1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의 발효 이후에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의정서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1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15조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으며, 그는 이후 협약의 모든 다른 당사국 및 협약 서명국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당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위와 같은 폐기는 당해 폐기가 발효하는 일자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당사국을 의정서상의 의무로부터 면제시키는 효과를 갖지 아니한다. 또한 그러한 폐기는 당해 폐기가 발효하기 이전에 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하여 이미 검토 중인 문제에 대한 계속적 검토를 어떠한 경우에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여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들에게 통보하며, 이를 검토하고 표결하기 위한 당사국회의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묻는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 중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후원 하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한 승인을 받고,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이 수락할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할 때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과거 개정에 구속된다.

제17조

1. 이 의정서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협약 당사국과 협약 서명국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MEMO

MEMO

MEMO

MEMO

**UN 아동권리협약 20주년기념 국제워크숍
학생체벌 금지와 교육적 대안 모색**

| 인 쇄 | 2009년 3월

| 발 행 | 2009년 3월

| 발행인 | 안 경 환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 학교교육팀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876 | F A X | (02) 2125-9878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사전 승인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UN 아동권리협약 20주년 기념 국제워크숍

학생체벌 금지와 교육적 대안 모색

International Workshop on Promotion of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against Students
& the Search for Alternatives in an Educational Setting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11층 인권교육본부 학교교육팀
Tel. (02)2125-9870~6 Fax. (02)2125-9878 www.humanrights.go.kr



121-881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364(창전동 169-2) 세이브더칠드런
Tel. (02)6900-4400 Fax. (02)6900-4499 www.sc.or.kr